

18901860

1988年度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寄贈	一九八八年
十月	十日
寄贈本	日

水 産 廳



이 年次報告書는 1987年度의 水産 動向과 施策 및 1988 年의 水産施策에 관한 報告書로서 水産振興法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1988年度 國會 定期會에 提出하기 위하여 作成 하였음.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적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은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빈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거운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目 次

第 1 編 1987年度 水產 動向과 施策 .....	1
第 1 章 水產經濟 .....	3
第 1 節 世界 水產業의 動向 .....	3
第 2 節 우리나라 漁村의 動向 .....	6
第 3 節 漁家負擔 輕減 .....	19
第 2 章 水產物 需給動向 .....	23
第 1 節 水產物 生産 .....	23
第 2 節 水產物 輸出入 .....	24
第 3 節 水產物 需給 .....	42
第 3 章 漁業經營의 動向 .....	44
第 1 節 漁業經營 .....	44
第 2 節 價格動向 .....	50
第 3 節 水產金融 .....	55
第 4 章 水產物 生産 .....	58
第 1 節 沿近海 漁場의 環境 變化 .....	58
第 2 節 水產資源의 造成·管理 .....	62
第 3 節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 .....	67
第 4 節 養殖 및 內水面漁業 開發 .....	77
第 5 節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	79

第 5 章 水產技術 開發 及 普及 .....	86
第 1 節 水產技術의 開發 .....	86
第 2 節 漁村指導 및 技術普及 .....	95
第 3 節 漁業技術 訓練 .....	99
第 6 章 水產物 需給安定 及 食糧化 .....	102
第 1 節 水產物 價格安定 .....	102
第 2 節 水產物 流通改善 .....	103
第 3 節 水產物 加工 及 食生活 改善 .....	104
第 4 節 水產物 檢查 .....	108
第 7 章 漁業基盤施設 擴充 .....	110
第 1 節 漁撈施設 .....	110
第 2 節 漁港開發 .....	112
第 8 章 水產團體 및 漁民後繼者 育成 .....	115
第 1 節 水產業協同組合 .....	115
第 2 節 水產物 輸出團體 .....	119
第 3 節 漁村 새마을운동 及 漁民後繼者 育成 .....	120
第 9 章 水產事業 總括 .....	122
第 1 節 投融資 實績 .....	122
第 2 節 事業成果 .....	125
第 10 章 水產法令 整備 및 制度 改善 .....	128
第 1 節 法令 整備 .....	128
第 2 節 制度 改善 .....	136

第 2 編 1988年度 水產施策 .....	139
第 1 章 水產施策 方向 .....	141
第 1 節 指標斗 重点施策 .....	141
第 2 節 投融资 規模 .....	143
第 3 節 水產物 生産 斗 輸出 計劃 .....	146
第 4 節 水產物 輸入 .....	148
第 2 章 沿岸漁場의 牧場化 .....	150
第 1 節 人工魚礁施設 .....	150
第 2 節 人工種苗 放流 .....	151
第 3 節 増養殖漁業開發 .....	152
第 4 節 内水面漁業의 促進 .....	154
第 5 節 漁場 環境 保全 .....	156
第 3 章 安全操業斗 漁業秩序 確立 .....	159
第 1 節 安全操業 教育斗 指導 .....	159
第 2 節 不法漁業 團束 .....	160
第 3 節 漁業無線局 運營斗 施設補強 .....	161
第 4 章 水產技術 開發斗 普及 .....	163
第 1 節 水產振興院의 活性化 .....	163
第 2 節 所得斗 直結되는 技術開發 .....	165
第 3 節 基礎調査事業 .....	172
第 4 節 漁村 指導 事業 .....	174
第 5 節 漁業技術의 向上斗 訓練 .....	179

第 5 章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	180
第 1 節 漁業協力 .....	180
第 2 節 新漁場 開發 .....	184
第 3 節 遠洋漁業 育成 指導 .....	186
第 6 章 水產物 需給安定과 食糧化 .....	188
第 1 節 水產物 流通 改善 .....	188
第 2 節 水產物 價格 安定 .....	190
第 3 節 水產物 食糧化 .....	191
第 4 節 水產物 檢查 .....	193
第 7 章 漁業基盤施設 擴充 .....	195
第 1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195
第 2 節 漁港施設의 擴充 .....	200
第 8 章 漁民支援 強化 .....	202
第 1 節 漁家 所得 倍加 .....	202
第 2 節 水產資金 支援 .....	204
第 3 節 低所得 漁村 育成 .....	208
第 4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	210
第 5 節 災害補償 .....	212
圖表로 分 水產業 動向 .....	217
統計表 索引 .....	231

第 1 編

1987年度 水産動向と 施策

**여백**

## 第 1 章 水 產 經 濟

### 第 1 節 世界 水產業의 動向

#### 1. 1986년도 生産動向

1986년의 世界 水産物 生産量은 전년의 85,626천톤보다 6.8%가 증가한 91,457천톤으로서 처음으로 9천만톤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生産量 增加는 北大西洋을 제외한 世界 全域의 海面生産量의 伸張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 보면 日本이 전년보다 4.8%가 증가한 11,967천톤으로서 1977년 이래 世界 第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蘇聯으로서 11,260천톤, 第 3位는 中國이 8,000천톤으로 전년과 같은 順位이나 전년에 第 6位인 페루가 5,610천톤을 생산하여 第 4位로 부상하였으며, 3,000천톤 이상 생산한 國家는 칠레, 美國 및 韓國의 順位로 되어 있다. 전년에 비하여 漁獲量이 증가한 나라는 日本, 소련, 中國, 페루, 칠레, 美國, 韓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덴마크, 캐나다, 멕시코 등이고 泰國,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페인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魚種別 生産量을 살펴보면 베링海의 明太가 6,759천톤으로 全體 生産量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近海의 정어리가 5,191천톤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南美 페루近海의 멸치는 전년에는 1,000천톤 미만이던 것이 一挙에 前年 生産量의 5배에 가까운 4,945천톤으로 伸張한 점이 注目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生産量은 전년보다 17.1%가 증가한 3,103천톤을 생산하여 처음으로 3,000천톤대를 上廻하였으며 世界에서의 順位는 1983년에 第8位에 올라신 이후 계속 維持하여 오다가 1986년에서 7位로 올라섰다. 全體 生産量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1%에서 3.4%로 증가하였다.

〈表 1〉 世界水産物生産推移

단위: 천%

	'83	'84	'85	'86	'86/'85 (%)
計	77,256	83,096	85,626	91,457	106.8
日 本	11,255	12,021	11,409	11,967	104.8
蘇 聯	9,757	10,593	10,523	11,260	107.0
中 國	5,213	5,927	6,779	8,000	118.0
페 루	1,580	3,340	4,136	5,610	135.6
칠 레	3,978	4,499	4,804	5,572	116.0
美 國	4,258	4,814	4,765	4,943	103.7
韓 國	2,400	2,477	2,650	3,103	117.1
印 度	2,504	2,855	2,824	2,925	103.6
인도네시아	2,205	1,993	2,339	2,521	107.8
泰 國	2,260	2,135	2,225	2,119	95.2
其 他	31,846	32,442	33,172	33,437	100.8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6

註: 고래, 물개, 기타 수산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제외

## 2. 1986년도 貿易動向

1986년의 世界 水産物 輸出金額은 전년대비 31.5%가 증가한 22,486백만\$이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가 전년에 비하여 28.3% 증가한 1,744백만\$ 어치를 수출하여 世界 第 1位를 차지하였으며 美國이 1,481백만\$로서 第 2位, 덴마크가 1,381백만\$로서 第 3位를 유지하는 등 上位圈 3位까지는 전년에 이어 變化가 없다. 특히 中國은 1984년에 水産物 輸出金額 303백만\$로 世界 18位에서 1985년에는 367백만\$로 14位로 올라섰으며 1986년에는 646백만\$ 어치를 輸出하여 世界 10位圈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出金額은 전년 797백만\$보다 무려 49.1%가 증가한 1,188백만\$로서 전년도 世界 第 6位에서 第 4位로 부상하였다.

한편 世界の 水産物 輸入金額은 24,120백만\$로 전년에 비하여 30.4%의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日本이 전년대비 39.0% 증가한 6,594백만\$ 어치를 輸入하여 第 1位를 유지하였으며 美國이 4,749백만\$로 第 2位, 프랑스가 1,510백만\$ 어치를 輸入하여 第 3位, 이탈리아가 1,265백만\$로 전년에 비하여 28.6%의 伸張을 보임으로써 계속 4位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 서독, 스페인, 홍콩, 덴마크, 캐나다 등의 順으로, 輸入側面에서는 先進國이 上位圈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이 75.2%, 덴마크 61.1%, 프랑스 45.2%, 西獨이 35.7%로 크게 증가하는 등 西方 肉類消費國의 水産物 輸入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10개 나라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入金額은 전년에는 83백만\$로 世界 23位에 그쳤으나 1986년에는 112백만\$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表 2〉

世界水産物輸出推移

단위: 백만\$

	'83	'84	'85	'86	'86/'85 (%)
計	15,698	15,850	17,100	22,486	131.5
캐 나 다	1,277	1,272	1,359	1,744	128.3
美 國	997	924	1,162	1,481	127.5
덴 마 크	928	900	953	1,381	144.9
韓 國	740	782	797	1,188	149.1
노 르 웨 이	978	903	922	1,171	127.0
泰 國	545	633	675	1,012	149.9
日 本	788	882	820	898	109.5
아 이 슬 랜 드	525	509	617	858	139.1
네 델 란 드	511	501	544	766	140.8
中 國	303	322	367	646	176.0
其 他	8,109	8,222	8,884	11,341	127.7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6

註: 고래, 물개, 기타 수산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 第 2 節 우리나라 漁村의 動向

### 1. 漁業家口, 家口員 및 從事者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製造業 및 서비스産業의 勞動力 需要가 증가하고 漁村 生活與件 및 勤勞與件이 不利해짐에 따라 漁村人口의 都市流出이 지속됨으로써 1987년의 漁業家口, 家口員, 從事者는 前년에 비해 각각

1.9%, 4.7%, 1.8% 감소하였다.

(表 3) 漁業家口・家口員 및 従事者 推移

단위: 戸, 명

	'77	'82	'86	'87	'87/'86 (%)
漁業家口	153,133	146,333	143,867	141,204	98.1
( '77=100)	100	95.6	93.9	92.2	
漁業家口員	871,178	754,523	666,122	634,766	95.3
( '77=100)	100	86.6	76.5	72.9	
·總人口對比(%)	2.39	1.92	1.60	1.51	
平均家口員	5.69	5.16	4.63	4.50	97.2
漁業従事者	329,083	277,393	259,747	255,162	98.2
( '77=100)	100	84.3	78.9	77.5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註: 어업종사자는 원양승선원 제외

( '77: 22,715, '82: 14,933, '86: 16,178, '87: 19,102명)

漁業家口の變動狀況을 보면, 漁業家口는 감소하고 있으나, 經營者家口の 專業家口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漁業專門化가 進行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經營者나 피고용자 가구 모두 1종 兼業家口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漁業以外的 業種經營에 의한 所得源의 多樣化에 기인한다.

漁業 家口員의 감소율이 家口의 감소율보다 높은 것은 家口當 人員의 감소('86: 4.6명→'87: 4.5명)에 그 원인이 있으며, 漁業従事者의 감소는 어업가구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으나, 피고용자가구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도시로 진출한 일부 가구가 어촌으로 환류하여 이들이 이주 초기에 주로 어업에만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表 4) 漁業家口의 推移

단위: 戶

	'86			'87/'86 (%)	'87		
	計	經營者家口	被備者家口		經營者家口	被備者家口	計
計	143,867	126,251	71,616	98.1	123,837	17,367	141,204
專業	27,076	22,267	4,809	99.5	22,305	4,757	27,062
兼業	116,791	103,984	12,807	86.9	101,532	12,610	114,142
· 1種	79,982	69,267	10,715	83.9	67,137	10,576	77,713
· 2種	36,809	34,717	2,092	93.4	34,395	2,034	36,429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註: (1) 1종겸업은 어업소득중 어업소득이 50%이상인 가구

(2) 2종겸업은 어업소득이 50%미만인 가구임

(表 5) 漁業家口員 및 從業者 推移

단위: 명

	'86	'87	'87/'86 (%)
漁業家口員	666,122	634,766	95.3
· 經營者家口	584,881	557,109	95.3
· 被雇備者家口	81,241	77,657	95.6
漁業從業者	259,747	255,162	98.2
· 經營者家口	236,956	231,946	97.9
· 被雇備者家口	22,791	23,216	101.9
· 漁業에 関	56,284	56,721	100.8
· 漁業이 主	124,203	120,402	96.9
· 漁業이 副	79,260	78,039	98.5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漁業從業者의 年齡構成을 보면 經營者 가구나 피고용자가구 다같이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대폭 감소된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高齡化하고 있으며 性別構成에 있어서도 男과 女의 비율이 1986년 59.5대 40.5에서 1987년에는 58.9대 41.1로 女의 비율이 높아

졌다. 또한 業種別 従事者는 漁船漁業에 있어서는 經營者가 늘어남에 따라 피고용자가 줄어들어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며, 養殖漁業에 있어서는 피고용자가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自然産採捕業 종사자는 經營者가 줄어든 반면 종사자는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어업의 專業化 추세와 再 移入된 도시민이 아직 어업기반을 확보치 못하여 소규모 양식업 및 자연산 채포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表 6〉

従事者の年齢構成

단위: 명

	經營者 家 口			被 雇 備 者 家 口		
	14~29	30~59	60이상	14~29	30~59	60이상
1986	39,328	172,929	24,699	4,635	16,449	1,707
남	26,022	93,886	14,775	4,215	14,202	1,579
	13,306	79,043	9,924	420	2,247	128
1987	33,565	172,797	25,584	4,403	21,200	2,016
남	22,323	93,036	15,082	3,916	14,057	1,789
	11,242	79,761	10,502	487	2,740	227
'87/'86(%)	85.3	99.9	103.6	95.0	128.9	118.1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表 7〉

業種別 従事現況

단위: 명

	計		漁 船 漁 業		養 殖 業		自然産採捕業	
	'86	'87	'86	'87	'86	'87	'86	'87
計	259,747	255,162	85,455	85,781	134,369	132,451	39,923	36,930
經營者	236,956	231,946	66,218	66,572	132,655	130,381	38,083	34,993
被雇備者	22,791	23,216	19,237	19,209	1,714	2,070	1,840	1,937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2. 漁船勢力

1987년말 漁船勢力은 94,155척에 912천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척수는 1.2%, 톤수는 3.2% 증가하였다. 이중 動力船은 전체 어선가운데 척수로는 79.5%, 톤수로는 97.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動力化 추세로 移行되고 있다.

(表 8) 漁 船 勢 力 推 移 단위: 척, 千, TP

		'77	'82	'86	'87	'87/'86 (%)
計	척 수	66,506	86,515	93,037	94,155	101.2
	톤 수	682,591	807,570	883,851	911,958	103.2
	평균톤수	10.3	9.3	9.5	9.7	102.0
動力船	척 수	29,834	67,084	73,905	74,845	101.3
	톤 수	636,445	784,708	862,262	890,449	103.3
	마력수	1,865,632	2,797,024	3,607,243	4,026,836	111.6
無動力船	척 수	36,672	19,431	19,132	19,320	100.9
	톤 수	46,146	22,862	21,589	21,508	99.6
動力化率 (%)	척 수	44.8	77.5	79.4	79.5	
	톤 수	93.2	97.2	97.6	97.6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漁業別 척수는 沿岸海漁船이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養殖漁船이 38.8%, 內水面漁船이 3.4%, 遠洋漁船이 0.7%, 其他漁船이 0.4%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톤수로는 沿岸海漁船이 49.6%, 遠洋漁船이 41.4%, 養殖漁船이 4.9%, 內水面漁船이 0.3%, 其他漁船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船質別로는 木船이 아직도 全體漁船의 93.3%(隻數基準)를 차지하고 있으나 鋼船과 合成樹脂船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表 9〉 漁業別 漁船 勢力

단위: 척, %

		'77	'82	'86	'87	'87/'86 (%)
計	척 수	66,506	86,515	93,037	94,155	101.2
	톤 수	682,591	807,570	883,851	911,958	103.2
沿近海	척 수	41,114	46,824	52,274	53,358	102.1
	톤 수	283,489	395,188	444,000	452,268	101.8
養 殖	척 수	22,399	35,191	36,661	36,545	99.7
	톤 수	24,816	40,813	44,448	44,416	99.9
內水面	척 수	1,673	3,251	3,059	3,193	104.4
	톤 수	1,232	2,686	2,519	2,730	108.4
遠 洋	척 수	846	646	670	710	105.0
	톤 수	332,410	330,422	357,015	377,469	105.7
其 他	척 수	474	603	367	349	95.1
	톤 수	40,644	38,461	35,869	35,125	97.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表 10〉 船質別 漁船 勢力

단위: 척, %

		'77	'82	'86	'87	'87/'86 (%)
計	척 수	66,506	86,515	93,037	94,155	101.2
	톤 수	682,591	807,570	883,851	911,958	103.2
木 船	척 수	64,191	82,823	87,332	87,817	100.6
	톤 수	223,858	252,410	245,528	246,743	100.5
鋼 船	척 수	2,183	3,155	3,897	4,050	103.9
	톤 수	458,313	553,292	631,135	656,451	104.0
合成樹脂 (F.R.P)	척 수	132	537	1,808	2,288	126.5
	톤 수	420	1,868	7,188	8,764	121.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未滿의 漁船은 全體 漁船 대비 척수로는 87.3%, 톤수로는 13.5%를 차지하고 5~50톤 어선은 척수, 톤수가 全體 漁船의 9.2%와 15.1%를 차지하고 있고 50톤이상의 大型 漁船은 척수, 톤수가 全體 漁船의 3.5%와 71.4%를 차지하고 있다.

(表 11) 噸 級 別 漁 船 勢 力

단위: 척, G/T

	'77		'86		'87		'87/'86 (%)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計	66,506	682,591	93,037	883,851	94,155	911,958	101.2	103.2
1톤 미만	45,506	47,517	28,525	20,847	29,242	21,365	102.5	102.5
1~5톤 미만	10,936	33,770	52,823	100,749	52,916	102,046	100.2	101.3
5~50톤 미만	7,879	128,037	8,370	134,477	8,616	137,847	102.9	102.5
50~100톤 미만	1,296	99,507	2,085	171,041	2,083	170,127	100.0	99.5
100~200톤미만	247	37,016	587	79,071	607	81,688	103.4	103.3
200톤 이상	642	336,742	647	377,666	691	398,885	106.8	105.6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 3. 漁業 總生産

1987년 漁業產出額은 經常價格으로는 2조1,685억원으로 전년대비 8.0%, 1980년 不變價格으로는 0.8%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어업산출액을 생산량 및 어가(魚價)동향과 비교해 보면, 1987

〈表 12〉 漁業總生產額

단위: 억원

	'86		'87(P)		'87/'86 (%)	
	產出額	附加價值	產出額	附加價值	產出額	附加價值
〈經常〉 計	20,083	13,821	21,684	15,585	108.0	112.7
漁獲	10,726	8,434	11,381	9,256	106.1	109.5
養殖	3,433	2,098	3,722	2,585	108.4	122.6
遠洋	5,924	3,289	6,581	3,743	111.1	114.8
〈'80不變〉 計	12,645	7,541	12,741	7,452	100.8	98.8
漁獲	6,006	4,126	5,733	3,941	95.5	95.5
養殖	2,885	1,754	2,404	1,474	83.3	84.0
遠洋	3,754	1,661	4,604	2,037	122.6	122.6

자료: 한국은행, '87년도 국민총생산추계

註: 어획에는 연근해생산액+내수면 어로생산액

양식에는 연근해 양식생산액+내수면 양식생산액임

년도 수산물의 생산이 1987. 1~5월까지의 동해안 일대 高水溫帶 형성에 따른 명태·노가리 등의 어획 부진, 7~8월에 셀마·다이너호 등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출어 불능, 9~10월에는 남해와 제주도 근해에 低溫帶가 형성되어 감오징어, 귀치 등의 조업 부진, 1987년 겨울의 이상난동에 따른 긴갯병 발생 등과 북양에서의 韓·美 共同事業物量이 輸入으로 處理됨에 따라 1986년에 비해 9.0%가 감소한 반면, 魚價는 10.7% 상승되었기 때문에 經常價格과 不變價格의 상승율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생산량이 9.0% 감소되었는데도 불변가격이 0.8% 증가한 것은 비교적 低價魚種인 귀치, 명태, 미역 등의 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高價魚種인 조기, 오징어, 굴, 바지락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產出額에서 中間材投入額을 제외한 附加價值額은 魚價와 中間材

價格을 고려한 經常價格으로는 전년에 비해 12.7% 증가하였으나 80년 不變價格으로는 1.2% 감소하였다.

#### 4. 漁家所得

漁家所得은 海·漁況의 저조에 따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魚價의 상승 및 어민들의 소득증대 노력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하여 농가 소득과의 차이도 1986년 90%에서 94%로 접근되었다.

〈表 13〉 漁 家 所 得 構 成

단위: 천원

	'85	'86	'87	'87/'86 (%)
收 入	8,591	9,790	11,170	114.1
· 漁 業	6,047	7,155	7,577	105.9
· 漁 業 外	2,544	2,635	3,593	136.4
支 出	3,722	4,388	5,004	114.0
· 漁業經營費	3,232	3,936	4,157	105.6
· 其 他	490	452	847	187.4
所 得	4,869	5,402	6,166	114.1
· 漁 業	2,815	3,219	3,420	106.2
· 漁 業 外	2,054	2,183	2,746	125.8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漁業階層別로 보면 養殖業家口와 無動力船 使用家口 및 漁船 非使用家口의 所得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動力船 使用家口는 1986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漁家 平均소득과 養殖業家口의 소득차이는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도 無動力船 使用家口는 격차가 큰 실정이다.

(表 14) 漁業階層別所得推移

단위: 천원

家 口 別	'86	%	'87	%	'87/'86 (%)
	全 國 平 均	5,402	100	6,166	100
漁 船 非 使 用	4,529	84	5,163	84	114.0
無 動 力 船 使 用	4,132	76	4,828	78	116.8
動 力 船 使 用	9,241	171	9,383	152	101.5
養 殖 業	4,644	86	5,774	94	124.3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表 15) 階層別所得構成

단위: 천원

家 口 別	漁 業	%		兼 業	%		事 業 外	%	
全 國 平 均	3,420	55.5		1,321	21.4	1,425	23.1		
漁 船 非 使 用	2,073	40.2		1,054	20.4	2,036	39.4		
無 動 力 船 使 用	2,766	57.3		708	14.7	1,354	28.0		
動 力 船 使 用	7,376	78.6		487	5.2	1,520	16.2		
養 殖 業	2,744	47.5		2,041	35.4	989	17.1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註: %는 階層別所得總額(表 14 참조)에 대한 구성비임

한편 漁家所得 收支를 보면 漁家所得이 14.1% 증가한데 비해 家計費 支出은 15.0%가 늘어났으나, 조세, 공과금, 차임금이자 등의 사업의 지출이 76.6% 줄어들며 따라 家計剩餘가 28.0% 늘어났다.

家計費 支出에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던 교육비의 비중이 1987년에는 낮아졌으며 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양·오락비 등의 기타잡비 지출과 분가·우발적지출 등의 기타지출이 급증한 반면 가계비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엔겔계수)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편 문화생활을 위한 文化用品 需要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表 16)

漁 家 所 得 收 支

단위: 천원

	'86	'87	'87/'86 (%)
漁 家 所 得	5,402	6,166	114.1
(%)	(100)	(100)	
事 業 外 支 出	303	71	23.4
可處分所得 (A)	5,099	6,095	119.5
(%)	(94)	(99)	
· 家計費支出 (B)	3,877	4,457	115.0
(飲食物費) (C)	1,202	1,279	106.4
(住 居 費)	283	377	133.2
(光 熱 費)	197	204	103.6
(被 服 費)	227	272	119.8
(教 育 費)	584	569	97.4
(其 他 雜 費)	1,384	1,756	126.9
· 其 他 支 出	66	158	239.4
· 家 計 剩 餘	1,156	1,480	128.0
	(23)	(24)	
平均消費性向 (B/A)	76.0	73.1	
엔셀 지수 (C/B)	31.0	28.7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어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탁기, 전축, 카메라, 오토바이, 전화, 칼라TV 보급이 두드러져서 어민들이 생활의 편리함과 교양·오락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17)

文 化 用 品 推 移

기준: 100戶당

	'79	'86	'87	'87/'86 (%)
칼 라 TV	1.2대	57	67	117.5
전 축	19	13	20	153.8
녹 음 기	34	91	92	101.1
세 타 기	0.4	4	8	200.0
카 메 라	4	6	8	133.3
오토 바이	1.6	3	4	133.3
전 화	14	70	91	130.0
상 수 도	62	69	69	100.0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註: 戶當 1臺 以上이 普及된 냉장고, 선풍기 除外

### 5. 漁家資産 및 負債

漁家資産은 저금 및 대부금 등 流通資産과 土地買入의 증가로 12.8%가 증가 되었으나 大漁具, 大動物, 漁撈用 機資材는 전년과 비슷한水準이었다. 특히 流通資産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금보유가 347천원으로 전년 대비 35%, 저금 등이 2,047천원으로 전년대비 39%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表 18〉

漁 家 資 産 推 移

단위: 천원

		'86	'87	'87/'86 (%)
計		20,072	22,643	112.8
固 定 資 産	小 計	14,216	15,714	110.5
	土 地	6,239	7,327	117.4
	建 物	4,183	4,458	106.6
	大 漁 具	3,518	3,645	103.6
	大 動 物	276	284	102.9
流 動 資 産	小 計	2,952	3,276	111.0
	漁 撈 用	1,534	1,556	101.4
	養 殖 用	941	1,004	106.7
	在 庫 量	477	716	150.1
流 通 資 産		2,904	3,653	125.8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漁家負債는 1986년에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1987년에는 生産, 所得, 資産의 증가율을 上廻하여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家計를 위한 負債와 외상매입금·일시차입금 등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借入處別로는 私債의 증가가 완만한 반면 制度金融 이용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漁家負債 증가에 따른 償還能力을 보면 資産 對 負債比率은 17.9%로써 전년 수준이고 負債額이 즉시 償還可能額(流動資産在庫 + 流通資産)을 밑도는 93%로써 전년의 105%에 비하여 크게 호전되었으며 漁家貯蓄이 크게 늘어났다.

(表 19) 漁 家 負 債 推 移 단위: 천원

		'86	'87	'87/'86 (%)
計		3,549	4,064	114.5
用 途 別	漁業資金	2,150	2,309	107.4
	兼業資金	395	431	109.1
	家計資金	911	1,170	128.4
	其他	93	154	165.6
借 入 處 別	小計	2,297	2,800	121.9
	金融機關	1,569	1,858	118.4
	水協	728	942	129.4
	農·漁家其他	906	822	90.7
	個人其他	346	442	127.7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表 20) 資 産 과 負 債 比 較 단위: 천원

		'86	'87	'87/'86 (%)
負債額 (A)		3,549	4,064	114.5
漁家總資産 (B)		20,072	22,643	112.8
· 流動資産在庫 (C)		477	716	150.1
· 流通資産 (D)		2,904	3,653	125.8
漁家所得 (E)		5,402	6,166	114.1
對 比	A/B	17.7	17.9	
	A/E	65.7	65.9	
	A/(C+D)	105.0	93.0	
漁家貯蓄 (負債對比)		1,472 (41.5%)	2,047 (50.4%)	139.1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이상의 漁家經濟指標을 분석해 보면 漁家所得中에서 漁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인 漁業依存度는 1987년의 어획감소에 따라 59.6%에서 55.5%로 줄어들었으며 漁業所得率(어업소득÷어업수입)은 경영비의 증가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1987년에는 0.1%포인트 증가하였고, 漁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는 (漁業所得÷家計費) 낮아졌다. 한편 漁家所得中에서 租稅公課金이 차지하는 비율인 租稅負擔率은 1.5%에서 1.2%로, 漁家負債中 私債依存度(私債÷借入金)는 公金融의 공급확대로 35.3%에서 31.1%로 낮아졌고, 어가소득중 預·貯金率은 27.2%에서 33.2%로 증가되었다.

(表 21) 漁 家 經 濟 指 標 分 析

단위: %

	漁業 依存度	漁業 所得率	家計費 充足度	租稅 負擔率	私債 依存度	預·貯 金率
'86	59.6	45.0	83.0	1.5	35.3	27.2
'87	55.5	45.1	76.7	1.2	31.1	33.2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 第 3 節 漁家負擔輕減

#### 1. 農漁家 負債輕減對策 推進

##### 가. 私債代替資金 支援

漁家の 高利 私債負擔을 輕減토록 低利資金 243억원(年利 8%)과 相互

金融資金 259억원(年利 14.5%)을 2年据置 3年償還으로 지원하였다. 低利資金은 非漁船漁業, 無動力船 등 이에 準하는 生活이 곤란한 어가에 戶當 100만원씩, 相互金融資金은 低利資金을 받지 못하는 私債保有漁家와 低利資金 支援額을 초과한 私債額을 보유하는 漁家에게 低利資金을 包含, 戶當 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表 22) 私債代替執行實績 단위: 억원

	確 定 額		執 行 額		未 執 行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計	59,947	502	49,509	475	10,438	87
低利資金	31,899	243	30,143	251	1,756	12
相互金融	28,048	259	19,366	184	8,682	75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나. 零細漁家 中長期資金의 低利 代替支援

非漁船漁業, 無動力船·2톤이하 動力船使用, 小規模 增養殖 漁家에 1987. 3. 15까지 既支援된 中長期施設資金의 金利 10%와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金利 5%를 3%로 引下하였고, 1987. 3. 15까지 發生利子를 정리하면 당초 償還期日에 불구하고 3年据置 7年償還으로 10년간 연장하였다.

(表 23) 零細漁家中長期低利資金支援實績 단위: 억원

	對 象		實 績		未 執 行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計	2,540	40	1,954	35	586	5
漁船建造	1,764	12	1,230	9	534	3
水産施設	402	3	399	3	3	-
漁民後繼者	374	25	325	23	49	2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다. 소 入殖資金 利子 代支給

1983~1984년에 지원된 소 入殖資金중 이미 延期措置된 全資金에 대하여 1985. 1. 1 이후의 利子は 畜産振興基金에서 1억원을 代支給하였다.

라. 水産關聯資金 金利引下

水産資金中 施設性인 漁船建造, 水産施設, 計劃造船(遠洋除外), 借款資金 등 零細漁家 中長期資金의 低利 代替支援에서 제외된 漁民에 대하여도 金利를 8%로 인하하였다.

(表 24) 水産關聯資金 利子 引下 實績

단위: 억원

	對象金額	金利引下		融資期間
		從前	引下	
計	1,484			
漁船建造	309	10	8	2年据置 3年償還
水産施設	288	10	8	3年据置 5年償還
計劃造船 (遠洋除外)	879	11	8	3年据置 7年償還
借款資金	8	9.9	8	2年据置 8年償還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2. 農漁村經濟活性化 綜合對策 推進

1987. 12. 9 農漁村經濟活性化 綜合對策을 樹立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1987. 3. 16 發表한 農漁家負債輕減對策에서 相互金融으로 지원한 私債代替資金의 金利를 14.5%에서 10%로 引下하였으며, 負債輕減對策에

서 除外된 0.5ha초과 農漁家의 農水産關聯中長期資金의 償還期間도 當初의 償還日에 불구하고 5年据置 7年償還토록 하였다.

〈表 25〉 經濟活性化綜合對策推進('88. 5末)

단위: 억원

	延期對象		延期實績		未延期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計	10,639	1,523	6,087	1,012	4,552	511
漁船建造	3,987	328	2,064	224	1,923	103
水産施設	2,871	162	1,367	111	1,504	51
漁民後繼者	3,335	228	2,377	167	958	61
計劃造船	434	801	275	509	159	292
借款資金	12	5	4	1	8	4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3. 營漁資金 利差 補填 및 颱風 被害漁民 約定利子 補助

營漁資金 金利 인하에 따라 발생한 利差額 1,509백만원을 政府에서 補填하였으며, 颱風 被害漁民中 50%이상 被害漁民에 대하여 營漁資金 約定利子 560백만원을 補助하여 漁民負擔을 輕減하였다.

〈表 26〉 颱風被害漁民 約定利子 補助實績

단위: 천원

被害別	件數	元 金	補 助
計	9,869	14,094,109	559,900
'85키티, 리 및 호우	6	14,300	716
'85브렌 다	8,801	11,148,822	345,147
'86베라	1,062	2,930,987	214,037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第 2 章 水産物 需給動向

### 第 1 節 水産物 生産

#### 1. 生産 動向

1987년도 우리나라 水産物 總生産量은 3,332천톤으로 전년보다 328천톤이 減産되어 91%에 그쳤다.

이는 夏節期 颱風 來襲으로 인한 出漁不振과 동절기 異狀暖冬으로 인한 養殖不振에 基因되며 또한 5월이후 韓·美共同事業物量の 輸入看做로 統計上 生産이 減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漁業別로 보면 沿近海漁業은 1,526천톤으로 전년대비 88%, 養殖漁業은 866천톤으로 전년대비 91%, 遠洋漁業은 883천톤으로 전년대비 95%로 감소되었으나 內水面漁業은 57천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魚種別로는 쥐치, 갈치, 명태, 가자미, 재첩, 김 등이 전년에 비하여 생산이 부진한 반면 정어리, 멸치, 고등어, 조기, 오징어, 향어, 뱀장어, 굴 등의 생산이 순조로웠다.

〈表 27〉

漁業別生産推移

단위: %

	'77	'82	'86	'87	'87/'86 (%)
計 ( '77=100 )	2,421,273 (100)	2,644,074 (109.2)	3,659,725 (151.1)	3,331,825 (137.6)	91.0
沿近海 養殖	1,308,323 491,137	1,475,387 596,316	1,725,820 946,965	1,525,999 866,063	88.4 91.5
内水面 遠洋	25,886 595,927	44,552 527,819	57,063 929,886	57,103 882,660	100.1 94.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 2. 沿近海 漁業

1987년도 沿近海漁業生産량은 1,525,999톤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331,825톤의 45.8%를 차지하였다. 業種別로는 어획강도가 큰 大型旋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 近海鉸網漁業 등 近海漁業은 기상악화로 인한 操業日數減少와 勞使紛糾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하여 생산이 부진한 반면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는 共同漁業, 채낚기어업, 定置網漁業 등 沿岸漁業은 생산이 순조로와 전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연간해 전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평년(1984~1986 평균)수준은 유지되었다.

### 가. 大型旋網漁業

大型旋網漁業은 연근해어업중 규모가 가장 크며 70~150톤급 어선으로 東中國海, 제주도, 대마도를 연결하는 해역에서 정어리, 고등어, 삼치,

퀴치, 전갱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이다.

생산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1987년에는 355,817톤을 생산하여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이와같이 감소한 원인은 1986년에 연근해 어류중 생산 1위를 차지하였던 다획성 어종인 퀴치가 겨울·봄철에 適水溫 확산으로 魚群이 분산 회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나. 大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1척으로 조업하는 외끌이와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로 구분되고, 어선의 규모는 50~170톤급으로 서·남해와 東中國海에서 갈치, 퀴치, 가자미, 조기 등을 어획하고 있다.

생산량은 해황변동에 따라 增減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소간의 감소추세에 있으며 1987년도 생산량은 다획성 어종인 퀴치, 갑오징어 등의 생산부진으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223,625톤을 생산하였다.

#### 다. 中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20~8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명태, 대구, 새우류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는 東海區 機船底引網漁業과 서·남해에서 퀴치, 가자미, 갈치, 갑오징어, 꽃게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는 西·南海區 機船底引網漁業으로 구분되고 있다.

1987년도 생산량은 동해안 高溫相 지속에 따른 명태魚群의 회유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24.7% 감소된 41,688톤을 생산하였으며 短期間中에는 海況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대체로 減少趨勢에 있다.

### 라. 近海채낚기漁業

근해채낚기어업은 10~100톤급어선으로 오징어산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장은 魚群의 北上時期에 따라 동·서·남 근해역에서 형성되는데 남해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 서해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까지, 동해는 울릉도 근해 및 大和堆 근해에서 6~11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오징어는 1년생으로 海況與件에 따라 불규칙적인 增減現狀을 보이고 있으며 1987년에는 暖流強勢 영향에 따른 오징어 어군의 북상회유 활발로 순조로운 어황을 유지하여 전년도 25,981톤에 비해 61.7% 증가된 42,011톤을 생산하였다.

### 마. 鮫鱈網漁業

鮫鱈網漁業은 10~10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東中國海海域에서 갈치, 조기, 병어, 갑오징어, 꽃게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산량은 매년 增加趨勢에 있으나 1987년에는 氣象惡化에 의한 출어 부진으로 전년 279,255톤 보다 다소 減少된 269,311톤을 생산하였다.

### 바. 機船船引網(權現網)漁業

機船船引網漁業은 연안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業種으로 50톤급 미만 의 어선으로 남해안에서 멸치를 어획하고 있다.

멸치는 연안 暖流性 어종으로 海況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증감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87년에는 가을철에

沿岸水 발달에 따른 洄游不振으로 전년 149,806톤보다 23.2% 감소된 115,125톤을 생산하였다.

#### 사. 流刺網漁業

流刺網漁業은 동·서·남 전해역에서 조기, 콩치, 명태, 꽃게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생산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987년에는 겨울·봄철에 고온상 지속으로 인한 명태魚群의 회유부진으로 전년 123,112톤보다 20.0% 감소한 98,460톤을 생산하였다.

#### 아. 共同漁業

共同漁業은 일정한 水面을 專用하여 패류, 해조류 등 定着性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第 1 種 共同漁業과 地引網·船引網·焚寄抄網·들망 등을 사용하는 第 2 種 共同漁業·囊長網·髓船網·柱木網 등을 사용하는 第 3 種 共同漁業이 있다.

최근 생산량은 어민들의 적극적인 어장관리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전년의 154,883톤 보다 13.7% 증가한 176,150톤을 생산하였다.

(表 28)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단위 : %

	'77	'82	'86	'87	'87/'86 (%)
計	1,308,323	1,475,387	1,725,280	1,525,999	88.4
大型 旋網	168,997	257,931	458,785	355,817	77.6
大型 機底	185,847	219,129	271,116	223,625	82.5
中型 機底	95,232	74,815	54,603	41,688	76.3
근해채낚기	12,272	45,157	25,981	42,011	161.7
鯨 鯨 網	190,644	259,168	279,255	269,311	96.4
船 引 網	79,317	103,004	149,806	115,125	76.8
流 刺 網	134,080	123,272	123,112	98,460	80.0
共 同 漁 業	159,164	122,624	154,883	176,150	113.7
其 他	282,770	270,287	208,279	203,812	97.9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 '82, '86년의 안강망어업 통계가 '87년판 연차보고서와 상이한 것은 부망, 분기초망 생산량을 기타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 3. 養殖漁業

1987년도 養殖漁業은 異常暖冬 등 海況不適으로 김, 미역 生産이 저조함으로써 1986년의 946,965톤에 비하여 80,902톤이 감소된 866,063톤을 생산하였다.

이와같은 生産量의 減産에도 불구하고 水産物 總生産量에서 養殖漁業 生産量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년 (1984~1986) 24.9%, 전년 25.9%에서 1987년에는 26.0%를 차지함으로써, 養殖漁業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魚類 養殖

1987년 魚類 養殖은 主 養殖 魚種인 방어의 稚魚 採捕 不振으로 1,773톤을 生産, 1986년의 2,915톤에 比하여 1,142톤이 減産되었다.

그러나 魚類 養殖은 1983년 이후 정부에서 積極적으로 開發育成한 結果 魚類 養殖 技術이 相當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1985년 이후 高所得 魚種인 넙치 養殖 開發로 陸上 水槽式 施設이 크게 增加되고 있는 등 방어 위주의 養殖에서 돔, 넙치, 농어, 불락 등 새로운 高級 魚種으로 養殖對象이 확대됨으로써 급후 高級 魚類의 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貝類 養殖

貝類 養殖은 南西海岸의 淺海 干瀉地를 利用하여 漁民所得 增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품종으로서 1987년 446,852 톤을 생산하여 1986년에 比해 47,872톤이 增産되었다.

品種別로는 굴이 288,078톤으로 貝類 生産量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지락·고막·가무락·피조개·홍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다. 海藻類 養殖

미역과 김이 대종을 이루고있는 海藻類 養殖은 1987년 겨울철 異常暖冬에 의한 海況不適으로 김 생산이 저조하였고, 病虫害 發生으로 미역 생산이 다소 부진함으로써 1986년 보다 126,027 톤이 減産된 398,100톤을 生産하였다.

라. 其他 水産動物 養殖

우렁쟁이, 브리새우 등 高所得品種으로서 1987년에는 19,338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1987년 10,048톤을 생산한 우렁쟁이는 독특한 맛과 높은 營養價로 인하여 근래 일반대중의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東·南海岸의 高所得開發 品種으로서 漁民所得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表 29)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 推移

단위: 千

	'77	'82	'86	'87	'87/'86 (%)
計	491,137	596,316	946,965	866,063	91.5
魚 類	-	-	2,915	1,773	60.8
貝 類	254,796	280,966	398,980	446,852	112.0
· 굴	151,325	181,349	255,006	288,078	113.0
· 홍합	60,536	37,826	34,557	26,064	75.4
· 주요패류	35,138	37,441	48,000	69,159	144.1
· 파조개	202	20,389	58,393	58,092	99.5
· 기타	7,595	3,961	3,024	5,459	180.5
海 藻 類	236,242	314,535	524,127	398,100	75.9
· 미역	173,978	225,045	346,434	285,085	82.3
· 김	57,718	79,784	143,369	83,287	58.1
· 다시마	2,122	3,987	9,445	9,980	105.7
· 기타	2,424	5,719	24,879	19,748	79.4
其他水産動物	99	815	20,943	19,338	92.3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1) 주요패류는 고막, 바지락, 거무락

(2) 기타수산동물은 우렁쟁이, 새우, 꽃게, 해삼 등

#### 4. 內水面漁業

內水面的 효율적인開發과 活用을 위하여 大單位 水面에 稚魚를 放養하는 한편 새로운 魚種 및 養魚方法을 적극 개발, 보급함으로써 1987년에는 57,103톤을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養殖에 의한 生産量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9,505톤으로 經濟性 魚種인 향어, 송어, 뱀장어 등이 漸増되고 있으며 漁業의 方法도 漁撈漁業에서 養殖漁業으로 점차 轉換되고 있다.

〈表 30〉 內水面漁業 品種別 生産 推移

단위 : %

	'77	'82	'86	'87	'87/'86 (%)
計	25,886	44,552	57,053	57,103	100.1
養 殖	2,013	882	5,274	9,505	180.2
漁 撈	23,873	43,670	51,779	47,598	91.9
붕 어	3,805	10,526	12,963	12,167	93.9
재 침	12,636	10,881	14,890	13,838	92.9
잉 어 類	1,143	2,753	6,967	8,475	121.6
미 구 리	1,932	3,151	2,651	2,479	93.5
메 기	282	954	1,133	885	88.4
뱀 장 어	320	977	1,049	2,956	282.1
가 물 치	420	899	1,108	1,173	105.9
송 어	7	50	773	822	106.3
순 채	103	65	193	49	25.4
기 타	5,238	14,296	15,326	14,259	93.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 5. 遠洋漁業

沿岸國의 규제강화로 生産활동에 많은 制約을 받고있는 중에서도 1987년에는 다랭이漁業의 好況과 南西大西洋 오징어채낚기漁業의 定着, 그리고 基地트롤漁業의 안정적 増産 등 全 業種이 好調를 보였으나 1987. 5. 1 이후 韓·美共同漁業事業 國內搬入 漁獲物이 輸入으로 간주됨으로써 統計上의 遠洋漁業 生産量은 전년대비 5.1% 감소되었다.

### 가. 다랭이漁業

다랭이漁業은 延繩과 旋網漁業으로 나눌 수 있으며, 延繩漁業은 날개 다랭이를 주로 어획하여 통조림 원료로 공급하는 海外基地式 操業方法과 눈다랭이, 황다랭이를 주로 어획하여 횃감용으로 공급하는 獨航式 方法으로 구분된다. 1987년에는 249척의 다랭이延繩漁船이 출어하여 87,437톤을 어획하였다. 또한 주로 가다랭이를 대상으로 하는 旋網漁船은 20척이 출어하여 전년보다 109.8% 증가된 58,752톤을 어획하여 輸出 및 內需 통조림 原料로 공급하였다.

### 나. 오징어漁業

오징어漁業은 流刺網과 채낚기漁業으로 구분되는데, 1987년도에 流刺網漁業은 北太平洋에 140척이 出漁하여 62,852톤을 어획하였고, 채낚기漁船은 南西大西洋 및 뉴질랜드, 호주漁場에 출어하여 86,311톤을 어획하였다. 특히 이 중 新漁場開發策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 출어한 南西大西洋 漁場에서의 오징어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다. 트롤漁業

트롤漁業은 遠洋漁業中 비중이 가장 큰 業種으로서 遠洋生産量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중 北洋트롤漁業은 명태, 가자미類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美國의 對外國 漁獲쿼타량은 감소하는 반면, 韓·美 共同漁業事業의 확대, 公海上 操業 등이 활발하여 전년보다 15%가 증가된 702,217톤을 생산하였다. (이중 공동사업물량 247,725톤을 輸入으로 간주됨)

또한 海外基地 트롤漁業은 라스팔마스近海漁場, 뉴질랜드漁場 및 모리타리아漁場 등에서 127,902톤을 어획하였으며, 새우트롤漁業은 中南美의 수리남 및 브라질 漁場에서 3,474톤을 어획하여 전량을 수출하였다.

<表 31>

遠洋漁業生産推移

단위: %

	'77	'82	'86	'87	'87/'86 (%)
計	595,927	527,819	929,886	882,660	94.9
참치 延繩	161,517	106,981	95,401	87,437	91.7
참치 旋網	-	12,213	28,000	58,752	209.8
가다랭이	9,366	4,815	-	-	-
채낚기	-	-	-	-	-
오징어 流刺	-	22,669	88,945	149,163	167.7
網 및 채낚기	-	-	-	-	-
상어 流刺網	-	-	585	339	58.0
北洋 트롤	290,918	289,879	610,274	454,492	74.5
基地 트롤	119,543	85,861	101,538	127,902	126.0
새우 트롤	2,422	2,865	2,743	3,474	126.7
기 타	12,161	2,536	2,400	1,101	45.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87생산량은 '87. 5. 1 이후 輸入으로 간주되는 한미공동어업사업분 제외

## 第 2 節 水産物 輸出入

### 1. 水産物 輸出

1987년도 水産物 輸出은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강화를 비롯, 勞使紛糾, 원貨질상 등 國內외적으로 어려운 輸出與件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대의 輸出實績을 올렸다.

1987년도 總輸出規模는 1,731백만\$로 1986년도 1,384백만\$보다 25.1%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成果는 資材의 확보가 비교적 순조로웠을 뿐 아니라 輸出制度 改善, 新製品 開發 및 꾸준한 海外市場 開拓 등의 노력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表 32〉

水 産 物 輸 出 推 移

단위: 백만\$

	'77	'82	'86	'87	'87/'86 (%)
총 수출	10,046	21,616	34,714	47,281	136.2
수산물	703	947	1,384	1,731	125.1
구성비(%)	7.0	4.4	4.0	3.7	

자료: 수산청, 무역과

## 가. 品目別 輸出

水産物 輸出을 沿近海魚類, 遠洋魚類 및 漁網類로 나누어 살펴보면, 沿近海魚類는 대부분 어종의 輸出物量 확보가 순조로와 1,050백만\$어치를 수출하여 1986년 대비 28.4%가 신장되었다. 그중 活鮮魚는 主 市場이 일본으로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짐과 엔貨의 강세 등으로 삼치, 가자미, 서대, 문어, 꽃게, 활피조개, 굴 등이 크게 신장되었고 팔소라, 방어, 도미 등은 생산부진으로 다소 저조하였다.

冷凍品은 가자미, 패주, 새조개 등의 높은 輸出伸張으로 234백만\$어치가 수출되어 전년대비 41.6%가 신장되었으며, 海藻鹽辛品은 가공품의 높은 輸出伸張과 간미역의 輸出單價引上 등으로 128백만\$어치를 輸出하였고, 통조림類는 엔貨강세로 일본에서 수입해가던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로 輸入先을 전환한데다 輸出單價의 引上으로 전년대비 31.7%가 상승한 95백만\$어치를 수출하였다.

乾魚物 및 調味加工品이 대부분인 其他 水産物은 세계적으로 오징어 生産이 증가되어 조미오징어의 輸出이 둔화되고, 쥐치포의 원료인 쥐치 漁獲量의 감소로 輸出物量 확보가 어려웠으나 멸치 등의 輸出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223백만\$어치를 수출하였다.

遠洋魚類는 일본의 明卵在庫 누중과 底棲魚類의 規格品 生産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참치漁船 증가와 일본의 횡감용 참치의 단가 상승, 오징어류의 생산 증가, 美洲地域의 명태필레트 가격 경쟁력 확보와 물량 증가 등으로 571백만\$어치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다. 한편 漁網類 輸出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의 輸出實績 저조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모리타니아,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11백만\$어치를 수출하여 전년보다 9.0% 신장되었다.

(表 33) 品 目 別 輸 出 實 績

단위: 천 \$

	'77	'82	'86	'87	'87/'86 (%)
計	703,073	946,760	1,384,105	1,731,352	125.1
水 産 物	654,551	861,171	1,282,338	1,620,411	126.4
· 환 선 어 *	90,470	150,686	253,555	369,410	145.7
· 냉 동 물	109,010	130,900	165,443	234,319	141.6
· 해조염신품	39,703	122,277	107,960	128,361	118.9
· 통 조 림	33,542	50,790	72,162	95,026	131.7
· 기타수산물	68,339	77,592	218,263	222,550	102.0
· 원양어류	313,487	328,926	464,955	570,745	122.8
漁 網	48,522	85,589	101,767	110,941	109.0

자료: 수산청, 무역과

#### 나. 國別 輸出

輸出對象國은 1986년도에 66개국이었으나 우리 상품의 國際競爭力 강화와 海外市場 開拓으로 1987년도에는 8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대상국별 輸出實績을 보면 일본에 1,173백만 \$ 어치를 輸出, 總輸出의 67.8%를 차지하여 전년도 對日輸出 점유율 71.8%에 비하여 4%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미국에는 전년대비 57.9%가 증가한 294백만 \$ 어치를 수출함으로써 總輸出額의 1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 캐나다, 대만, 호주, 싱가포르 順이었다.

(表 34)

主 要 魚 種 輸 出 實 績

단위: 천\$

	'86	'87	'87/'86 (%)
참 치	200,969	258,499	128.6
피 조 개	86,664	141,703	163.5
붕 장 어	50,943	57,415	112.7
원양 필 레 트	32,494	54,830	168.7
가 자 미	21,836	49,016	224.5
퀴 차 포	42,452	46,591	109.7
원양 명 란	66,833	45,158	67.6
조미오징어	44,718	40,305	90.1
간미역	32,569	40,139	123.2
굴(生乾冷)	19,589	32,689	166.9
가공 톳	17,669	32,029	181.3
굴통조림	39,068	31,174	79.8
오징어	37,025	25,464	68.8
감오징어	17,248	23,519	136.4
꽃게	14,576	23,301	159.9
새조개	11,871	20,431	172.1
바지락	12,013	19,431	161.7
삼치	16,070	19,286	120.0
패주(貝柱)	9,859	18,567	188.3
청어알젓	18,217	17,814	97.8
갯지렁이	13,408	14,669	109.4
연어통조림	4,860	13,215	271.9
멸치	1,530	11,606	758.6
바지락통조림	3,312	11,596	350.1

자료: 수산청, 무역과

〈表 35〉

國 家 別 輸 出 實 績

		'77	'82	'86	'87	단위: 천\$ '87/'86 (%)
計		703,073	946,760	1,384,105	1,731,352	125.1
일	본	461,026	618,172	994,364	1,173,181	118.0
미	국	95,284	107,203	186,454	294,462	157.9
스	페	24,855	37,926	24,098	44,874	186.2
캐	나	6,571	8,799	13,659	16,346	119.7
호	주	4,565	7,137	10,374	13,502	130.2
싱	가	4,777	14,150	8,181	13,063	159.7
사우디	아라비아	2,732	12,181	6,245	5,599	89.7
대	만	13,522	22,159	5,798	13,600	234.6
기	타	80,741	119,033	134,932	156,725	116.2

자료: 수산청, 무역과

#### 다. 制度改善

수출 主宗品에 대하여 輸出指導價格 및 原料收買價格을 인상 조정하여 제값을 받도록 지도하고, 피조개 輸出入 窓口를 확대 (輸出: 21→24개 업체, 輸入: 18→43개 업체)하여 1987년도에 142백만\$어치를 수출함으로써 전년대비 63.5%를 증대시켰으며, 활소라 輸出制度는 종전 水協中央會에서 수출업자 및 가격을 결정하던 방법을 產地水協 競争入札로 전환하였고, 굴통조림 또한 加工業體別 輸出쿼타량 配定制를 실시하여 적정 輸出價格을 유지토록 하였다.

原料를 輸入後 재가공하여 輸出하는 수출용 原資材의 輸入制度를 일부 개선하여 수출업체의 隘路요인을 타개하였고, 수출추천이 불가피한 40개 품目に 대하여만 계속 현재의 추천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表 36) 主要品種에 대한價格引上效果

	輸出價格 ( \$ /kg )	收買價格 ( 원 /kg )	漁民受惠額 ( 억원 )
굴 통 조 립	3.41 → 3.74	590 → 640	9
간 미 역	1.30 → 1.60	97 → 114	36
활 갯 지렁 이	15.00 → 19.50	5,000 → 7,300	15
활 소 라	5.50 → 6.98	3,953 → 6,021	20

자료 : 수산청, 무역과

(表 37) 水産物 輸出 推薦品目

推 薦 維 持 基 準	品 目 數	品 目 名
計	40개품목	
수출시장 지배적인 것	5	생굴, 건굴, 냉동굴, 굴통조림, 활 갯지렁이
어민소득증대와 수출증대를 위 해 자율규제가 필요한 품목	16	붕장어(활선, 냉동), 삼치(활선, 냉동), 가자미(활선, 냉동), 피조 개(활선, 냉동), 새조개(활선, 냉 동), 패주(활선, 냉동), 활소라, 가공돔, 뱀장어, 조미취치포
자원보호 대상품목	4	꽃게, 방어(활선, 냉동), 재첩
어류축양사업 개발품목	2	도미, 능성어
수출조절이 필요한 품목	6	전갱이(활선, 냉동), 양미리, 고등 어(활선, 냉동), 실지렁이
쿼타관리품목	5	간미역, 건미역, 오징어, 감오징어 원양참치
기타	2	홍합통조림, 바지락통조림

자료 : 수산청, 무역과

## 2. 水産物 輸入

水産物 輸入은 우리나라의 輸出 主導品目과 價格競爭力 優位品目 및 食價習을 고려한 품목을 選定, 輸入을 개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生産漁民 보호 측면에서 沿近海 생산어민과 경합되는 품목은 신중히 대처하고, 우리나라 水産業에 影響이 적은 품목도 物價安定과 通商摩擦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유화해 나갈 것이다.

(表 38)

### 輸入 自由化 品目

단위: 개 품목

	品目數	制限品目數	自由化品目數	自由化率 (%)
全體	7,915	670	7,245	91.5
水産物	225	103	122	54.2
農畜産物	492	145	347	70.5

자료: 수산청, 무역과

註: 품목수는 CCCN 분류에 의함

1987년 水産物 輸入은 203백만\$로 1986년에 비해 81.9% 증가하였다. 이는 水産物 加工輸出을 위한 原資材 輸入 증가와 韓·美 共同漁業事業의 輸入分類, 合作漁獲物, 觀光業所 食資材 輸入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중 原資材 輸入은 131백만\$(전체 수입액의 64.5%)로 附加價値提高와 雇傭增大를 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輸出入 期別公告에 불구하고 輸入을 허용하고, 海外合作事業, 共同漁業事業에 의한 漁獲物은 國民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輸入을 허용하고 있으며, 觀光業所用 食資材 또한 外貨獲得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生産이 안되거나 수입하여도 沿近海漁民에게 影響이 적은 品目を 수입 허용하고 있다.

(表 39)

水産物 輸入實績

단위: %, 천\$

	'86		'87		'87/'86 (%)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116,551	111,764	264,216	203,334	226.7	181.9
대 구	9,738	11,331	28,359	29,765	291.2	262.7
연 어	6,423	11,694	4,255	10,299	66.2	88.1
명 태	46,288	17,498	110,984	50,829	239.8	290.5
오 정 어	5,729	6,555	5,924	5,639	103.4	86.0
청 어	11,076	16,577	10,109	17,451	91.3	105.3
기 타	37,297	48,109	104,585	89,351	307.5	185.7

자료: 수산청, 무역과

(表 40)

合作漁獲物 輸入實績

단위: %, 천\$

	'86		'87		'87/'86 (%)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3,649	2,471	4,817	3,322	132.0	134.4
오 정 어	938	770	2,065	1,934	220.1	251.2
건 경 어	1,120	610	1,613	776	144.0	127.2
홍 어	187	118	251	157	134.2	133.1
도 미	16	9	230	137	1,437.5	1,522.2
조 기	-	-	20	10	-	-
기 타	1,388	964	638	308	217.6	32.0

자료: 수산청, 무역과

註: 기타는 상어類, 가자미, 가오리 등

### 第 3 節 水産物 需給

#### 1. 水産物 需給 動向

1987년도 水産物 總供給量은 3,759천톤으로 이중 1,335천톤이 輸出되었고, 2,424천톤이 國內에서 消費되어 전년에 비하여 輸出은 8.0% 증가한 반면, 國內消費量은 5.0% 감소하였다. 이는 「연」貨 強勢에 따라 輸出需要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水産物은 動物性 蛋白質의 主된 供給源으로서 穀物消費量은 減少 추세에 있는 반면, 水産物 消費量은 계속 증가하여 1人 1日當 動物性 蛋白質 供給量도 1977년의 13.12g에서 1986년에는 17.71g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水産物의 動物性 蛋白質 供給比率은 1977년의 65.1%에서 1986년에는 57.8%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畜産物 消費量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表 41〉

水 産 物 需 給 動 向

단위 : 천톤

		'77	'82	'86	'87	'87/'86 (%)
供給	生 産	2,421	2,644	3,660	3,332	91.0
	輸 入	15	61	127	427	336.2
計		2,436	2,705	3,787	3,759	99.3
需要	內 需	1,665	1,984	2,551	2,424	95.0
	輸 出	771	721	1,236	1,335	108.0
1人當年間消費量 (g)		24.3	26.4	32.7	33.6	102.8

자료 : 수산청, 어정파

註 : 1인당 연간소비량은 어패류 만임

(表 42) 動物性蛋白質供給量

단위: g/1인, 1일

	'77	'83	'84	'85	'86	'86/'85 (%)
計	20.16	29.08	29.17	28.52	30.64	107.4
魚貝類	13.12	18.18	17.85	16.44	17.71	107.7
畜産物	7.04	10.90	11.32	12.08	12.93	10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수급표

## 2. 水産物の消費構造

水産物の消費構造는 食生活 改善에 따라 加工, 便利食品의 消費量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7년의 加工用 利用量은 全體 消費量의 7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便利, 代用食品으로서 어묵, 어육소세지 등 煉製品 需要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表 43) 水産物 利用 動向

단위: 천 %

	'81	'85	'86	'87	'87/'86 (%)
漁獲量	2,270	2,336	2,730	2,449	89.7
┌ 鮮魚用	1,033	867	841	545	64.8
└ 加工用	1,237	1,469	1,889	1,904	100.8
건 제 품	271	174	213	159	74.6
냉 동 품	281	384	516	685	132.8
통 조 립	99	133	167	221	132.3
연 제 품	76	173	222	247	111.3
연 신 장 품	37	13	19	22	115.8
해 조 식 품	343	246	381	294	77.2
기 타	130	346	371	276	74.4

자료: 수산청, 제조과

註: (1)원양생산량은 제의 (2) 원료어 기준임

## 第 3 章 漁業經營의 動向

### 第 1 節 漁業經營

#### 1. 沿岸漁業

1987년말 현재 沿岸漁業의 經營體數는 총 49,493개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허가어업의 증가업종은 流刺網, 외출낚시, 帆船底引網, 주낙, 통발, 焚寄抄網 등이며, 細網을 사용하여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허가를 억제하고 점차 감축해가는 沿岸鉸鱗網漁業과 海藻採取, 帆船桁網, 帆船旋網 등이 감소하였다.

어촌계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定置漁業과 共同漁業 중 第1種共同漁業은 증가한 반면 第2種共同漁業 및 第3種共同漁業은 약간씩 감소하였다.

沿岸漁業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소규모 어업으로 겹업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정된 어장에 많은 漁獲努力量을 투입함으로써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臨海工團 施設, 도시의 확장 등으로 工場排水와 都市下水 등의 流入 및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의 사고에 의한 油類被害와 大單位 干拓·埋立事業으로 인한 漁場縮小 등 漁場環境이 점차

惡化되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表 44) 沿岸漁業經營推移

단위: 건

	'77	'82	'86	'87	'87/'86 (%)
計	29,661	36,326	48,509	49,493	102.0
機船船引網	148	135	130	129	99.2
帆船底引網	212	67	36	38	105.6
鮫 鯨 網	1,885	3,576	2,544	2,472	97.2
流 刺 網	10,345	13,177	17,598	17,623	100.1
潛 水 器	273	273	273	271	99.3
定 置 網	673	694	704	705	100.1
외 줄 낚 시	3,299	3,300	4,540	4,719	103.9
주 낚	5,085	7,706	10,140	10,380	102.4
第1種共同漁業	1,147	1,578	1,681	1,708	101.6
第2種共同漁業	97	91	61	60	98.4
第3種共同漁業	794	910	1,020	1,002	98.2
其 他 漁 業	5,703	4,819	9,782	10,386	106.2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 2. 近海漁業

1987년의 近海漁業 經營體는 1,828개로서 전년보다 23개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近海漁業의 減少趨勢는 대부분 近海漁業이 業種別로 許可定限數가 設定되어 있으며, 漁業調整 및 資源保護를 위해 新規許可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業種別로 보면 許可定限數가 設定되어 있는 中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旋網漁業, 東海區트름漁業, 大型

트롤漁業은 비교적 안정된 經營을 하고 있어서 1982년 이후 변화가 있으나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關係法令 違反으로 許可取消, 轉業 등으로 전년에 비하여 3개가 감소하였으며, 許可定限數가 設定되어 있지 않은 近海채낚기漁業은 1987. 8. 1 新規許可抑制措置로 전년보다 20개가 감소하였다.

근래 海漁況與件이 크게 변화하여 漁場의 遠距離化, 一部魚種의 資源減少趨勢 및 人件費, 材料費 등 상승으로 漁業經營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表 45) 近海 漁業 經營體 推移

단위: 건

	'77	'82	'86	'87	'87/'86 (%)
計	1,811	1,843	1,851	1,828	98.8
大型機底	348	291	280	277	98.9
中型機底	107	107	107	107	100.0
大型旋網	33	48	48	48	100.0
東海區트롤	43	43	43	43	100.0
大型트롤	72	88	90	90	100.0
近海채낚기	1,208	1,266	1,283	1,263	98.4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 3. 養殖漁業

1987년 養殖漁業 經營體는 7,888개로서 1986년보다 116개가 증가되었다.

業種別로는 김養殖 經營體가 2,117개로 전체의 26.8%이며, 다음이 主

要貝類養殖 1,081개(13.7%), 굴養殖 1,013개(12.8%)의 順이다.

經營形態別로는 漁村契(協業包含) 經營體가 5,398개로서 總 養殖漁業 經營體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個人經營體 1,643개(20.8%), 水協 847개(10.8%)의 順으로 매년 漁村契(協業) 經營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養殖漁業 經營體 規模를 보면 5人以下 從事 經營體가 52.3%로 가장 많고 다음이 41人以上, 6~10人, 11~15人以下の 順이다. 특히 養殖技術이 普遍化된 品種에 대한 養殖漁業 經營體는 多數漁民 所得增대를 위해 漁村契에 免許하므로써 貝類와 海藻類 養殖은 41人以上 經營體가 5人以下에 이어 가장 많은 經營規模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漁村契 및 水協所有 養殖漁業權으로 地先의 多數漁民이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46) 養殖漁業 經營體 構成

단위: 개

	計	魚類	貝類					海藻類				기타 수산물
			소계	굴	주요 패류	피조개	기타	소계	김	미역	기타	
計	7,888	257	4,137	1,013	1,081	776	1,267	2,898	2,117	673	108	596
수협	847	22	234	65	56	5	108	572	508	47	17	19
어촌계 (협업)	5,398	138	2,668	599	828	402	839	2,179	1,545	556	78	413
개인	1,643	97	1,235	349	197	369	320	147	64	70	13	164

자료: 수산청, 증식과

註: 主要貝類는 고막, 바지락, 가무락

(表 47) 養殖漁業經營體規模

단위: 개

	計	5人 이하	6~ 10人	11~ 15人	16~ 20人	21~ 25人	26~ 30人	31~ 35人	36~ 40人	41人 이상
計	7,888	4,127	693	415	343	259	238	187	198	1,428
魚類	257	226	23	2	1	2	1	-	-	2
貝類	4,137	2,645	223	90	71	82	106	81	87	752
· 굴	1,013	640	73	21	19	18	21	11	21	189
· 주요패류	1,081	516	43	18	20	32	53	42	43	314
· 피조개	776	663	40	14	7	2	4	5	3	38
· 기타	1,267	826	67	37	25	30	28	23	20	211
海藻類	2,898	813	414	304	257	163	119	97	102	629
· 김	2,117	593	288	204	163	117	80	67	67	538
· 미역	673	171	110	91	79	44	39	28	30	81
· 기타	108	49	126	9	15	2	-	2	5	10
其他水産動物	596	443	33	19	14	12	12	9	9	45

자료: 수산청, 증식과

註: 주요패류는 고막, 가무락, 바지락,

기타수산동물은 우렁쟁이, 새우, 꽃게 등

#### 4. 內水面漁業

1987년 內水面漁業經營體數는 912개로 전년보다 211개가 증가되었다. 이는 가두리식 養魚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향어를 비롯, 송어, 틸라피아(민물돔) 등의 養殖技術開發과 아울러 淡水魚 需要가 점증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魚種別 構成은 향어 등을 養殖하는 가두리 養魚場과 무지개송어, 뱀장어 養魚場등이 增加趨勢에 있다.

(表 48) 內水面 漁業經營體 推移

단위: 개소

	'84	'85	'86	'87	'87/'86 (%)
計	403	561	701	912	130.1
잉 어	215	232	214	224	104.7
항 어	58	80	149	223	149.7
뱀 장 어	91	114	123	141	114.6
송 어	27	74	119	141	118.5
기 타	12	61	96	183	190.6

자료: 수산청, 자원조사과

### 5. 遠洋漁業

遠洋漁業은 미국의 北太平洋 漁獲割當量이 격감되는 등 世界 各 沿岸 國의 漁業資源 自國化政策 추구에 따라 入漁規制 및 入漁條件이 강화되고 있어 經營上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안 各국과의 漁業協力을 강화하고 新漁場 開發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老朽漁船의 代替와 遠洋 出漁資金을 확대 지원하였다.

1987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다랭이漁船 27척, 오징어漁船 39척이 증가한 반면, 트롤漁船 3척 기타漁船 4척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59척이 증가되어 遠洋漁船의 총척수는 712척으로 늘어나고 遠洋漁業의 經費中 큰 몫을 차지하는 油類와 船需品의 가격이 안정되고 魚價의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되어 遠洋漁業 經營體의 經營狀態는 다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老朽漁船의 代替와 漁船員의 處遇 및 作業環境을 개선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무리한 施設投資 억제와 適正 經營規模의 유지 등 건실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表 49〉

遠洋漁船推移

단위: 척

	'84	'85	'86	'87	'87/'86 (%)
計	614	617	653	712	109.0
다랭이漁業	237	231	242	269	111.2
·獨航延繩	156	156	167	189	113.2
·基地延繩	69	64	61	60	98.4
·旋網	12	11	14	20	142.9
오징어漁業	136	151	168	207	123.2
·流刺網	117	98	117	140	119.7
·채낚기	19	53	51	67	131.4
트물漁業	233	229	235	232	98.7
·獨航	43	45	44	43	97.7
·基地	83	75	96	96	100.0
·새우	107	109	95	93	97.9
기타漁業	8	6	8	4	50.0

자료: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註: 기타漁業은 가다랭이채낚기, 상어流刺網, 참치流刺網 등임

## 第 2 節 價格動向

### 1. 水産物

1987년 水産食品 價格은 總都賣物價가 전년 平均대비 0.4%, 農産食品 價格이 1.1% 하락한데 비하여 10.7% 상승하였다. 이는 日本의 엔貨 강세로 輸出需要가 증가하고, 하반기 盛需期에 漁獲이 다소 저조한데 기인된다.

類別價格을 살펴보면 鮮魚介類는 물오징어, 갈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이 전년에 비하여 減産되었고 煉肉 등 加工原料의 需要와 輸出需要 增加로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명태, 조기, 조개 등은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鹽乾魚類는 마른멸치가 크게 하락한데 힘입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海藻類의 김·미역은 作況不振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表 50〉

都 賣 物 價 騰 落 率

基準 : '85=100

단위 : %

	'86		'87	
	전년말대비	전년평균대비	전년말대비	전년평균대비
總 都 賣 物 價	-2.6	-1.5	2.7	-0.4
農 產 食 品	-12.9	-3.1	16.9	-1.1
水 產 食 品	22.5	14.9	1.8	10.7
鮮 魚 介 類	32.2	25.3	-2.3	8.1
가 자 미	28.7	2.2	45.3	15.0
조 기	-9.4	-8.6	-13.5	15.7
갈 치	15.5	2.7	5.9	10.3
고 등 어	-6.9	0.3	-8.5	-1.1
물 오 징 어	9.6	10.0	-28.5	-10.6
명 태	71.6	42.0	-10.5	20.2
굴	-24.7	-18.8	21.3	-7.7
삼 치	-1.3	11.5	27.1	-3.0
가 오 리	-18.6	-1.7	44.9	4.8
꽃 계	-44.4	13.2	24.2	-27.5
조 개	19.5	-7.6	55.8	35.2
鹽 乾 魚 類	0.2	9.1	-5.3	-11.7
마른오징어	20.9	-0.1	-12.2	4.2
마 른 멸 치	-13.6	16.0	0.8	-22.1
海 藻 類	-18.8	-26.2	48.7	50.0
김	-16.5	-33.3	53.5	70.0
미 역	-23.0	-6.1	39.4	9.7

자료 : 한국은행, 도매물가

## 2. 漁業用 油類

漁業用 油類는 沿近海 全 漁船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10%와 特別消費稅 9%를 免稅 供給하고 있다.

1987년에는 前년에 비하여 6.9% 증가한 3,624천드럼을 공급함으로써 연간 357억원의 漁民負擔이 輕減되었으며 油價는 國際石油市場의 계속되는 下落勢에 따라 國內油類도 1987. 10. 16 평균 11% 引下措置하였다.

〈表 51〉 免稅 油類 供給 實績

단위: 천드럼

	'77	'85	'86	'87	'87/'86 (%)
計	1,981	3,033	3,388	3,624	106.9
輕 油	1,122	2,413	2,725	2,966	108.8
輕 質 重 油	590	567	601	598	99.5
重 油	259	32	39	33	84.6
潤 滑 油	10	21	23	27	117.4
漁民受惠額 (백 만 원)	6,058	32,894	34,010	35,721	105.0

자료: 수산청, 어정과

〈表 52〉 免稅油價와 市中油價의 比較 ('88. 8. 8 現在)

단위: 원/드럼

	免稅 油價	市中 油價	差 額
平 均	25,259	31,101	5,842
輕 油	26,943	36,400	9,457
輕 質 重 油	23,898	27,248	3,350
重 油	19,831	22,958	3,127
燈 油	30,365	37,800	7,435

자료: 수산청, 어정과

특히 1987년에는 지역적인 均衡發展과 零細漁民에게 免稅惠澤이 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落島·僻地 地域과 小型漁船에 대한 免稅油 擴大 供給에 주력하였다.

〈表 53〉 落島·僻地 免稅油類 供給

	'85	'86	'87
供給對象漁村契數	771	898	1,004
供給量(천 드럼)	135	207	270
漁民受惠額(백만원)	1,643	2,291	2,943

자료 : 수산청, 어정과

### 3. 漁網類

漁網類는 水産業協同組合이 系統組織을 통하여 共同購買하여 漁民들에게 廉가로 공급하고 있다. 漁網類의 內需價格은 1986년에 比하여 1987년에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漁網輸出 回復 및 漁網原絲 價格과 貨金引上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表 54〉 漁網類 價格 推移

	'84	'85	'86	'87	'87/'86 (%)
漁 網	3,782	3,782	4,300	4,711	109.6
로 우 프	1,221	1,188	1,188	1,474	124.1
延 繩	3,355	3,355	3,542	4,301	121.4

자료 : 대한어망공업협회

註 : 漁網과 延繩은 나이론 210D/6 ply기준이며, 로우프는 폴리프로필렌 기준임

#### 4. 漁船 및 裝備

漁船建造費는 船質別, 漁業別, 規模別로 차이가 있으나 1987년도 政府 支援事業에 의한 50吨未滿 漁船의 톤당 平均建造費는 合成樹脂(FRP)船이 3,177천원, 木·鋼船이 2,119천원으로 合成樹脂(FRP)船의 경우 전년 의 2,949천원보다 7.7%가 상승되어 施設의 高級化가 이루어졌으나 木鋼 船은 전년도의 1,968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도 漁船用 디젤機關 供給價格은 機種 및 規模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馬力當 平均 147천원으로 전년도의 153천원보다 3.9% 하락 하였고 其他裝備 供給價格의 경우 平均 5% 下落하였는데 이것은 部品 의 國産化에 基因한 것이다.

(表 55) 裝 備 供 給 價 格 推 移

단위: 천원

	'86			'87			'87/'86 (%)
	量 數	事業費	量當價格	量 數	事業費	量當價格	
30W 無電機	100	120,943	1,209	77	98,706	1,281	106.0
魚群探知機	20	55,391	2,769	34	79,422	2,335	84.3
로 - 란	26	41,376	1,594	57	86,416	1,516	95.1
레 이 다	16	48,667	3,041	45	128,290	2,850	93.7

자료: 수협중앙회

### 第 3 節 水 產 金 融

水產金融의 自立基盤 確立을 위하여 信用店舖의 擴張 및 貯蓄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施設을 47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預受金 증대를 꾀하였으며 資金의 擴大供給 및 適期支援으로 漁民의 便益을 도모하였다.

(表 56)

#### 水 產 資 金 推 移

단위: 백만원

	'77	'82	'86	'87	'87/'86 (%)
計	117,769	367,756	722,818	974,461	134.8
財 政 資 金	25,982	95,796	230,944	262,490	113.7
金 融 資 金	91,787	271,960	491,874	711,971	144.7

자료: 수협중앙회, 연차보고서

#### 1. 水產資金의 調達

水產資金은 水協 自體資金과 政府의 財政資金 貸下金, 金融借入金 등으로 구성된다.

1987년말 信用事業 總規模는 974,46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4.8% 증가되었으며 水協의 資金 自立度는 農漁村綜合對策의 추진 및 漁家負債輕減 對策에 따른 財政資金放出 확대로 1986년 50.8%에서 54.0%로 높아졌다.

(表 57) 水産資金調達

단위: 백만원

	'86		'87		'87/'86 (%)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計	722,818	100	974,461	100	134.8
自體資金	366,932	50.8	526,308	54.0	143.4
・預受金	165,130	22.9	235,632	24.2	142.7
・特別會計預託金	73,246	10.1	81,080	8.3	110.7
・會員換授金	128,556	17.8	209,596	21.5	163.0
借入金	355,886	49.2	448,153	46.0	125.9
・繰銀	117,620	16.3	171,300	17.6	145.6
・財政資金	102,704	14.2	119,386	12.2	116.2
・諸基金	128,240	17.7	150,732	15.5	117.5
・外貨借入金	7,322	1.0	6,735	0.7	91.9

자료: 수협중앙회, 연차보고서

(表 58) 水協自體資金造成實績

단위: 백만원

	'86末殘	'87 純增			'87末殘
		目標	實績	%	
計	528,369	110,763	168,690	152.3	697,059
漁民貯蓄	199,565	50,763	60,798	119.8	260,363
・相互金融	110,340	35,000	52,439	149.8	162,779
・出資	42,699	7,114	6,466	90.9	49,165
・共濟	46,526	8,649	1,893	21.9	48,419
一般受借	328,804	60,000	107,892	179.8	436,696
・中央會	165,128	35,000	70,489	201.4	235,617
・組合	163,676	25,000	37,403	149.6	201,079

자료: 수협중앙회, 연차보고서

註: 本表上の中央會一般受借(235,617백만원)과 表57上の預受金(235,632백만원)과의 差異는 外貨預受金の 差異임

## 2. 水産資金의 運用

1987년 運用資金중 貸出金은 702,423백만원으로 總規模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支拂準備金 등 其他資金에 25.9%가 운용되었다.

貸出金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營漁資金은 沿近海漁業에 3,000억원, 遠洋漁業에 500억원을 공급하였으며 魚類蓄養事業 등은 資金의 回轉期間이 길어 融資期間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表 59〉 水 産 資 金 運 用

단위: 백만원

	'86		'87		'87/'86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
計	722,818	100.0	974,461	100.0	134.8
貸 出 金	602,347	83.3	702,423	72.1	116.6
他 事 業 支 援	13,874	1.9	19,517	2.0	140.7
· 一般事業	11,471	1.6	14,670	1.5	127.9
· 特別會計	2,403	0.3	4,847	0.5	201.7
支 拂 及 現 金	56,192	7.8	142,535	14.6	253.6
其 他	50,405	7.0	109,986	11.3	218.2

자료: 수협중앙회, 연차보고서

〈表 60〉 營 漁 資 金 供 給

단위: 억원

		'86	'87	'87/'86
				(%)
所 要 額		6,311	6,757	107.1
所 供 給 額		3,180	3,500	110.1
沿 近 海	所 要 額	4,811	4,980	103.5
	所 供 給 額	2,710	3,000	110.7
遠 洋	所 要 額	1,500	1,777	118.5
	所 供 給 額	470	500	106.4

자료: 수협중앙회, 연차보고서

## 第 4 章 水産物 生産

### 第 1 節 沿近海 漁場의 環境 變化

#### 1. 海 況

1987년도 우리나라 沿近海의 海況을 계절별로 平年海況과 비교하여 보면, 겨울철 海況은 暖流系水 (大韓暖流, 東韓暖流, 黃海暖流)가 강세인 반면, 北韓暖流 및 黃海冷水는 약세였으며, 南海岸 沿岸水 分布域과 東海 中部의 一部海域을 제외한 대부분의 海域이 高溫相이었다.

봄철 海況은 이른 봄까지 강세였던 暖流系水가 늦은 봄에 약화되고 北韓寒流와 西海 中層以深의 黃海冷水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겨울철에 발달하였던 南海岸 沿岸水는 이른 봄까지 지속후, 늦은 봄에는 南海 中部沿岸의 低溫水로 잔존하였다. 따라서 이른 봄에는 東海 中部의 一部海域과 南海 中部 沿岸 및 西海 南部의 一部 海域을 제외한 대부분의 海域이 高溫相이었으며, 늦은 봄에는 東海의 一部 海域 및 西海의 一部 沿岸을 제외한 海域이 低溫相이었다.

여름철 海況은 北韓寒流 및 黃海冷水의 強勢, 계속적인 장마와 颱風 등으로 暖流系水가 약세를 보여 全海域이 低溫相이었다.

가을철 海況은 여름철까지 약세였던 暖流系水는 이른 가을 이후 강세를 보인 반면, 北韓寒流가 약세로서 竹邊 이북의 沿岸에 停滯하였고, 黃海冷水는 늦은 가을에 약세였다. 따라서 이른 가을에는 東海 墨湖 이북의 沿岸, 濟州道 周邊海域 및 西海 中部海域을 제외한 대부분의 海域에서 高溫相이었다. 늦은 가을에는 濟州道 西方의 一部海域 및 東海의 竹邊 以北의 沿岸을 제외한 海域에서 高溫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87년의 海況은 暖流系水가 약세였던 늦은 가을부터 여름철까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하여 高溫相이었다.

## 2. 漁 況

### 가. 大型旋網漁業

겨울철에서 봄철까지는 大韓暖流가 평년에 비해 강하게 북상하여 대상 어군의 漁獲適水溫이 확산됨으로써 제주도 주변에서는 고등어, 말귀치, 부세 등의 漁況이 부진하였으나 대마도쪽에서는 정어리의 來遊量 증가로 다소 密度 높은 어황을 보였다.

여름철에 들면서는 大韓暖流가 外海域으로 통과함으로써 남해안에서는 水溫躍層의 未發達로 어군을 분산화유케 하였으며 가을에는 수온하강 지연으로 대상어군의 남하회유가 늦어져서 부진한 어황이 지속되었다. 이로써 旋網漁業은 1986년에 비하여 정어리를 제외한 고등어, 말귀치 등의 어획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어황이 저조하였다.

#### 나. 오징어 채낚기漁業

東海岸에서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寒·暖流間의 水溫前線이 울릉도 주변~대화도간에서 장기간 형성됨으로써 好況을 보였으며, 西海岸에서도 10°C 이하의 黃海 底層冷水와 表層 高溫水間에 10~30m層에서 조밀한 水溫躍層을 형성하여 밧집어장을 이루었다.

#### 다. 刺網漁業

東海岸의 底層에서는 北韓寒流가 弱勢인 반면에 暖流가 東海岸 전역으로 확산함으로써 평년에 비해 高溫相을 보였다.

이로써 냉수성 어족인 명태는 연안쪽으로의 집안회유가 부진, 전년 이하의 부진한 어황을 보였으나, 表層을 操業區域으로 하는 꽁치 자망어업은 연안쪽에 형성된 水溫前線緣邊에서 다소 좋은 어황을 보였다.

남해안에서는 漁期初부터 발달한 연안수의 영향으로 연안쪽의 수온이 저온상을 보임으로써 대상어군의 내유량이 감소되어 저조한 어황을 나타냈다.

서해 및 東中國海域을 주 조업구역으로 하는 조기 유자망어업은 겨울철에 소코트라 남쪽의 越冬場에서 전년과 비슷한 어황을 보였으나, 봄철 이후 북상어군이 황해 냉수의 영향으로 분산됨으로써 어군밀도가 점차 낮아져 어황은 부진하였다.

#### 라. 近海鉸網漁業

겨울철에는 황해 저층냉수와 난류간에 水溫前線이 일향초~소코트라간

의 외해측에서 형성됨으로써 이 前線緣邊에서 조기류를 주 대상으로 밀집어장을 형성하였으나 봄철에 들면서는 황해 저층냉수가 남하 확장하면서 대상어군을 분산케 하여 魚群密度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안강망어업은 전년에 비하여 참조기를 제외한 갈치, 감조징어 등의 부진으로 다소 부진한 어황을 보였다.

### 3. 主要 水産資源 動向

沿近海漁業의 總漁獲量은 1974년 이후 增加率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1년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單位努力當漁獲量은 1974년 이후 계속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主要 魚種에 대한 漁獲狀況을 보면 정어리 漁獲量은 전년에 비해 20% 증가된 194천톤으로서 沿近海 漁獲量中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멸치 (167천톤), 귀치류(154천톤), 갈치 (113천톤), 고등어 (101천톤)順으로서, 이들 5개 魚種이 沿近海漁業 生産量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生物學的 要因과 資源密度指數 變動의 推移 등 資源力學的인 諸要因에 의하여 분석한 沿近海 主要 魚種別 資源動向을 요약하면, 정어리는 增加趨勢였으며, 멸치, 말귀치 등은 비교적 平衡을 維持하고 있고 참조기, 참돔 등 대부분의 底棲魚類와 전갱이, 궁치 등의 資源狀態는 낮은 수준에 있다.

그외에 꽃게는 불규칙한 資源動向을 보이고 있으며, 갈치 및 고등어 資源의 수준은 최근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第 2 節 水産資源의 造成 · 管理

### 1. 人工魚礁施設

人工魚礁는 水産資源의 産卵, 棲息에 적합한 環境을 造成, 水産資源을 증강시키는것은 물론 小型機船底引網 등의 不法操業을 방지하여 水産資源을 保護하는 效果가 있어 1971년부터 沿岸水域 20~40 m 水深의 開發 適地에 施設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9,722백만원을 投資, 7,278ha에 시 設하였다.

(表 61) 道別 人工魚礁施設實績

단위 : ha, 백만원

	計			'71~'86			'87		
	面積	物 量	金 額	面積	物 量	金 額	面積	物 量	金 額
計	31,272	214,586	39,205	23,894	173,180	29,483	7,278	41,406	9,722
釜 山	100	600	130	—	—	—	100	600	130
京 畿	257	2,655	293	157	2,055	160	100	600	133
江 原	5,176	37,887	6,381	4,144	32,349	4,985	1,032	538	1,396
忠 南	843	6,499	991	519	4,557	574	324	1,942	417
全 北	865	5,740	964	526	3,720	548	339	2,020	416
全 南	6,222	40,004	8,399	4,919	33,558	6,577	1,303	6,446	1,822
慶 北	5,540	36,347	6,876	4,294	28,757	5,205	1,246	7,590	1,671
慶 南	8,885	56,105	10,995	6,935	45,507	8,509	1,950	10,598	2,486
濟 州	3,384	28,749	4,176	2,500	22,677	2,925	884	6,072	1,251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 2. 種苗生産放流

沿岸水産資源의 증강을 위한 種苗放流 및 養殖用 種苗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973년부터 1986년까지 水産種苗培養場 8개소를 완공한데 이어 1987년에도 濟州道 南元에 1개소를 시설중에 있다. 國立水産振興院에서는 1987년에 전복 992천마리, 우렁쉥이 7,820천마리, 브리새우 및 대하 5,870천마리, 넙치·돔 548천마리 등 총 15,230천마리의 種苗를 生産, 漁村契와 民間養殖場 등에 분양하거나 沿岸에 방류하였다.

(表 62)

水産種苗培養場施設

단위: 백만원, 천마리

	施設年度	施設費	主要生産種苗	生産實績	
				'76~'86	'87
計		5,944		38,828	15,230
北濟州	'73	425	전복, 참돔	6,216	207
注文津	'78	303	전복, 우렁쉥이	5,929	700
麗川	'79	350	전복, 우렁쉥이, 돔	6,133	600
迎日	'80	292	전복, 우렁쉥이	4,362	1,290
巨濟	'82	711	전복, 브리새우, 넙치	15,590	9,272
莞島	'84	975	전복, 우렁쉥이, 돔	598	2,091
保寧	'85	959	전복, 조피볼락, 대하	-	1,070
扶安	'86	955	전복, 조피볼락	-	'88生産
南濟州	'87	974	돔, 넙치	-	'89生産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또한 沿岸漁場 資源造成의 加速化와 資源造成의 民間參與를 유도하기 위하여 民間種苗培養場에서 생산한 水産種苗를 1986년도부터 買入, 沿岸에 放流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63백만원을 투자하여 꽃게, 우럭 등 127만마리를 買入 放流하였다.

〈表 63〉 民間 種 苗 買 入 放 流 實 績

단위: 천마리, 백만원

	'86		'87		'87/'86 (%)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624	30	1,273	63	204.0
꽃  계	333	10	643	19	193.1
우  럭	291	20	630	44	216.5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대구 人工受精卵 放流事業은 1981년부터 主要 産卵場인 慶南 鎮海灣에서 慶尙南道 主管하에 실시하였지만 1987년부터는 水産業協同組合中 央會에서 對漁民 還元事業으로 2,029백만알의 受精卵을 방류하였다.

〈表 64〉 大 久 人 工 受 精 卵 放 流 實 績

단위: 백만알, 백만원

	計	'81~'85	'86	'87
放 流 量	12,669	8,121	2,519	2,029
金  額	459	319	80	60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母川에 回歸하는 習性을 이용하는 연어 人工孵化 放流事業은 1967년 慶南 密陽江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후 매년 확대 실시하여 1987년에는 682만마리(수산진흥원: 496, 독립내수면시험장: 186)를 방류하였다.

〈表 65〉 연 어 放 流 및 採 捕 實 績

단위: 천마리

	計	'67~'85	'86	'87
稚 魚 放 流	36,005	23,595	5,590	6,820
回 歸 魚 採 捕	42	23	9	10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 3. 内水面 稚魚放養

양질의 蛋白質을 공급하고 遊漁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1987년에는 國費 551백만원을 투자하여 잉어, 떡붕어, 향어, 무지개송어 등의 稚魚 34백만마리를 放養하므로써 1987년까지 우리나라 内水面중 稚魚放養 可能面積 79천ha 중 80%에 해당하는 63천ha에 稚魚를 放養하였고, 内水面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19개소의 大單位 水面과 主要 江·河川을 水産資源保全地域으로 指定 管理하고 있다.

(表 66)

稚魚放養實績

단위: 천마리

	水面積 (레 타)	計 劃 ( A )	實 績			B/A ( % )
			計 (B)	'71~'86	'87	
計	78,661	786,610	631,999	598,242	33,757	80.3
○大單位水面	54,044	540,440	458,033	424,276	33,757	84.8
牙 山 湖	2,800	28,000	4,603	4,603	-	16.4
昭 陽 湖	7,140	71,400	59,440	55,440	4,000	83.2
衣 岩 湖	1,378	13,780	2,060	2,060	-	14.9
忠 州 湖	9,700	97,000	60,994	31,237	29,757	62.9
完了水面 (14 個湖)	33,026	330,260	330,936	330,936	-	100.2
○優良貯水池	24,617	246,170	173,966	173,966	-	70.7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註: 放養完了水面은 淸平, 南陽, 破虜, 春川, 槐山, 大清, 禮唐, 插橋, 雲岩, 榮山, 羅州, 寶城, 安東, 晉陽湖임

(表 67) 内水面水産資源保全地域指定

단위 : ha

	地 域 別	面 積	告 示 日 字
大單位水面	15 個所	27,485	
	清 平 湖	810.1	'86. 7. 21
	牙 山 湖	2,270.2	'84. 12. 27
	南 陽 湖	711.2	"
	破 溝 湖	1,026	"
	昭 陽 湖	5,431.6	'86. 7. 21
	春 川 湖	1,507.4	'84. 12. 27
	大 清 湖	1,547.9	'86. 7. 21
	槐 山 湖	147.3	"
	禮 唐 湖	959.4	"
	插 橋 湖	2,174	"
	雲 岩 湖	1,542	"
	羅 州 湖	780	"
	寶 城 湖	122.5	"
	榮 山 湖	4,508.4	"
	安 東 湖	3,947	"
河 川	4 個所	9,224.6	
	南 漢 江 上 流	60	'84. 12. 27
	襄 陽 南 大 川	135	'77. 12. 13
	盈 德 五 十 川	1,889.6	'78. 11. 22
	蔚 珍 王 避 川	7,140	'82. 1. 8

자료 : 수산청, 자원조사과

### 第 3 節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

#### 1. 沿岸漁業의 保護育成

沿岸漁業은 도지사 許可漁業으로서 許可漁業과 申告漁業으로 구분되며 허가어업으로는 沿岸流刺網漁業 등 12개 어업이 있고 신고어업으로서는 徒手漁業 등 9개 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연안어업의 어선규모는 소형어선으로 8톤미만 (舊톤수 10톤 미만) 동력선과 무동력선으로서 그동안 도지사가 어장이나 자원상태, 어업 경영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한없이 허가함으로써 어업허가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어선의 근대화 시책에 따라 漁船의 動力化, 漁務裝備의 現代化 및 漁撈技術의 發達로 漁獲強度가 높아지고, 沿岸水域은 대규모 干拓事業으로 어장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해공단 배수 및 도시하수 유입,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 사고에 의한 油類被害 등으로 漁場環境이 크게 惡化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생산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연안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안어장에 人工魚礁를 시설하고 種苗를 대량 생산 放流하는 등 資源造成事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어민지도로 漁業秩序를 確立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沿岸漁船의 무제한적 증가는 資源減少와 漁業經營 安定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수역에 대한 자원상태와 기존의 어업 허가 및 경영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1987년 부터 각 시·도에서는 연안 허가어업의 전 업종과 일부 申告漁業에 대하여 漁業別 適正 許可件數를 정하여 條例로 告示하고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는 등 新規許可를 抑制하고 있다.

그리고 細網을 사용하여 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큰 沿岸鮫鱈網漁業 등에 대하여는 적정진수에 달할 때까지 계속 감축하여 나가고 있으며 어선건조도 노후어선 대체나 피해복구어선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新規漁船 建造를 抑制하여 연안어업을 보호·육성해 나가고 있다.

## 2. 近海漁業의 再編成

近海漁業의 지속적인 生産維持와 沿岸 隣接國이 우리나라에 대해 200海里 經濟水域을 실편하거나 적용할 경우 일부 漁場의 縮小에 따른 漁業經營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近海業種中 漁獲強度가 큰 大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트름漁業, 大型旋網漁業, 近海鮫鱈網漁業에 대해서는 關聯業種別水協 主管으로 자율적인 減隻推進을 위해 減隻基金을 확보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減隻資金 確保方案을 강구중에 있고 自然減隻 促進을 위해 行政措置를 강화하여 近海漁業 調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近海業種中 新規許可를 억제하지 않았던 近海채낚기漁業, 近海의 줄낚시漁業, 近海延繩漁業, 近海流網漁業, 近海刺網漁業, 문어단지漁業 등 6개業種에 대해서도 1987. 8. 1. 新規許可를 억제토록 함으로써 定限數가 설정되어 있는 機船桁網을 제외한 全 近海業種에 대해서 新規許可 抑制措置를 斷行하였으며, 이러한 新規許可 抑制措置에도 불구하고 一部業種에 대해서는 船腹量이 대폭 증가하여 漁獲強度가 증대되고 있는 문제점

이 있어 業種別로 船腹量을 정하여 告示(1987. 7. 14)함으로써 近海漁業에 있어서 漁船의 隻數 및 船腹量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근년에 들어 장어통발漁船의 漁具規模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漁船規模 및 隻數 制限에도 불구하고 資源保護 實効性 確保가 어렵고 다른 漁業 및 同一 業種間에 漁具 및 漁場 紛爭은 물론 日本 沿岸水域에 집중 출어함으로써 日本 漁船과의 紛爭이 자주 발생하여 장어통발漁船의 漁具規模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해 1987. 6. 9. 장어통발漁船의 톤급별 漁具規模基準 등에 관해 告示하였다.

### 3. 漁業秩序 確立

1980년대에 들어 沿近海漁業의 伸張率이 현저히 둔화되고 일부 沿近海漁業 資源의 減少 및 濫獲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近海漁業의 外延漁場 擴大 制約 및 隣接國과의 操業競爭 深化, 大單位 埋立·干拓 및 水質汚染 등에 의한 沿岸漁場의 縮小와 漁場環境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으나 不法漁業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있어 1987년도에는 小型機船底引網, 機船桁網과 같은 常習企業型 不法漁業을 우선 단속하고 특히 地域擔當制 실시, 매분기별 有關機關 合同團束 실시, 出入港 統制 強化, 不法漁獲物 流通經路 追跡調査에 역점을 두어 指導 團束을 실시하였다.

1987년도의 團束實績은 1986년보다 586편이 감소한 2,399건으로, 海域別로는 南海岸이 1,310건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東海 및 西海는 45.4%인 1,089건으로 나타났다. 漁業別로는 小型機船底引網과 機船桁網이 1,419건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다.

(表 68) 不法漁業團束實績

단위: 건

	'83	'84	'85	'86	'87
計	3,410	3,033	2,567	2,985	2,399
大型機底	16	28	40	27	23
中型機底	37	27	40	42	46
小型機底	1,766	1,539	1,186	1,549	1,122
機船桁網	336	451	226	276	297
潛水器	180	146	93	103	86
船引網	62	16	34	17	1
流刺網	201	191	91	120	92
其他	812	635	857	851	732

자료: 수산청, 지도과

또한 이와같은 指導團束 強化 및 團束方法의 改善만으로는 不法漁業이 根絶될 수 없음을 감안, 漁民意識 改革을 위해 漁民, 水産關係機關 및 團體 任職員에 대한 弘報 및 教育 강화, 10톤未滿漁船 建造 統制 등 制度改善을 통한 不法漁業 發生原因을 제거하고, 不法漁船의 出入港 統制 및 團束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關係部處와의 協助를 강화하고 있다.

#### 4. 安全操業 指導

##### 가. 海難事故 現況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연근해어선 海難事故는 年平均 275척이 發生, 이중 209척은 救助되고 66척이 沈沒되었으며, 190명의 人命被害가 발생하였다.

1987년도의 事故件數는 최근 5개년간의 平均値와 비슷한 수준이나 人命被害는 썰마颱風의 來襲 등 氣象惡化로 인한 大型事故가 많이 발생하여 133명이 증가하였다.

(表 69) 漁 船 海 難 事 故 推 移

	'83	'84	'85	'86	'87	年平均
事故發生(隻)	343	270	255	241	266	275
· 救助(%)	278	211	189	170	196	209
(%)	(81)	(78)	(74)	(71)	(74)	(76)
· 未救助(%)	65	59	66	71	70	66
人命被害(名)	129	115	201	185	323	190

자료: 수산청, 지도과

發生原因別로 분석하면, 機關故障이 全體事故의 62%로 가장 많고, 運航過失 24%, 氣象惡化 14% 順이나, 船舶沈沒과 人命被害는 이와 반대로 氣象惡化가 50%와 89%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70) 海 難 事 故 原 因 및 類 型

단위: 척, 名

		發 生	沈 沒	人 命 被 害
計		266 (100)	70 (100)	323 (100)
原 因 別	機關故障	165 (62)	14 (20)	-
	運航過失	64 (24)	21 (30)	36 (11)
	氣象惡化	37 (14)	35 (50)	287 (89)
	漂 流	161 (61)	-	-
類 型 別	沈水·顛覆	51 (19)	44 (63)	255 (79)
	衝突·坐礁	44 (17)	19 (27)	32 (10)
	火災·其他	10 (3)	7 (10)	36 (11)

자료: 수산청, 지도과

海域別 發生 狀況을 보면, 南海岸이 제일 많고, 西海와 東中國海, 東海의 順이었다. 어선규모모별 사고는 50톤 이상의 漁船勢力은 3%(遠洋漁船除外)에 불과하나 事故發生은 65%를 차지하여 遠海操業漁船이 事故가 많았다.

(表 71) 海域別 및 噸 級 別 海難 事故 단위: 척, 名

計		發 生	沈 沒	人 命 被 害
		266 (100)	70 (100)	323 (100)
海 域 別	東 海	33 (12)	15 (21)	55 (17)
	大 和 堆	3 (1)	2 (3)	17 (5)
	西 海	68 (26)	22 (31)	87 (27)
	南 海	95 (36)	25 (36)	112 (35)
	東 中 國 海	67 (25)	6 (9)	52 (16)
噸 級 別	10 噸 未 滿	27 (10)	12 (17)	31 (10)
	10 ~ 50	66 (25)	30 (43)	106 (32)
	50 ~ 100	145 (55)	22 (31)	132 (41)
	100 噸 以 上	28 (10)	6 (9)	54 (17)

자료: 수산청, 지도과

(表 72) 業 種 別 海難 事故 단위: 척, 名

計	發 生	沈 沒	人 命 被 害
	266 (100)	70 (100)	323 (100)
鉸 鰯 網	133 (50)	10 (14)	15 (5)
流 刺 網	29 (11)	13 (19)	50 (15)
연 승	23 (9)	9 (13)	22 (7)
동 발	30 (11)	15 (22)	54 (17)
오 경 어 船	28 (11)	8 (11)	98 (30)
底 引 網	14 (5)	11 (16)	75 (23)
트 물	3 (1)	1 (1)	- (-)
旋 網 · 其 他	6 (2)	3 (4)	9 (3)

자료: 수산청, 지도과

#### 나. 出入港 統制 및 安全操業 敎育

沿近海 出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하여 船舶出入港 申告機關인 統制所 및 合同申告所에 水協의 漁船安全点檢要員 94명을 배치하여 出入港漁船에 대한 安全点檢을 실시하였으며, 漁民의 出入港申告에 따른 便益 增進을 위하여 厚浦港의 合同申告所를 統制所로, 翰林港의 申告所를 合同申告所로 昇格 지정하였다.

安全点檢要員은 申告所長의 指揮하에 特定海域 및 操業自制海域 出漁船에 대한 出漁登錄, 漁船團編成 業務를 수행하는 한편 나침의, 海圖, 救命胴衣와 같은 重要 航海裝備, 漁船檢査有効期間, 船員資格 등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漁船이 航海 또는 조업중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海難事故 및 越線被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船員 安全操業敎育으로는 地域別 또는 業種別 水協에서 船主, 船長, 機關長, 通信長 등 93,275명을 대상으로 政府施策, 安保敎育, 安全操業에 관하여 연 1회, 4시간을 실시하였고 盛魚期를 맞아 出漁時는 安全操業 및 越線防止에 관한 特別敎育을 실시하였다.

한편 安全操業을 위해 沿岸 3마일이내의 海域에서는 夜間 漁撈 및 航海를 禁止하여 왔으나 操業統制로 인한 漁民 生計支障과 生活上의 不便을 해소하기 위해 1987. 11 緩和方針을 市道知事에게 示達함과 아울러 細部事項은 地域防衛協議會에서 결정하고 市道知事が 告示토록 하였다.

緩和된 內容은 3隻 이상의 船團을 編成하여 당일 12:00까지 出入港申告所 등에 申告後 出漁 操業토록 하고 夜間入港은 事前 承認을 받아 指定된 航路와 港浦口를 이용토록 하였다.

반면 國家 主要施設地域 및 軍事施設地域은 중전과 같이 操業을 금지하여 不純分子의 침투 등에 대비토록 하였다.

### 다. 海難救助

漁船이 操業中 불의의 事故를 당했을 때 빠른 시간내에 구조하기 위하여 漁船團을 編成, 同 - 船團漁船은 相互 安全을 確保하고 有事時 1차적인 救助活動을 수행함은 물론, 遭難通信의 代行, 被救助者의 救護와 船體曳引 등으로 漁船間의 救助率을 높이고 있다.

漁業無線局에서는 出漁船의 位置를 파악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救助機關과 常時 協助體制를 유지하고 있으며, 水産廳에서도 中央救助機關과 連絡網을 構成, 연중 運用하고 있다. 또한 東中國海 및 大和堆 漁場 盛漁期에는 水産廳 大型指導船을 現場에 파견하여 安全操業 指導와 병행하여 遭難船 救助活動과 病傷者 진료에 임하였다.

<表 73>

機關別 海難漁船 救助實績

단위: 척

		'83	'84	'85	'86	'87
事	故 發 生	343	270	255	241	266
救	助	278	211	189	170	196
機	漁船相互	185	132	127	81	66
關	救助機關	78	67	51	79	122
別	其 他	15	12	11	10	8

자료: 수산청, 지도과

### 라. 漁船檢査

漁船檢査는 船體·機關 등 漁船의 각 設備에 대한 事前點檢으로 漁船의 安全性을 확보함으로써 海에서 漁民의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安全操業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海難事故豫防을 위하

여 海難事故原因을 분석하여 事故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檢査 徹底와 老朽漁船에 대한 各種設備 老朽度 測定, 補完檢査 등으로 漁船檢査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漁船檢査時 現場 漁民 指導教育用으로 氣象 惡化, 運航過失, 整備不良 등 事故原因에 대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漁船 海難事故豫防要領을 製作 배부하였다.

1987년도의 檢査對象漁船은 39,522척이며 檢査實績은 定期檢査 19,307척, 中間檢査 846척 등 총 27,322척에 대한 漁船檢査를 실시하였다.

(表 74) 漁船檢査實績

단위:척

	'83	'84	'85	'86	'87
檢査對象	33,969	36,046	35,734	37,782	39,522
檢査實績	20,988	20,710	21,689	22,864	27,322
· 定期檢査	14,489	14,400	15,222	15,656	19,307
· 中間檢査	731	750	1,074	1,243	846
· 臨時檢査	5,768	5,560	5,393	5,965	7,169

자료: 한국어선협회

## 5. 被害復舊 支援

1987년에는 두 차례의 큰 颱風(셀마 및 다이너 號) 및 暴風雪로 인하여 많은 人命과 財産被害를 입은 바 있다.

被害가 컸던 主要原因은 滿潮時 海溢을 同伴하였음은 물론 風向의 隨時變化로 待避漁船의 被害가 컸으며 養殖物 主成長期에 颱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颱風으로 인한 水産被害內譯을 보면 人命被害는 261명(死亡 37, 失蹤 224)이며 財産被害로는 漁船 6,593척, 漁港施設 881개소,

増養殖施設 2,410件 등 총 673억원에 달하며 686억원 (國庫 307, 融資 282, 地方費 97)의 被害復舊費를 지원한 바 있다.

復舊費 以外에도 人命被害에 있어서는 慰勞金を 181만원에서 300만원으로 引上 支給하였고 無動力船과 5톤미만 動力船의 國庫補助率을 20%에서 30%로, 増養殖生物被害復舊를 위한 種苗代의 補助率도 60%에서 70%로 인상하였으며, 漁民 自負擔에 대하여도 全額 融資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間接支援으로는 營漁資金 償還延期(2년) 및 利子免除, 罹災學生 授業料 免除 (2期分)와 被害漁家에 대한 無償糧穀支給 (16,767 家口, 61, 008가마), 特別生計補助金支給 (12,232 家口, 37억원) 및 特別生産資金 支援 (16,326 家口, 70억원) 등 총 388억원을 被害漁民에게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生業에 復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表 75)

被害復舊費支援實績

단위: 백만원

	被害內譯		復 舊 內 譯					
	物 量	金 額	物 量	計	國 庫	融 資	地方費	自 擔
計		67,345		86,766	30,685	28,214	9,678	18,289
漁 船	6,593隻	15,960	6,181	31,770	5,533	18,116	5	8,116
漁 港	881個所	21,294	836	20,998	11,335	-	9,663	-
増養殖	2,410 件	15,757	2,402	18,790	11,226	1,296	10	6,258
(內水面)	(65)	(695)	(65)	(628)	(483)	-	-	(145)
漁 網	1,147 "	11,218	1,136	11,990	2,398	7,194	-	2,398
其 他	82 "	3,116	80	3,218	93	1,608	-	1,517

자료: 중앙재해대책본부

註: 북구비내역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액임

## 第 4 節 養殖 및 內水面 漁業 開發

### 1. 養殖漁業

水産物の 안정적 供給과 養殖漁家の 所得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養殖漁場 擴大開發을 적극 추진한 결과 1987년까지 淺海 養殖漁場 開發面積은 98,386ha에 이르고 있다.

種類別로는 魚類養殖 475ha(0.5%), 貝類養殖 41,424ha (42.1%), 海藻類養殖 53,771ha (54.6%), 其他 水産動物 養殖 2,716ha(2.8%)이다.

최근의 養殖漁場 開發은 干拓·埋立·臨海工團 建設 등 內灣性漁場의 縮小와 汚染 등의 制約에 對處하여 外延漁場과 新品種 開發, 地域別 特性을 고려한 高所得品種 開發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既存 養殖漁場의 單位生産性 向上을 위하여 養殖漁場 管理指導 強化를 통한 病害의 豫防과 漁場清掃 등 漁場淨化事業의 추진에 의한 漁場 保全管理 指導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1987년 養殖漁場 開發을 위한 政府 支援事業으로 4,203백만원을 투자하여 바지락, 가무락, 고막, 새고막 등 漁村契 다수 漁民의 共同 參與와 所得擧揚이 용이한 品種은 漁村契 所得源 事業으로 지원하였고, 魚類, 우렁앵이 및 眞珠養殖 등과 같이 높은 技術과 많은 資本이 所要되는 事業에 대하여는 一般 漁民에게 지원함으로써 養殖漁場 594ha와 魚類養殖 21개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養殖漁場의 單位生産性 提高 및 優良種苗 普及 등 養殖 基礎 施設 확충을 위하여 698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種苗培養場, 飼料 貯藏 施設 등 11개소를 지원하였다.

## 2. 內水面漁業

大單位水面的 稚魚放養과 더불어 향어 가두리, 뱀장어, 무지개송어, 민물돔 養魚場 施設費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溫泉水를 이용한 養魚場 施設과 高密度 循環濾過式 養魚를 지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地域特性에 맞는 養魚技術開發과 對漁民 養魚技術 指導를 위해 700백만원을 투입, 京畿道立 內水面開發試驗場을 施設토록 하였으며 淡水魚 流通과 輸出擴대를 위해 淡水魚 直賣場 施設 1개소(214백만원)와 淡水魚 加工施設 1개소 (50백만원)를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大單位水面的 基礎環境調査를 실시하여 漁場環境을 보전토록 하였으며 內水面 불법어업 근절에도 노력하였다.

(表 76)

內水面 養魚 支援 實績

단위: 개소, 백만원

	物 量	事 業 費			
		計	補 助	融 資	自 擔
計	63	4,164	21	2,200.8	1,942.2
小 計	18	706	21	471.8	213.2
施 設					
가 두 리	8	256		179.2	76.8
뱀 장 어	1	118		82.6	35.4
송 어	5	202		140	62
공동(共同)	2	30	21		9
費					
민 물 돔	2	100		70	30
小 計	45	3,458		1,729	1,729
運 營					
가 두 리	16	1,134		567	567
뱀 장 어	14	1,418		709	709
송 어	11	774		387	387
민 물 돔	4	132		66	66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 第 5 節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 1. 遠洋 資源動向

延繩 및 旋網漁業 對象인 다랭이類의 資源狀態를 보면, 황다랭이는 大西洋과 太平洋에서 현재의 어획량이 最大 持續的 生産量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資源狀態는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太平洋에서의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表 77〉 大洋別 다랭이 資源 評價

단위: 천%

		大 西 洋	印 度 洋	太 平 洋
황다랭이	漁 獲 量	134	109	471
	M·S·Y	122 (東部)	—	152~175 (東部)
	資 源 狀 態	安 定	旋網增大	增大 기대
가다랭이	漁 獲 量	123	160	637
	M·S·Y	—	—	—
	資 源 狀 態	減少징후없음	旋網增大	開發可能
눈다랭이	漁 獲 量	63	41	122
	M·S·Y	74~175	35~53	127
	資 源 狀 態	安 定	安 定	深層 逐年 增大
새 치류	漁 獲 量	낮은水準	左同	左同

자료: 大西洋다랭이보존위원회, 全美熱帶다랭이 위원회, 印度太平洋 다랭이 開發 및 管理機構

註: M·S·Y; 最大持續的 生産量

한편, 印度洋 황다랭이는 최근 大西洋에서 操業하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旋網船團이 印度洋으로 이동함에 따라 급격한 漁獲量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는 旋網對象 利用資源으로 바뀌어 졌다.

가다랭이는 3大洋에서 資源評價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資源診斷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발의 여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눈다랭이는 大西洋과 印度洋에서 안정된 자원수준을 이루고 있으며, 太平洋에서는 深層 延繩漁業의 漁獲量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치類와 小型 다랭이類의 資源은 평가되지 않고 있으나 小型 다랭이類는 沿岸國들의 이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롤漁業의 대상이 되는 底魚類의 資源狀態를 보면, 명태는 베링海 및 알류산海城에서는 양호한 상태에 있고, 알라스카灣에서는 감소상태에 있다. 베링海 및 알라스카灣 대구와 베링海 각시가지미는 다같이 양호한 상태에 있으나, 적어는 베링海와 알류산海城 다같이 낮은 수준에 있고 임연수어는 베링에서 낮은 수준에 있다.

<表 78> 北·東 太平洋의 主要魚種 資源狀態

단위: 천톤

魚 種	MSY	ABC	資源狀態	魚 種	MSY	ABC	資源狀態
명태				각시가지미			
베링해	2,300	1,500	양호	베링해	150	254	양호
알류산	245	160	"	적어			
알라스카만	116~334	93~123	감소	베링해	7	6	낮은수준
대구				알류산	19	6	"
베링해	284	385	양호	임연수어			
알라스카만	125	99~185	"	베링해	30	21	낮은수준

자료: 北太平洋 漁業資源評價 및 管理에 關한 韓美會議

註: A·B·C; 生物學的 許容漁獲量

오징어어업 동향을 보면, 北太平洋의 流刺網漁業은 隻當漁獲量이 446톤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채낚기어업의 隻當漁獲量은 포클랜드近海 漁場에서 1,714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큰 증가를 보였고, 뉴질랜드 漁場에서는 340톤, 호주近海 漁場에서는 106톤이 어획되었다.

〈表 79〉 오징어漁業의 漁場別 漁獲量 및 隻當漁獲量

漁 場	使用 漁具	出 漁 隻 數	漁 獲 量	隻 當 漁 獲 量
北 太 平 洋	오징어流刺網	141 隻	62,852 ㎏	446 ㎏
포클랜드近海	오징어채낚기	47	80,557	1,714
뉴질랜드	"	16	5,435	340
호주	"	3	319	106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 新海洋法 秩序의 動向

모든 國家의 주권을 정당히 고려하여 國際交通을 촉진하고 海洋의 平和의 使用, 海洋資源의 效率的 利用, 海洋生物의 保存 및 海洋環境의 研究·保護·保存을 증진할 海洋에 관한 法的 秩序確立을 目的으로 하는 海洋法協約은 1982. 12. 10 자마йка에서 採擇되어 2년간의 署名期間에 159개국이 署名하였으며 60번째 批准書 또는 加入書가 기탁되면 1년후 발효토록 되어 있으나 1988. 5 현재 韓지, 멕시코 등 35개국만이 批准書를 기탁하였고 우리나라는 1983. 3. 14 署名하였으나 批准書는 寄託치 않고 있다. 그리고 世界 140개 沿岸國中 97개국이 200海里 水域을 선포하였으며, 美國 등 주요 沿岸國들이 漁業自國化政策 推進, 漁業規制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遠洋漁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表 80) 200 海里 水域 宣 布

1988. 5. 현재

	沿岸國數	宣 布 國 數				未 宣 布 國 數
		計	領 海	漁業水域	經濟水域	
計	140	97	15	20	62	43
아 프 리 카	37	26	7	4	15	11
아 시 아	20	16	-	3	13	4
南 · 北 美	33	29	8	4	17	4
유 럽	24	13	-	7	6	11
中 東	15	2	-	-	2	13
오 새 아 니 아	11	11	-	2	9	0

자료: 수산청, 국제협력 담당실

### 3. 漁業協力事業

#### 가. 漁業協定 締結 및 更新

1987년도에는 新規 漁業協定締結은 없었으나 韓·美漁業協定('87. 10. 27 ~ '89. 7. 1), 韓·日漁業自律規制에 관한 政府間 合意(88. 1. 1 ~ '91. 12. 31), 濠洲·키리바시·쿡諸島와의 附屬約定을 更新하여 入漁期間을 연장하였다. 또한 漁業協定の 원활한 수행과 운용 및 遠洋漁場의 안정적 確保, 漁業協力 등을 위하여 美國, 台灣에 漁業交涉團을 파견하였으며, 日本·美國 등 5개국과 兩國間 會議을 開催하고, 大西洋참치保存委員會 등 國際會議에 15회 참석하였으며, 美國,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水産關係 有력인사를 招請하였다.

(表 81) 附屬約定更新

	日字 및 場所	主 要 內 容		
		入 漁 期 間	許 可 隻 數	入 漁 料
키 리 바 시	'87. 2. 12	'87. 2. 12~	95隻	500,000 \$
	타 라 와	'88. 2. 11		
濠 洲	'87. 12. 10	'87. 10. 1~	10 "	71,300AU \$
	켄 버 라	'88. 9. 30		
죽	'87. 5. 26	'87. 6. 1~	40 "	76,000 \$
	파고파고	'88. 5. 31		

자료: 수산청, 국제협력담당실

#### 나. 技術協力

정부의 對外 技術供與計劃에 따라 20개국으로부터 水産分野研修生 28 명을 招請, 漁撈技術, 船舶機關 등 訓練을 실시하였다. 地域別로는 아세아 2개국 5명, 中東 2개국 6명, 아프리카 7개국 8명, 中南美 4개국 4명, 大洋洲 5개국 5명이다.

#### 4. 新漁場 開發事業

國際漁業規制에 대처한 代替性 漁場確保 및 미래의 食糧資源 確保와 南氷洋·南極大陸分割 및 漁獲割當制에 대비한 既得權 確保側面에서 7차에 걸쳐 南氷洋魚場 Krill(새우일종) 試驗操業을 실시하였다. 1~4차에 실시한 印度洋側의 엔더비·윌크스漁場에 비하여 5~7차에 실시한 大西 洋側의 스코시아漁場이 大型 Krill의 群集形成으로 漁場性이 양호하였다.

(表 82) 南氷洋漁場調査実績

	1次	2次	3次	4次	5次	6次	7次
調査期間	'78.12.7 ~ '79.3.7	'81.11.28 ~ '82.3.9	'82.11.15 ~ '83.3.17	'83.11.19 ~ '84.3.16	'86.2.9 ~ '86.4.14	'86.11.29 ~ '87.3.13	'87.11.6 ~ '88.1.21
事業者	南北水産	大略遠洋	大略遠洋	大略遠洋	東邦遠洋	東邦遠洋	東邦遠洋
調査船 (G/T)	南北號 (5,550)	第707 大略號 (3,220)	第707 大略號 (3,220)	第707 大略號 (3,220)	第117 東邦 (2,261)	第115 東邦 (2,261)	第115 東邦 (2,261)
調査團(名)	99	79	76	76	66	62	62
事業 計 (백만원)	328	683	739	682	301	741	739
補助	149	547	591	397	151	321	255
費 自 擔	179	136	148	265	150	420	484
漁獲量(%)	511	1,429	1,959	2,657		1,527	2,022
調査海域	S60°以 南E55° ~95° (Ende- rby, Wilkes)	S60°以 南E55° ~95° (Ende- rby, Wilkes)	S60°以 南E60° ~135° (Ende- rby, Wilkes)	S60°以 南W30° ~70° (Ende- rby, Queen Maud)	S55°~ 59° W30°~ 50° (Scot- ia Sea)	S58°30' ~61° W43°~ 63° (Scot- ia Sea)	S58°~ 62° W45°~ 65° (Scot- ia Sea)

자료: 수산청, 원양개발담당실

註: 調査團에는 船員包含

### 5. 遠洋漁船 事故豫防

遠洋漁場에서는 漁船 事故件數와 船員 事故人員數가 점차 줄어들고 있  
으나 沈沒事故와 船員死亡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치밀  
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83〉

遠洋漁船事故現況

단위:척,명

		'83	'84	'85	'86	'87
漁 船	計	14	16	11	14	13
	規 制 水 域 違 反	5	9	4	6	3
	坐 礁	3	1	3	1	3
	火 災	4	2	1	1	2
	衝 突	1	1	1	-	-
	沈 沒	1	3	2	6	5
計		83	61	59	91	80
船 員	死 亡	37	33	44	70	69
	無 斷 離 脫	25	20	10	19	11
	暴 行	2	1	1	2	-
	紛 爭	17	1	-	-	-
	其 他	3	6	4	-	-

자료: 수산청, 원양개발담당실

1987년의 沈沒漁船 내용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沈沒 1척, 整備不良 1척, 航海不注意 3척이며, 사망자수도 침몰에 따른 死亡 24명, 失踪 26명, 安全事故 7명, 질병 및 자살 5명, 피살 2명, 항내 익사 5명으로 원양어선 및 선원사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선장 및 선원들이 큰 주의만 기울린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원양어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국립수산기술훈련소에서 출어전에 船員素養教育을 실시하고,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서 海技士 安全教育을,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船長教育을 실시하며, 또한 원양어선이 출어후 基地에 입항하면 현지에서 파견된 水産官과 基地長이 沿岸國 規制動向 등 安全操業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 第 5 章 水産技術 開發과 普及

### 第 1 節 水産技術의 開發

#### 1. 養殖技術의 開發

沿岸漁場의 합리적·종합적인 利用·開發方案 樹立에 활용하기 위하여 淺海 및 干潟地의 漁場環境, 棲息生物狀態, 漁場利用狀態, 漁業實態, 生産狀況 및 關聯與件에 대한 養殖漁場 實態調査와 人工魚礁漁場 適地調査, 水質汚染調査, 沿岸漁業 實態調査, 基盤施設 實態調査 등 5개 분야별로 구성된 沿岸漁場 基本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88년까지 전국 및 시·도별로 報告書를 발간, 배부할 것이다.

沿岸資源의 증강과 漁民所得 增大를 위하여 전복, 우렁챙이, 감성돔, 브리새우, 대하, 김돔, 돌돔 등의 人工種苗 1,523만마리를 생산하여 放流 및 分讓하였고, 도화새우, 문어, 꽃게, 우럭, 능성어 등 20종에 대한 人工種苗 生産試驗을 실시하였다.

南·西海岸 主要 魚類養殖場에 대한 環境調査를 실시하여 魚類養殖場의 環境 및 魚病實態를 파악하였으며, 養殖 主種인 방어의 稚魚 먹이 馴致試驗을 실시하여 適正먹이와 먹이 馴致方法을 究明하였다. 그리고 西

해안의 地域特性에 적합한 養殖品種을 개발하기 위하여 숭이養殖試驗을 실시하여 숭이養殖의 適地條件, 種苗, 飼料, 養殖技術 및 魚病對策 등을 究明하였으며, 陸上養殖技術開發을 위한 기초시험을 실시하였다.

海産魚 配合飼料開發을 위하여 방어용 모이스트펜릿 開發試驗을 실시한 결과 모이스트펜릿은 成長, 飼料効率が 우수하여 實用飼料로 利用 可能하며, 北洋魚粉의 일부를 정어리 어분으로 대체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究明하였다. 그리고 魚病研究로 *Vibrio anguillarum* 이 生産하는 細菌外毒素의 病原性和 항원성 구명 및 양식 魚류의 아가미흡충에 대한 월별 기생율 및 적정 약제에 대한 구제대책의 구명과 함께 월동기, 고수온기의 어병실태를 파악하였다.

한편, 魚類의 遺傳育種學의 研究로서 海産魚類의 양적 증대와 速成栽培를 목적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에 대한 基礎細胞 遺傳 및 生化學的 研究를 실시한 결과, 각종의 染色體數 및 核型, 細胞 및 核 크기, 血清蛋白質의 電氣泳動像을 밝혀내 遺傳育種의 基礎資料를 확보하였다.

有用 貝類養殖 기술개발과 백합養殖의 회복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養殖場의 環境條件과 기생충 감염상황을 계속 조사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優良 養殖品種의 개발 보급과 확보를 위하여 소라, 노랑가리비, 김, 미역, 우렁쉥이, 복족말뚝성게, 갯지렁이 등의 서식장 환경과 生態 調査 및 養殖試驗을 실시하였다. 多獲性 品種인 김과 미역에 대하여는 病害 발생 상황과 대처 방안을 調査 研究하였고, 특히 미역의 바늘구멍病 原因生物의 分類學的 位置 및 生態特性을 파악함으로써 驅除對策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沿岸 增養殖의 안정적 增産에 필요한 耐病性, 多收獲性의 優良形質을 지닌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년에 이어 참굴의 地域間 特性調査, 交雜育種試驗 및 養成試驗을 계속하였다. 東·西·南海岸産 참굴의 遺傳學

의 系統群 檢定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電氣泳動像과 酵素別 感知度를 조사한 결과, 서·남해안산에 비해 동해안산의 電氣泳動像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주조개의 耐寒個體 選拔을 위하여 耐寒水溫條件인 8~14°C에서의 크기별 生殘率을 조사한 결과, 10°C 이상에서 耐寒個體 선발이 가능하였다. 진북의 優良種을 개발하기 위하여 까막진북의 地域間 交配 可能性과, 참진북과 까막진북의 交雜 가능성을 시험한 결과, 受精은 저조하나 孵化는 정상으로 進行되었다. 김의 遺傳育種學의 品種改良을 위하여 色彩變異形의 遺傳學的 조사를 계속하였고, 細胞融合을 위한 集體 部位別 細胞組織片 作出試驗을 실시하였다. 다시마의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自生 다시마의 棲息 南方限界를 구명하였고, 자생 다시마와 養殖產과의 形態의 特性을 파악하였다.

江原道 沿岸의 未利用 貝類資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역 12,337ha에 대한 패류 서식장의 환경과 分布種 및 分布量 조사를 실시하였다.

內水面 養殖場의 基礎環境調查로서 忠州湖의 환경변화 및 서식생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水面利用의 開發資料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養殖技術開發試驗으로 魚類育種 基礎試驗을 실시하여 잉어, 틸라피아의 3倍體魚 생산으로 遺傳育種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 외에 틸라피아 優良種 改良試驗, 메기 및 쏘가리 養殖試驗, 잉어류 및 찬넬메기 優良種苗 生産普及試驗, 淡水魚 魚病研究 등을 실시하였다. 冷水性 魚類로서 연어치어 496만마리를 生産 방류하였고, 산천어, 열목어, 무지개송어 등의 養殖技術開發試驗을 실시하여 內水面 養殖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新漁場·漁法 開發

### 가. 北太平洋 魷魚漁場 資源調查

遠洋漁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韓美合同으로 北太平洋에서 魷魚의 資源調查('87. 7. 7~9.4)를 실시하여 오징어 流刺網 漁船의 操業 能率 향상을 위한 漁業情報 資料와 오징어 漁場의 國際的 漁業紛爭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基礎資料를 수집하였다.

### 나. 로프트롤 漁具漁法 開發

既存 底層트롤 漁具의 構造를 개량하여 漁獲性能을 높일 수 있는 로프트롤 漁具漁法을 開發코자 1985~1986년도에 실시한 模型試驗 및 海上基礎試驗結果를 토대로 民間船에 의한 實用化試驗을 실시한 결과, 동일규모의 어선으로 既存 漁具에 비해 網口斷面積 增大와 流水抵抗 減少로 漁獲性能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 다. 音響漁法 研究

水中音響을 이용한 새로운 漁法을 개발코자 多獲性 魚種의 音響反應試驗을 실시하여 集魚 및 驅魚音에 대한 基礎資料를 확보하였으며, 멸치流刺網에 水中音響을 放聲時 漁獲性能 變化 試驗을 실시한 결과 音響을 放聲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性能이 우수함을 究明하였다.

또한, 바다의 牧場化에 대비, 音響부이를 이용한 魚類 學習試驗 結果 可能性이 究明되었다.

#### 라. 定置網 揚網 省力化 研究

定置網漁業의 人力難을 解消하고, 漁業經費를 節감코자 원동의 罟그물과 까래그물에 Hose를 附着하고, 揚網時에는 高壓공기를, 沈下時에는 海水를 주입토록 한 揚網裝置를 고안하여 1986년 模型試驗과 基礎試驗을 거쳐 1987년 實用化試驗 結果, 揚網時間 短縮과 人力 節減이 가능하였고, 作業이 간편한 이점이 있었다.

#### 마. 帆布를 이용한 트롤用 展開裝置 開發 試驗

既存 트롤用 展開板은 대부분 鐵製로서 製作費 過大所要, 取扱不便, 安全事故의 原因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帆布로 된 新 展開裝置를 考案, 模型試驗 및 海上基礎試驗을 실시한 결과, 展開性能은 既存 展開板과 대등하면서도 重量과 製作費를 각각 약 85% 減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究明되었다.

### 3. 處理加工 技術開發

水産物의 食糧化를 위한 多獲性 및 低利用 資源에 대한 加工技術開發이 요청되고 있어 1985년에 개발한 새로운 魚體脫皮技術을 응용하여 既存方法에 의한 것보다 收率을 2倍 정도 높일 수 있는 정어리 改良煉肉의 加工方法을 개발하는 한편, 短時에 정어리 어간장을 製造할 수 있는 速成醱酵製品의 加工條件도 究明하였다. 그리고 南極새우(코릴)의 頭胸部 內臟物을 遠心分離 除去하고 一般採肉機로서 살(肉)을 採取하는

技術을 개발하여 食品素材로 이용할 수 있는 技術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海藻工業에 있어 가라기난 (carrageenan)抽出方法의 改良과 寒天製造用 漂白劑 開發試驗을 1986년에 이어 계속 실시하였다.

水産物의 營養價値와 利用에 따른 科學的 基礎資料 提供을 위하여 135 種의 魚貝類 및 加工品에 대한 成分分析과 主要魚種(10種)에 대한 有效 脂肪酸(EPA, DHA) 含量調査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韓·美 貝類衛生協定 運營과 관련한 輸出用 貝類生産 指定海域 및 指定 豫定海域에 대한 細菌調査를 실시하여 全南의 駕莫灣과 慶南의 彌勒島의 2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輸出用 貝類生産指定海域은 11,613ha에서 20,614ha로 확대되었으며, 위 衛生協定 履行과 더불어 水産物의 公衆保健上的 安全性 問題와 관련하여 비브리오 敗血菌, 貝毒, 殺虫劑 및 貝類의 重金屬 含量調査를 실시하였고, 또한, 市中에 流通되는 생알굴의 細菌污染 實態調査 試驗을 실시하였다.

#### 4. 産學協同

“海産魚類의 品種改良을 위한 遺傳育種學的 基礎研究” 등 3개 研究課題를 兼職研究官과 水産振興院의 研究陣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분야에 3명의 兼職研究官을 任用하였다.

또한,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 專門委員委囑(7개분야 27명)과 各道 審議會 委員(8개도 38명)을 委囑하여 産學協同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水産系 專門大學 在學生들에게 5개소의 産業體를 지정하여 8개교 20명의 학생을 현장실습도록 하였다.

(表 84) 補助研究課題 遂行實績

단위: 천원

	'79~'83	'84	'85	'86	'87
課題數	15	2	2	3	3
所要豫算	55,171	13,984	14,000	20,300	20,000

'87 課題名	所要豫算	研究責任者
○海産魚類의 品種改良을 위한 遺傳育種學的 基礎研究	8,000	釜山水大 김 동 수
○西海沿岸漁場의 生産力 調査	6,000	仁荷大 최 중 기
○地域의 特殊性과 水産經營의 活性化(水協委託)	6,000	釜山水大 장 수 호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表 85) 水産系學生實習實績

단위: 개소, 명

	'83	'84	'85	'86	'87
實習業體數	37	27	28	5	5
實習生數	205	94	148	30	20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表 86) 兼職研究官任命

단위: 명

	'80	'82	'84	'86	'87
人 員	7	14	14	15	16

'87 兼 職 研 究 官				勤 務 活 用 部 署
活 用 分 野	所	屬	姓 名	
海 洋 環 境	釜 山 水 大		姜 容 均	海洋資源部 海洋科
	"		朴 清 吉	" 環境科
水 産 増 殖	仁 荷 大		崔 仲 基	仁川水産研究所
	釜 山 水 大		金 東 洙	増殖部 魚類養殖科
	"		許 聖 範	" 貝藻類科
	"		張 東 錫	" 病理科
	江 陵 大		金 一 會	注文津水産研究所
	群 山 水 專		李 廷 烈	群山水産研究所
	麗 水 水 大		高 楠 表	麗水水産研究所
水 産 資 源	濟 州 大		鄭 相 喆	濟州水産研究所
	釜 山 水 大		李 澤 烈	鎮海內水面研究所
	"		洪 性 濶	海洋資源部遠洋資源科
	漁 具 漁 法		高 冠 瑞	漁具漁法研究室
	浦 項 實 專		權 赫 師	浦項水産研究所
食 品 加 工	釜 山 水 大		李 應 昊	利用加工研究室
漁 村 指 導	"		孔 龍 植	指 導 課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5. 先進技術 導入과 研究 活性化

### 가. 水産研究團地 造成

水産研究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慶南 梁山郡 機張에 水産研究團地를 건설중에 있다. 1987년에는 1986년 移越 施工中인 水産振興院 本館 및 研究棟 11천㎡의 一部工事を 竣工하고, 1987년도 施行計劃인 水産振興院 本館 및 研究棟 完成, 厚生棟 및 機械室, 漁具漁法棟 3천㎡의 建築工事は 8월에 實施 設計를 끝내고 10월에 착공하였다.

#### 나. 研究員 資質 向上과 先進技術 導入

日本, 프랑스, 美國 등에서 培養殖分野 12명, 海洋環境 4명, 漁業資源 3명, 水産加工 3명, 海洋法 1명 등 23명에 대하여 長·短期 海外研修를 실시하였고, 國內大學에서도 博士課程 7명, 碩士課程 17명, 其他 1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프랑스, 볼리비아에 2명의 專門家를 파견하였으며,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專門家 8명을 초청하여 共同研究를 통한 技術協力 增進과 先進技術 導入에 기여하였다.

#### 다. 試驗機器 및 裝備 補強

日本 海外經濟協力基金 (OECF)借款에 의한 試驗研究機器 補強計劃 (總 672점)에 따라 276점 ('86 : 239점, 누계 515점)을 도입하였고, 國內 調達이 가능한 198종 309점의 試驗機器를 政府一般會計豫算으로 구입 보강하였다.

### 6. 올림픽號 引受

올림픽組織委員會에서 올림픽 요트경기 운영을 위하여 1987년에 新造한 2~26톤급 競技運營艇 9隻을 引受하여 試驗研究 및 漁村指導船으로 活用하고 있다.

(表 87) 올림픽號引受船舶購元

船名	船質	噸數	機關馬力	進水年月	速力	主要裝備
올림픽1호	FRP	26	550HP×2 기	87. 5	18 knot	RADAR, SSB, MTS, 음향측심기, 풍향풍속계
" 2 호	"	26	550×2	"	"	"
" 6 호	"	16	380×2	87. 4	"	RADAR, VHF, MTS 풍향풍속계
" 13호	"	5.18	152×2	"	19	RADAR, VHF, 풍향풍속계
" 14호	"	5.18	152×2	"	"	"
" 15호	"	5.18	152×2	"	"	"
" 16호	"	5.18	152×2	"	"	"
" 28호	"	5.18	152×2	"	"	"
" 35호	"	1.83	152×1	87.5	25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第 2 節 漁村指導 및 技術 普及

### 1. 技術指導 및 弘報

전국 78개 沿岸市郡 1,528個所 漁村契를 대상으로 養殖 및 漁船漁業을 비롯하여, 第1種共同漁場管理 등에 대하여 現地를 순회하면서 生産技術指導를 실시하였다. 김, 미역, 굴, 피조개 등 多獲性品種의 適正種苗生産 및 漁場管理指導로 安定生産을 도모하고, 高所得品種인 魚類養殖에 대하여 稚魚確保, 飼料需給 및 魚病對策 등을 위하여 主要 養殖團地別 專擔

指導士를 適期配置, 技術指導를 실시하였다. 또한 地域別 特性에 적합한 새 品種 普及 및 技術指導를 위하여 전북수하양식, 魚類養殖 등 32개소의 示範漁場을 운영하고, 共同漁場의 資源造成, 漁場環境 改善과 資源保護 管理指導를 실시하였으며 適正 漁場管理指導를 위하여 主要養殖圃地에 대한 乘船巡回漁場豫察을 실시하였다. 赤潮 및 病虫害豫防과 颱風 및 해일 등 災害에 의한 被害 극소화를 위해 特別豫察班과 災害豫防독려단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水産情報 및 새 技術의 普及을 위한 海·漁況豫報 및 增養殖豫報와 속보, 水産技術誌를 發刊 配付하고 매스컴을 活用, 適期 技術제공과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제작하여 弘報活動을 실시하였다.

(表 88) 乘 船 巡 廻 豫 察 實 績

지역별	예	찰	지	집	주	요	양	식	품	종	실	적												
계	23개소				6종						143회													
전 남	가	마	해	상	여	자	두	랑	완	도	김,	미	역,	굴,	피	조	개,	어	류	양	식	79		
경 북	영	일										우	렁	행	이,	어	류	양	식	36				
경 남	진	해	거	제	한	산	고	성	자	란	김,	굴,	피	조	개,	우	렁	행	이,	어	류	양	식	28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2. 漁民教育 및 漁民後繼者 指導

營漁技術水準을 향상시켜 자율적 營漁活動을 早期 정착하는데 目標을 두고 20개 漁村指導所에서 72개 水協과 합동으로 漁民 104천여명에게

水產施策과 漁業技術에 대한 集體教育을 실시하였으며, 굴, 피조개, 김, 우렁챙이 養殖 등 主要品種에 대하여는 地域別 漁業循期에 맞추어 採苗 및 種苗培養 등에 관하여 現地를 순회하면서 25천여명에 대한 技術教育을 병행 추진하였다. 한편, 漁村에 정착하여 漁業에 종사할 漁村靑少年을 基幹漁家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981~1987년까지 선발된 3,747명의 漁民後繼者에게 專擔指導士를 지정 배치하여 매월 1~2회이상 現地 事業場을 巡迴訪問하여 水產施策, 營漁設計, 漁場管理指導 및 新技術普及 등 科學營漁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表 89) 漁民後繼者 地域社會 活動

計	地域社會 活動內容							其他
	小計	새마을 指導者	里長 班長	開發 委員	靑年會 指導者	漁村 契長	其他	
3,747	859	91	149	189	117	135	178	2,888
(100)	(23)	(2)	(4)	(5)	(3)	(4)	(5)	(77)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3. 漁村指導機能 強化

#### 가. 指導基盤造成

漁村指導活動의 機動力 향상과 과학적인 技術指導를 위해 1987년 漁村指導所에 車輛 2대를 처음 配置한 것을 비롯하여 豫算事業으로 VTR, 複寫機 등 5종 28대를 확보하였으며, 1986년도 OECF借款事業에 의한 指導裝備 4종 130대를 도입한 이래 1987년 2차로 3종 60대를 도입함으로

세 당초 計劃 4중 200대중 4중 190대를 도입하였다.

〈表 90〉 漁村 指導 裝備 補強

〈豫算事業〉

단위: 대

차	량	이	분	차	환	동	기	VTR	복	사	기
2		11		3		7		5			

〈OECF 借款事業〉

目	標	현	이	경	조	도	계	임	도	계	수	질	측	정	기
實	1986	20		30		40		60		40		60		40	
續	1987	-		20		20		20		20		20		20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나. 漁村指導公務員 指導能力 向上

國立水産振興院 및 그傘下의 內水面研究所의 種苗培養場에서 漁村指導公務員 50명을 대상으로 김, 전복 등 主要 指導品種에 대해 1주 내지 3개월간의 長·短期 專門教育을 실시하였으며, 國立水産技術訓練所 專門教育 課程에 “漁村指導班” 課程을 신설하여 68명에게 1주간의 專門教育을 이수토록 하였다.

〈表 91〉

漁村指導公務員 專門技術教育實績

단위: 명

計	319	長期專門教育 (2월~1년)		短期專門教育 (1~2주)				
		연주소(科)	배양장	김	전복	우렁쟁이	어류	어선어업
82-86	269	47	62	42	68	42	28	30
1987	50	44	55	37	51	35	17	30
		3	7	5	17	7	11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다. 自願指導者 確保

漁村契長, 漁民後繼者 또는 篤漁家로서 指導力이 있는 地域社會의 有力人士를 대상으로 漁村指導所 單位로 1~2명씩 36명의 自願指導者를 위촉하여 漁村指導方向 諮問, 새 技術의 示範實踐 등 漁村指導事業에 대한 地域漁民의 參與 氛圍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漁民技術指導 普及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 第 3 節 漁業技術 訓練

#### 1. 水產技術 訓練

##### 가. 精神·基本教育課程

時代的 轉換期에 부응하고 '88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수산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管理者班(수산청 소속 5급 公務員 68 명과 傘下團體 幹部職員 30명 합동), 實務者班, 新規採用者班으로 편성, 319명을 대상으로 精神教育을 실시하였고, 水產關係 公務員의 基本資質 涵養과 環境管理能力 培養을 目標로 水產中堅實務者班 120명, 水產初級 實務者班 60명, 行政統合實務者班 26명, 水產新規實務者班 40명 등 246 명에게 基本教育도 실시하였다.

#### 나. 專門教育課程

水產行政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해 漁村指導, 水產物 加工, 不法漁業 團東業務 擔當公務員에게 先進水產技術, 對漁民 指導에 필요한 實用技術 教育 등을 4회 198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水產政策의 開發 및 發展方向을 모색하기 위하여 “水產物 加工業의 효율적인 育成方案”을 主題로 政策세미나班 (28명)을 운영함으로 政策의 종합적인 管理能力 培養에 주력하였다.

#### 다. 漁民後繼者 및 現役兵 教育課程

漁村에 정착하여 地域社會의 開發과 福祉漁村 建設을 주도할 後繼者 養成을 위하여 漁船漁業, 海藻類養殖, 貝類養殖, 魚類養殖 등 분야별로 10회 812명('86未履修者 6명 포함)의 漁民後繼者에게 教育을 실시하고 轉役 後 漁村定着을 희망하는 現役兵을 대상으로 漁業全般에 대한 技術教育을 3회 255명에게 실시하여 漁村定着意慾 鼓吹와 漁村開發基盤을 구축하였다.

#### 라. 漁船員 素養教育課程

遠洋 및 沿近海 漁船員의 資質向上과 투철한 保安意識 및 國家觀의 확립을 위하여 海技士 3,022명, 一般船員 10,549명 總 13,571명에게 素養 教育을 실시하였다.

〈表 92〉

教育訓練實績

단위: 명

	'83	'84	'85	'86	'87
計	10,792	9,348	9,447	10,701	15,401
精 神 教 育	489	343	331	411	319
基 本 教 育	243	207	209	211	246
專 門 教 育	176	238	186	179	198
漁 民 後 繼 者 教 育	200	510	958	983	812
現 役 兵 水 産 技 術 教 育	—	—	—	92	255
漁 船 員 素 養 教 育	9,684	8,050	7,763	8,825	13,571

자료: 국립수산물기술훈련소

2. 海技員 養成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1987년까지 5,730명의 漁船海技士(海技士課程 3,344, 普通船員課程 2,254, 通信課程 132)를 양성하였고, 1986. 7월에 신설된 漁船 海技士 安全教育課程을 이수한 船員은 4,533명이었으며, 外國人 訓練生은 총 70개국 301명을 배출하였다.

〈表 93〉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實績

단위: 명

	計	'66~'83	'84	'85	'86	'87
計	10,564	4,806	325	365	1,219	3,849
內 國 人	5,730	4,654	299	312	210	255
外 國 人	301	152	26	53	42	28
(國 家 數)	(70)	(60)	(22)	(33)	(26)	(20)
海 技 士 安 全 教 育	4,533	—	—	—	967	3,566

자료: 수산청, 국제협력담당실

註: 國家數中 중복된 나라는 제외하였음

## 第 6 章 水產物 需給安定과 食糧化

### 第 1 節 水產物 價格安定

腐敗變質性이 강하고 規格化가 어려운 데다 불확실한 생산으로 需給調節의 어려움 등이 있는 水產物의 流通上 특수성으로 價格安定을 기하기 어려워 政府備蓄과 民間價格安定事業을 시행하고 있다.

1987년도에는 政府備蓄事業으로 農安基金 137억원을 투입, 간미역 1,192톤, 마른오징어 1,013톤(135만축), 마른멸치 22톤(7,459포) 및 냉동오징어 1,526톤 합계 3,753톤을 收買하여 盛需期에 放出하였다.

또한 價格支持事業으로는 農安基金 886억원을 투입, 水協出荷調節事業 29,109톤, 冷凍保管販賣事業 110,392톤, 加工販賣事業 31,475톤, 輸出促進事業 27,202톤, 합계 198,178톤을 收買하여 價格支持에 기여하는 한편, 委販場 出荷를 促進하고 先給金 지원으로 새우젓, 멸치젓, 굴, 건멸치 등의 包裝規格化 出荷를 유도하였다.

## 第 2 節 水産物 流通改善

### 1. 流通施設의 擴充

産地에서의 水産物 流通을 원활히 하기 위한 委販場施設은 1986년말 177개소(122,100㎡)가 전국 主要漁村에 分散施設되어 있으나, 落島, 僻地 등 一部地域에는 施設이 부족하고 또한 老朽化된 施設이 있어, 1987년에 727백만원을 투입하여 8개소(4,115㎡)를 증설하였다.

### 2. 流通構造 改善

産地水協의 共同販賣를 확대('86 : 1,954천톤, 8,879억원 → '87 : 1,770천톤, 9,760억원)하고 水協 內陸地 系統出荷는 지난해 보다 3천톤이 증가한 120천톤의 실적을 거두었다. 系統出荷 擴大를 위하여 20억원의 出荷低利資金을 支援하고 1억원의 缺損補償基金을 造成 運用하여 缺損組合에 대해 13백만원을 補填하였다. 直去來事業은 교도소, 병원, 공단 등 大量需要處를 開發, 전년보다 12천톤이 늘어난 48천톤을 供給하였다.

또한 産地委販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休憩室 등 漁民便宜施設의 확충과 콘베아벨트, 鮮魚移送機 등의 委販裝備 보강 및 活魚需要 증가에 따른 活魚槽 施設을 3개소 증설하였다.

정어리의 委販制度를 개선하고자 水産資源保護에 의한 漁獲物의 揚陸港口 指定 등에 관한 告示를 改正('87. 2. 1 施行)하여 示範的으로 5개항(馬山, 忠武, 三千浦, 九龍浦, 麗水)을 指定, 大型旋網漁業에서 어획되는 정어리에 한하여 통조림 原料魚로 直去來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6년부터 실시해 오는 養殖水産物의 產地去來制度改善은 養殖物 爲主 10개組合의 김, 미역, 굴 委販手數料을 0.5%포인트 인하하여 260백만원의 漁民負擔을 輕減토록 하였으며, 김 共同收集販賣事業과 手數料 一部の 漁村契 還元事業을 실시하였다.

漁獲物의 品質向上과 去來單位 規格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7. 4. 1 水協 販賣 및 利用加工事業規程을 개정하여 過量入箱 漁獲物에 대하여는 불리한 順位の 競賣를 할 수 있도록 하고, 漁獲物 取扱管理 指導啓蒙과 委·共販場 環境淨化를 추진하였으며 農安基金 1,770百萬원을 지원하여 새우젓, 멸치젓, 갈, 선멸치 등 4개품목의 規格出荷를 유도하였다.

### 第 3 節 水産物 加工과 食生活 改善

#### 1. 加工品 生産

1987년도 水産製品 生産은 794천톤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하였으며 製品 形態別로는 高次加工品이 14.7%, 單純加工品이 3.1% 증가하였다.

이 중 加工品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冷凍品은 464천톤으로서 갈치·명태·고등어·가자미 등의 原形凍結이 340천톤으로 73%, 명태·붕장어·

갑오징어 등의 處理凍結이 124천톤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煉製品은 1983년부터 船上煉肉 生産으로 전반적으로 品質이 高級化되고 맛살류, 즉석어묵 등 製品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生産量도 전년보다 10.6%가 증가된 81천톤을 생산하였으며, 船上煉肉을 생산하는 遠洋業體가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優秀製品을 大量 生産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 나라의 食生活 改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조림은 굴, 참치, 고등어, 정어리, 꽂치, 바지락, 홍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대비 43.8% 증가한 38천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정어리 食用化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어리통조림 生産량이 전년도 5,296톤에서 8,278톤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최근 調味加工品の 伸張은 輸出用 調味오징어와 調味퀴치모, 맛김 등의 量産에 기인되었으나, 1987년에는 퀴치어와 김의 減産으로 原料가 부족하여 製品生産이 감소되었다.

乾製品, 塩辛藏品 등 單純加工品은 加工原料의 生産狀況에 따라 크게 左右되어 왔으나 최근 消費性向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감소되고 있다.

〈表 94〉 水産加工品 生産推移

단위: %

	'77	'82	'86	'87	'87/'86(%)
計	196,025	489,024	737,654	794,072	107.6
高次加工品	50,046	151,206	286,868	329,102	114.7
냉동품(처리)	21,121	54,750	88,875	124,442	140.0
연체품	1,656	45,321	73,231	81,011	110.6
통조림	20,663	19,525	26,298	37,817	143.8

	'77	'82	'86	'87	'87/'86(%)
어 유 분	3,197	22,328	66,700	62,679	94.0
조 미 가 공 품	3,078	8,695	31,099	22,591	72.6
한 천	331	587	665	562	84.5
單 純 加 工 品	145,979	337,818	450,786	464,970	103.1
냉 동 품(원형)	63,365	198,305	302,873	339,898	112.2
해 조 제 품	28,109	67,870	66,666	53,114	79.7
자 건 품	5,622	32,434	25,387	23,942	94.3
소 건 품	13,358	25,748	27,380	16,554	60.5
염 건 품	502	116	35	106	302.9
염 장 품	21,813	1,316	653	762	116.7
염 신 품	7,532	9,840	20,469	20,887	102.0
기 타	5,678	2,189	7,323	9,707	132.6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원양제품 제외

## 2. 食生活 改善

食生活 改善事業은 國民의 올바른 食習慣 形成 및 適正營養 攝取 指導로 國民健康 增進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賦存 食糧資源 活用 增大로 食糧自給度 提高 및 生産農漁民 所得 增大에 그 목적이 있다.

1986년 1인당 연간 水產物 消費量(純食品)은 41.9kg이며, 水產食品에 대한 國民의 嗜好度가 종래의 반찬概念에서 健康食 위주로 主食化됨에 따라 동조림, 煉製品, 調味加工品, 處理凍結 등의 高次加工品 消費가 증가되고 있어 國民 食生活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87년도에도 水産物 消費를 높이기 위하여 정어리, 고등어 등 등푸른 생鮮과 굴, 피조개, 미역, 김 등 多獲性 水産物 및 主食代用 食品으로 개발한 魚肉煉製品에 대한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 言論媒體를 통한 弘報를 551회 실시하였으며, 水産物 食糧化 弘報用 料理集(6,000권), 리후렛(113,000枚)과 굴 및 등푸른 생鮮에 대한 廣告板(와이드 칼라)을 5개소에 설치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沿岸에서 大量 漁獲되어 대부분 飼料등 非食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어리의 食用化 擴大 施策을 계속 추진하고 水産食品 料理講習 및 試食會를 서울을 비롯한 地方 大都市까지 확산 개최하여 汎國民의인 食生活 改善運動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國民 嗜好에 맞는 다양한 加工製品 開發을 위해 高級어묵, 調味맛김, 참치통조림 등 便利 小包裝 食品을 增産 보급하였으며, 加工業體 육성을 위하여 159억원의 運營資金을 지원하였다.

<表 95>

水産物 消費動向(純食用)

단위 : kg/1인, 년간

	'82	'83	'84	'85	'86
韓 國	32	38	38	37	42
· 魚貝類	26	32	31	31	33
· 海藻類	6	6	7	6	9
日 本	34	36	36	36	3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註 : 日本은 魚貝類만임

## 第 4 節 水産物 検査

### 1. 検査 趨勢

1987년 水産物 検査實績은 3低 現狀과 生産增大, 外貨獲得用 原資材의 輸入增加 등으로 前년도에 比하여 17.5%가 증가하였으며, 検査品種은 새로운 水産製品의 開發로 多樣化되어 가고 있다.

(表 96) 水産物 検査 推移

단위: 천%

	'77	'82	'86	'87	'87/'86(%)
檢 査 量 (指 數)	249 (100)	209 (83.9)	275 (110.4)	323 (129.7)	117.5
品 種 數 (指 數)	388 (100)	398 (102.6)	547 (141.0)	606 (156.2)	110.8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表 97) 加工品 種別 検査 推移

단위: 천%

	'77	'82	'86	'87	'87/'86(%)
計	249	209	275	323	117.5
高次加工品 (구성비: %)	197 (79)	167 (80)	223 (81)	267 (83)	119.7
低次加工品 (구성비: %)	52 (21)	42 (20)	52 (19)	56 (17)	107.7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 2. 檢査의 效率性 提高

檢査員의 資質을 향상시켜 檢査의 正確性 및 科學化를 도모코자 理化學分野 6명, 細菌分野 5명, 重金屬分野 2명에게 自體技術敎育을 실시하였고 專門敎育은 國立水産技術訓練所의 水産物 利用加工課程敎育(20명)을 통하여 새로운 加工技術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또한 實技能力을 培養코자 우수한 加工工場에 檢査員 17명을 分野別로(冷凍品, 통조림품, 魚肉煉製品, 寒天) 1개월간 工場實技訓練을 실시하였다.

檢査判定의 標準化로 檢査의 正確, 公正을 도모하고 檢査判定의 同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檢査員과 加工業者(258명)가 참여한 가운데 冷凍品 등 8개 製品에 대하여 標準品 査定會를 4회 개최하였으며, 水産製品의 品質을 향상시키고자 冷凍品, 調味加工品, 통조림품 등 10개 主要製品에 대하여 鮮度維持, 加工方法, 選別, 衛生管理 및 包裝改善 등 技術指導를 연 1,237회 실시하였고 새로운 海外技術情報를 入手, “水産物 市場動向誌”를 통하여 關聯業界에 제공하였다.

한편, 優秀加工業體의 檢査減免 확대로 業界의 便宜를 도모코자 優秀加工業體 實態調査를 실시하여 檢査減免基準에 적합토록 지도함으로써 31개 業體가 새로이 檢査를 減免받도록 하였다.

## 第 7 章 漁業基盤施設 擴充

### 第 1 節 漁 撈 施 設

#### 1. 漁船建造

1987년도에는 老朽漁船代替에 41,285백만원(10,187톤)을 投入함과 同時에 經濟性漁船(FRP)普及을 위하여 6,231백만원(1,795톤)을 投入, 老朽船 代替와 船質改良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壽命이 半永久의이고 維持補修 등 管理費가 절감되며 경제성이 우수한 合成樹脂(FRP)船으로 船質을 改良 建造토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漁船構造 改善 및 現代化를 추진하였다.

#### 2. 動力 및 裝備改良

操業能率 향상과 海難事故의 未然防止 및 에너지節約을 위하여 低效率機關인 燒球機關, 陸上用發動機, 老朽機關 등을 效率이 좋은 船舶用 디젤機關으로 대체키 위하여 動力改良事業으로 1,558백만원(10,629馬力)을,

低効率機關代替事業으로 1,781백만원(14,498馬力)을 지원하였다. 機關供給은 漁民이 희망하는 機關을 구입할 수 있도록 水協으로 하여금 製作會社 機種別로 單價契約을 체결하여 共同購買계 함으로써 저렴한 價格으로 구입토록 하고 事後奉仕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등 需要漁民의 便宜를 도모하였다. 또한 漁船의 裝備 現代化를 위하여 航海 및 漁撈裝備을 설치토록 30W無電機 등 4種을 지원함으로써 安全操業과 操業能率 향상에 기여하였다.

〈表 98〉 漁撈施設 事業 實績

단위 : 백만원

	數 量	物 量	事 業 費			
			計	補 助	融 資	自 擔
計			51,248	1,880	36,730	12,638
漁 船 建 造	183隻	3,391톤	8,440	1,579	4,735	2,126
· F R P 船	78隻	1,185톤	3,765	704	2,111	950
· 木 鋼 船	105隻	2,206톤	4,675	875	2,624	1,176
計 劃 造 船	25隻	7,981톤	36,610	-	27,512	9,098
經濟性漁船普及(FRP)	258隻	610톤	2,466	-	1,897	569
動 力 改 良	241臺	10,629HP	1,558	301	903	354
低効率機關代替	99臺	14,498HP	1,781	-	1,408	373
裝 備 改 良	213臺	-	393	-	275	118
· 無電機(30W)	77臺	-	99	-	69	30
· 레 이 다	45臺	-	128	-	90	38
· 魚 探 機	34臺	-	80	-	56	24
· 로 란	57臺	-	86	-	60	26

자료 : 수산청, 어선과

## 第 2 節 漁 港 開 發

우리나라 全國沿岸에는 漁港法으로 지정한 386개의 指定漁港과 漁港으로 指定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漁村에 위치하여 當該 地先漁民들이 이용하고 있는 1,555개의 小規模港浦口가 분포되어 있으며, 指定漁港中 1·3種漁港은 水産廳長이, 2種漁港 및 小規模港浦口는 市·道知事가 管理하고 있다. 우리나라 漁港開發은 1987년말 현재 總計劃物量 403km중 282km를 개발하였다.

<表 99>

全 國 漁 港 現 況

단위: 개항

	漁 港 數	指 定 漁 港				小 規 模
		計	1種	3種	2種	
計	1,941	386	37	24	325	1,555
釜 山	16	5	1	-	4	11
仁 川	3	1	-	-	1	2
京 畿	121	35	-	3	32	86
江 原	56	24	8	-	16	32
忠 南	64	32	3	1	28	32
全 北	45	17	1	3	13	28
全 南	854	126	6	8	112	728
慶 北	120	35	7	2	26	85
慶 南	563	95	7	5	83	468
濟 州	99	16	4	2	10	83

자료: 수산청, 어항과

### 1. 第 1·3 種 漁港

1·3種漁港은 61개항의 計劃物量 66km중 1987년까지 39km를 시설함으로써 58.8%를 개발하였다.

1987년도 1·3種漁港開發은 完工爲主의 漁港 建設과 漁船의 安全收容을 위하여 防波堤 등 外廓施設 開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忠南의 安興港 등 25개항에 337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4,277m를 시설하였고 慶南의 能良港 등 3개항의 基本施設을 완성하였다.

또한 漁港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19개항에 25억원을 투자하여 老朽·脆弱 施設에 대한 補修·補強事業을 추진하였으며, 颱風 등 被害復舊費로 13억원을 투자하였다.

### 2. 第 2 種 및 小規模港

市·道知事 管理港인 2種漁港 開發은 計劃物量 98km중 1987년까지 62km를 시설하였고 小規模港은 計劃物量 239km중 181km를 시설함으로써 각각 62.7%와 75.8%를 개발하였다.

1987년도 2種 및 小規模港 開發 역시 完工爲主의 漁港建設에 두고 既着手港의 完工을 촉진하였다.

2種漁港 및 小規模港은 190개항에 121억원(國費 50%, 地方費 50%)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8,182m를 시설하였고 70개항의 基本施設을 완성하였으며, 아울러 颱風 등 被害復舊費로 167억원을 투자하였다.

(表 100) 漁 港 開 發 現 況

단위: ㎡

	總 計 劃	施 設 量		對 比 (%)
		'87	'87까지	
計	403,044	12,459	281,711	69.9
1·3種 漁 港	65,829	4,277	38,714	58.8
防 波 堤	26,983	2,118	20,171	
物 揚 場	27,451	1,018	12,024	
船 着 場	938	20	348	
其 他	10,457	1,121	5,671	
2種 漁 港	98,050	1,636	61,520	62.7
防 波 堤	42,488	1,146	25,120	
物 揚 場	10,490	199	4,741	
船 着 場	24,619	291	19,156	
其 他	20,453	—	12,503	
小 規 模 港	239,165	6,546	181,477	75.8
防 波 堤	40,777	1,982	25,064	
物 揚 場	11,265	373	7,518	
船 着 場	141,733	4,011	110,310	
其 他	45,390	180	38,585	

자료: 수산청, 어항과

이들 漁港施設外에 政府豫算 380백만원을 투입하여 給油施設 3개소 (6,500㎡)와 小型 漁船簡易修理所 2개소를 시설하여 漁港機能을 원활히 하였다.

## 第 8 章 水產團體 및 漁民後繼者 育成

### 第 1 節 水產業協同組合

#### 1. 組織

水產業協同組合의 組織은 변동이 없었으나 組合員은 1986년에 비해 3,218명이 늘어나 142,148명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地區別水協의 組合員은 139,048명으로 全國 141,204漁家の 98.5%가 참여하는 漁民의 유일한 協同組織으로 성장하였다.

(表 101) 水 協 의 組 織

	單 位	'84	'85	'86	'87
水協中央會	개소	1	1	1	1
會 員 水 協	"	72	72	72	72
· 地 區 別	"	56	56	56	56
· 業 種 別	"	14	14	14	14
· 製 造 業 別	"	2	2	2	2
組 合 員	천명	137.3	138.8	138.9	142.1
任 職 員	명	5,727	5,837	5,915	5,984

자료: 수협중앙회

註: 任職員에는 非常勤 임원 미포함

## 2. 運 營

### 가. 事業規模

1987년의 水協 事業規模는 38,671억원 (중앙회 : 23,340 회원조합 : 15,331)으로 1986년에 비하여 5,331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중 水協中央會의 事業은 信用, 共濟, 相互金融事業이 신장하였으며, 借款事業은 52.1%나 감소하였다.

<表 102>

水協中央會 事業規模

단위 : 억원

	'84	'85	'86	'87	'87/'86 (%)
計	16,100	18,147	20,161	23,340	115.7
信用事業	4,344	5,147	6,023	7,024	116.6
外換事業	1,441	1,344	1,373	1,232	89.7
經濟事業	3,067	3,501	3,713	3,870	104.2
共濟事業	6,423	7,257	8,749	10,863	124.1
借款事業	95	82	48	23	47.9
指導事業	49	53	64	64	100.0
相互金融事業	681	763	191	264	138.2

자료 : 수협중앙회

會員組合의 事業規模는 전년에 비하여 2,1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信用, 經濟 및 相互金融事業의 신장에 기인하며, 사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經濟事業이 56.8%, 信用事業이 27.5%로서 어획물 위판과 조합원에 대한 營漁資金 공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 103)

會員組合 事業規模

단위: 억원

	'84	'85	'86	'87	'87/'86 (%)
計	10,725	11,228	13,179	15,331	116.3
信用事業	2,527	2,921	3,525	4,211	119.4
經濟事業	6,867	6,890	7,711	8,712	112.9
共濟事業	683	701	913	887	97.1
指導事業	66	65	65	79	121.5
相互金融事業	582	651	965	1,442	149.4

자료: 수협중앙회

나. 收支狀況

1987년 水協中央會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종합한 事業收益은 1986년에 비하여 26,409백만원이 증가한 329,133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購買品 販賣代金이 139,276백만원으로 전체 事業收益의 42.3%를 차지하고, 貸出金利子는 54,525백만원으로 16.6%, 共濟料 및 共濟還入金은 60,119백만원으로 18.3% 이다.

事業費用은 1986년에 비하여 25,877백만원(8.5%)이 증가한 328,151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購買品 販賣原價가 135,663백만원으로 전체 事業費用의 41.3%를 차지하고, 共濟編入金 및 販賣品 販賣原價가 각각 38,033백만원과 38,005백만원으로서 전체 事業費用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事業收益에서 事業外 收益과 事業外 費用을 가감한 經常利益은 1986년에 비해 426백만원이 증가한 1,043백만원이며 경상이익에 特別利益과

〈表 104〉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단위: 백만원

	'84	'85	'86	'87	'87/86 (%)
收 益	271,887	312,668	302,724	329,133	108.7
費 用	270,751	311,098	302,274	328,151	108.5
剩 餘	1,136	1,570	450	982	218.2

자료: 수협중앙회

特別損失 및 法人稅를 가감한 當期純利益은 1986년에 비하여 532백만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會員水協은 地區別水協, 경우 委販手數料과 貸出金利子가 주된 收益으로 1986년 대비 15,394백만원이 증가한 124,381백만원이며, 費用 면에서는 收益의 대부분을 借入金利子, 事業管理費, 委販造成金 및 指導 事業費등으로 支出하고 있으며 1986년에 비해 14,390백만원이 증가하였다. 業種別 및 製造業水協은 貸出金 利子와 地區別水協이 지급하는 委販 造成金이 주된 수익원이며, 借入金 利子, 事業管理費 및 指導事業費로 收益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表 105〉 會員組合 收支狀況

단위: 백만원

	'84	'85	'86	'87	'87/86 (%)
收 益	80,611	90,928	108,987	124,381	114.1
費 用	78,522	87,828	104,179	118,569	113.8
剩 餘	2,089	3,100	4,808	5,812	120.9

자료: 수협중앙회

#### 다. 出資金 造成

水協 自立基盤 確立의 기초가 되는 出資金を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増資運動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1987년도 水協中央會 出資金は 1986년 대비 7.8%가 증가한 10,616백만원을 조성하였고, 會員組合에 대한 出資配當金도 1986년 대비 258%가 증가한 502백만원(出資金의 4.7%)을 배당하였으며, 會員組合의 出資金은 1986년에 비해 15.7%가 증가한 46,188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出資配當金은 2,874백만원(출자금의 6.2%)을 배당하였다. 또한 조합원 1인 平均出資金은 1986년의 287천원에서 325천원으로 증가되었다.

(表 106)

出資金 造成

단위: 백만원

	'84	'85	'86	'87	'87/'86 (%)
計	36,597	43,900	49,760	56,804	114.1
水協中央會	7,397	9,205	9,841	10,616	107.8
會員水協	29,200	34,695	39,919	46,188	115.7
· 地區別	23,949	28,457	32,886	38,158	116.0
· 業種製選別	5,251	6,238	7,033	8,030	114.1

자료: 수협중앙회

## 第 2 節 水産物 輸出團體

수출단체는 管掌品目の 輸出推薦과 會員商社에 대한 輸出支援資金 配定, 輸出秩序 및 會員 共同利益 増進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水協, 韓國

遠洋漁業協會, 韓國內水面漁業協會, 大韓漁網工業協會는 生産者團體이나 輸出團體機能도 수행하고 있다.

<表 107>

水產物輸出團體

團 體 別	根 據 法 律	許 可 者 ( 許 可 日 字 )	推 薦 品 目
韓國水產物輸出 組 合	貿易法 第 55 條	商 工 部 長 官 ( '86. 5. 1 )	활선·냉동어류, 간 미역, 꽃게, 쥐치포, 갯지렁이 등 34 품목
韓國 遠 洋 漁 業 協 會	民法 第 32 條	水 產 廳 長 ( '64. 6. 3 )	참치
韓國內水面漁業 協 會	"	水 產 廳 長 ( '70. 4. 15 )	뱀장어, 실지렁이
大韓漁網工業 協 會	"	水 產 廳 長 ( '66. 3. 31 )	망 및 끈류
水協中央會	水產業協同組合法	水 產 廳 長 ( '62. 4. 1 )	굴 통조림
韓國農林水產 食 品 輸 出 組 合	貿易法 第 55 條	商 工 部 長 官 ( '64. 12. 11 )	혼합·바지락 통조 림

자료: 수산청, 무역과

### 第 3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1987년 漁村 새마을事業은 漁業生産基盤事業, 所得增大事業, 漁村副業  
事業 및 精神啓發事業 등에 13,433백만원의 事業費를 투자하여 船着場,  
物揚場, 防波堤 등 小規模漁港開發 5,417 m와 共同作業場 10개소, 多目的  
漁船 12척, 增殖殖漁場開發 923ha, 內水面稚魚 34백만마리 방향과 기타

38건의 漁業附帶施設을 추진하였다.

특히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漁民 및 水産公職者 86,500 명에 대하여 文化國民의 基本德目과 資質涵養을 위한 國民教育을 실시하였으며, 새 漁民誌·漁船誌·遠洋漁業誌 등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올림픽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漁民後繼者 育成을 위하여 1987년에 漁船漁業, 增養殖漁業, 水産物加工 分野에서 어촌청소년 816명을 선발하여 6,888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1人當 支援金額은 漁船漁業과 魚類蕃養漁業은 10백만원, 貝類蕃殖은 8백만원, 海藻類蕃殖과 水産物加工에는 6백만원씩 지원되었으며, 支援條件은 漁船漁業 및 魚類蕃養漁業은 3年据置 7年償還, 其他漁業은 3年据置 4年 均等分割 償還에 適用金利는 연 5%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새마을運動中央本部 研修院에서 精神教育 3일간, 國立水産技術訓練所에서 6일간씩 專門分野別로 技術教育을 실시하였으며 漁村指導所의 專擔指導員 219명이 配置되어 사후지도를 담당하였다.

<表 108>

漁民後繼者育成事業 實績

단위 : 명, 백만원

	計	%	'81~'86	%	'87	%
人 員	3,747	100	2,931	100	816	100
· 漁 船 漁 業	2,246	60	1,688	58	558	68
· 增 養 殖 漁 業	1,463	39	1,213	41	250	31
· 水 産 物 加 工	38	1	30	1	8	1
支 援 額	27,824	-	20,936	-	6,888	-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 第 9 章 水產事業 總括

### 第 1 節 投融資 實績

1987년 投融資事業은 增殖事業 외 60개 單位事業과 1986년도에서 移越된 漁港建設事業 등 5개사업을 추진하여 前년도 移越事業은 100% 완료하였고, 1987년도 計劃事業中 研究團地造成工事 외 8개事業의 일부가 行政外的 興件 등으로 부진하여 1988년도로 이월되었다.

(表 109)

主要水產振興事業 執行實績

단위: 백만원

事業名	單位	事業量			總事業費
		計劃	執行	移越	
增殖事業					
· 養殖漁場開發	ha	594	594	-	4,203
	樞	4,000	3,899	-	
	個所	20	21	-	
· 養殖基盤施設	個所	11	10	1	698
· 沿岸漁場淨化	ha	7,000	6,589	-	283
	(本)	(7,000)	(7,268)		
· 颱風被害復舊	件	2,345	2,337	-	18,162
資源造成					

事業名	單位	事業量			總事業費
		計劃	執行	移越	
· 人工魚礁施設	ha	7,000	7,278	—	9,722
· 種苗培養場施設	個所	1	—	1	302
漁業指導					
· 指導船建造(400長寸)	隻	1	—	1	40
· 漁業無線局施設	個所	2	2	—	612
	臺	90	82	—	
漁港建設					
· 1・3種漁港	m	3,415	4,277	—	36,248
· 2種以下規模漁港	"	6,540	8,182	—	12,126
· 颱風被害復舊	個所	836	825	11	18,007
漁撈施設					
· 老朽漁船代替	G/T	12,000	11,982	—	47,516
· 動力改良	馬力	22,000	25,127	—	3,339
· 피해부子(어선및어망)	隻	6,593	6,181	—	43,760
	件	1,147	1,136		
· 裝備改良	臺	213	213	—	1,781
水產物流通					
· 委販場施設	坪	1,478	1,247	—	727
· 給油, 給水施設	個所	3	3	—	258
· 漁船簡易修理所	"	2	2	—	124
遠洋漁業開發					
· 南水洋새우漁場調査	隻	1	—	1	351
· 아르헨티나漁業進出	棟	25	12	13	1,521
	名	27	10	17	
	隻	1	1	—	
水產資金支援					
· 營漁資金	—	—	—	—	13,000
· 水產振興財政資金	—	—	—	—	2,000
· 颱風被害漁民約定 利子補助	件	8,828	9,869	—	560
· 船員共濟料補助	名	44,000	45,459	—	532
· 營漁資金利差補填	—	—	—	—	1,509

事業名	單位	事業量			總事業費
		計劃	執行	移越	
漁政管理	個所	5	3	2	71
・ 漁村副業	隻	2	2	-	138
・ 西海5島支援	個課題	4	4	-	360
・ 漁村指導	"	13	12	1	5,672
・ 試驗研究	"	4	4	-	290
・ 淡水魚試驗研究	名	433	423	-	1,123
・ 漁業技術訓練	萬 마리	3,400	3,376	-	551
・ 內水面開發	個所	1		1	-
・ 稚魚放養	"	2	2	-	30
・ 道立內水面開發試驗場	"	2	2	-	50
・ 마을共同養魚場	"	1	1	-	50
・ 연어人工孵化放流	"	1	1	-	214
・ 淡水魚加工施設	"	65	65	-	628
・ 淡水魚直賣場施設	件	218	218	-	3,412
・ 內水面被害復舊	"				
새마을事業(水協)	"				

자료: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表 110) 移越事業 (1986⇒1987)

단위: 백만원

事業名	物量	事業費			
		計	補助	融資	自担
計		7,598	6,794	321	483
漁港建設	13個港	845	845	-	-
(兼造 및 태풍피해복구)	359.6 m				
南水洋漁場調査	1隻	804	-	321	483
扶安種苗培養場	1個所	754	754	-	-
小黑山島港建設	"	2,780	2,780	-	-
研究湖地造成工事	"	2,415	2,415	-	-

자료: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表 111〉

移 越 事 業 (1987→1988)

단위 : 백만원

事 業 名	物 量	事 業 費					移 越 事 由
		計	補助	融資	地方費	自担	
計		8,028	7,303	70	360	295	
漁 港 建 設 (築造 및 颱風被害 復舊)	11個港	3,060	3,060	-	-	-	颱風설마 및 다이너호 被害로 絶對工期不足
漁 港 調 査	6 件	283	283	-	-	-	"
指 導 船 建 造	1 隻	1,100	1,100	-	-	-	計劃上移越('87. 1~ '88. 9)
南水洋漁場調查	"	388	137	-	-	251	明示移越('87.1~'88.3)
養 殖 基 盤 施 設	1個所	100	20	50	10	20	農地轉用許可遲延
道立 內水面開發 試驗場施設	"	700	350	-	350	-	敷地買入造成遲延
南濟州種苗培養場	"	672	672	-	-	-	敷地買入 및 公有水面 埋立協議遲延
研究團地造成工事	"	1,666	1,666	-	-	-	設計變更 등으로 絶對 工期不足
漁 村 副 業	2個所	59	15	20	-	24	適地選定遲延으로 工 期不足

자료 :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第 2 節 事 業 成 果

1987년도 水産施策方向은 豐饒로운 바다를 가꾸어 살기좋은 福祉漁村  
建設에 두고 魚族資源의 減少傾向에 대비하여 水産資源을 造成管理하고  
기르는 漁業의 生産基盤施設을 확충하였으며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로  
水産物 生産은 333만톤, 輸出은 17억3천만달러로, 漁家所得은 전년대비



을 하였다.

遠洋漁業의 안정적 成長을 위하여 韓·美漁業協定 更新을 비롯하여 濠洲, 키리바시, 쿡諸島 등과 附屬約定을 更新하고 總 15개 國際會議에 참석하여 協定·附屬約定 更新, 協定遂行事項 등을 協議하였으며, 4개국의 水產關係人士 招請 및 3회에 걸친 交涉團 派遣과 外國人研修生 訓練, 水產專門家 派遣 등으로 國家間의 協力を 강화하였다. 또한 新漁場 確保를 위해 칠레漁場, 南조지아섬漁場 등 公海漁場試驗을 하였고, 스리랑카, 몰디브漁場 등 漁業協力에 의한 漁場試驗을 실시하였다. 水產物 食糧化와 流通改善을 위해 요리강습회 및 試食會를 13회 개최하였고 委販場施設 확대와 더불어 直出荷 및 內陸地 系統出荷를 확대하고 政府備蓄 및 民間出荷調節事業으로 202천톤을 收買, 盛需期에 방출하였다.

漁撈施設에 있어서는 老朽漁船代替(466隻)와 動力改良(25,127HP) 및 漁撈裝備改良(30w無電機 77臺등 4種 213臺) 등 漁船現代化에 주력한 바 動力船이 全體漁船의 79.5%로 높아졌으며 經濟성이 높은 合成樹脂船은 1.9%에서 2.4%로 신장되었다. 漁港建設은 484억원을 215개항에 投入, 73개항을 완공함으로써 總計劃 403km中 282km를 완성하여 69.9%를 개발하였으며 颱風被害復舊에 180억원을 투입하였다.

漁家負擔輕減을 위해 私債代替資金 502億원을 低利資金(8%) 및 相互金融資金(10%)으로 支援하였고 零細漁家(無動力船使用漁家 등)에 지원된 中長期 資金 40억원을 金利 5%~10%에서 3%인 低利資金으로 대체 지원하였으며, 연리 10~11%의 營漁資金 및 水產關聯資金(計劃造船, 漁船建造資金 등)의 金利를 8%로 引下 조치하였다. 그리고 營漁資金 利差補填, 颱風被害漁民 約定利子補助, 船員共濟料 補助 등 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免稅油類도 362만드림으로 擴大 供給하여 357억원의 漁民負擔을 경감시켰다.

## 第 10 章 水産法令 整備 및 制度 改善

### 第 1 節 法令 整備

#### 1. 漁船法 施行令 改正

漁船所有者의 船舶國籍證書 등 여러가지證書의 檢印·檢査에 따른 重複과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船舶國籍證書 및 船籍證書의 檢印을 漁船定期檢査와 같이 받도록 하고 道知事의 20톤이상 漁船에 대한 登錄業務를 市長·郡守에게 委任하여 모든 漁船에 대한 登錄에 관한 權限을 一元化하며, 기타 漁船法이 改正(1986. 5. 12 法律 第3829號)됨에 따라 그 委任事項과 現行規定의 운용상 나타난 未備點을 補充하기 위해 1987. 1. 24. 漁船法 施行令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漁船의 船舶國籍證書 또는 船籍證書의 檢認을 4년 마다 받는 漁船定期檢査와 같이 받도록 하고, 漁船의 定期檢査 및 中間檢査는 檢査證書의 有効期間이 滿了된 때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漁民의 편의를 위하여 有効期間 滿了전 이라도 同 檢査를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漁船登錄業務는 總噸수 20톤이상인 경우에는 道에서, 20톤미만인 경우에는 市·郡에서 하도록 二元化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는 모두 市·郡에서 專擔하도록 一元化하였다.

## 2. 漁船法 施行規則 改正

漁船法の 改正 및 同法 施行令의 改正(1987. 1. 24 大統領令 第12066號)에 따라 이들 法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動力漁船과 無動力漁船의 範圍를 調整하며, 滿載吃水線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어선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現행 규정의 운영상 未備點을 補完하는 한편 法令體系를 整備하기 위하여 1987. 6. 20 農林水產部令 第979號로 全文을 개정하였다.

### ◇ 主 要 骨 子

가, 종전에는 무동력어선의 범위에 속하던 推進機關을 설치하고서도 주로 돛으로 항행하거나 前後進이 불가능한 총톤수 1톤미만의 어선을 동력어선의 범위에 속하도록 조정하고,

나, 배의 길이 24m 미만인 어선으로서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特殊材質 漁船의 種類를 合成樹脂材漁船·알루미늄合金材漁船 및 纖維材漁船으로 구분하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船舶國籍證書·船籍證書 또는 登錄畢證의 改書申請을 따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당해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다, 船舶國籍證書 또는 船籍證書의 檢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검인시에 신청서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확인, 다음번 검인기일의 기재, 검인증서의 날인 등 檢印節次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 어선의 臨時檢査를 받는 對象範圍를 확대하여 復元性資料의 내용을 변경할 때,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시의 일부 검사사항을

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난 때 및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임시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을 추가 하였으며,

마, 중견에는 漁撈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滿載吃水線의 表示義務를 免除하여 온 것을 어선의 해상 안전운항을 위하여 앞으로는 길이 24 m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바, 漁船檢査期日에 當該 어선이 국내항으로 航海中이거나 어장에서 조업 또는 성어기에 있어, 지정된 기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檢査機關이 漁船檢査證書有効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 바, 그 延長節次를 定하였으며,

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해상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復元性資料 및 백러스트적재에 관한 자료를 작성, 船內에 備置토록 義務化하고,

아,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어선의 定期檢査 또는 中間檢査時의 檢査準備事項에 어선에만 있는 설비인 處理加工施設의 準備에 관한 事項을 追加하였다.

### 3. 漁船用品의 型式 및 製造施設의 承認 등에 관한 規則 制定

漁船法の 개정으로 漁船用品의 規格化와 品質向上을 위하여 漁船用品의 型式 및 製造施設에 관한 승인과 그에 따른 검정에 관한 제도를 각각, 신설하였는 바, 이에 그 승인 및 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7. 11. 6 農林水産部令 第989號로 漁船用品의 型式 및 製造施設의 承認 등에 관한 規則을 제정 공포하였다.

主要骨子を 보면,

型式承認의 대상이 되는 漁船用品의 범위를 규격화가 가능한 용품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漁船用品의 型式承認을 얻기 위하여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試驗研究機關으로부터 그 성능·구조에 관한 시험을 받도록 하였으며, 型式承認을 얻은 자가 그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이를 제조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형식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型式承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製造施設 承認의 境遇에도 그 對象과 節次, 取消 등에 관한 사항은 型式承認의 경우에 준하여 실시하며 型式·製造施設 承認을 얻은 자가 製造한 漁船用品은 承認內容과 使用方法, 檢定에 合格한 刻印이나 壓印을 표시하여 性能과 品質 등에 대한 保障을 받도록 하였다.

#### 4. 漁業許可에 관한 規則 改正

연근해어업에 從事하는 漁船으로서 漁船規模의 上限線이 設定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에 대하여 그 上限線을 設定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허가절차 등에 관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7. 3. 9 漁業許可에 관한 規則을 改正(농림수산부령 제966호)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水産關係法令 違反으로 漁業許可가 取消된 漁船은 어업허가 제한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漁業許可를 申請하도록 하고,

둘째, 관할관청이 하나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許可할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有効期間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도록 하였으며,

셋째,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流刺網漁業 등의 漁船規模를 10톤이상에서 8톤~70톤미만으로 하고, 沿岸漁船의 限界噸數를 10톤미만에서 8톤

미만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네째, 東·西 特定海域의 漁撈限界線, 盛漁期 漁撈許可線 또는 操業自制海域을 越線 操業한 이유로 허가취소된 어선을 매수한 자가 새로이 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許可制限期間을 종전에는 매수후 2월까지로 하던 것을 매수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許可制限期間을 강화하고,

다섯째, 潛水器漁業과 海藻採取漁業 등에 대한 漁業許可의 制限 및 條件을 강화하였다.

## 5. 船舶安全操業規則 改正

特定海域 및 操業自制海域에 들어하는 어선에 대한 漁撈限界線 越線 및 被拉防止를 위한 安全操業을 확보하고, 漁撈保護本部의 警察要員과 水産業協同組合要員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漁撈保護本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이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出入港 申告機關의 指揮·監督 등에 관한 事項이 종전에 警察署長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해상경찰업무를 담당하는 地區海洋警察隊長의 所管으로 하도록 하고,

둘째, 乘船指導員의 配置 및 指導業務를 종전에는 水産業協同組合要員이 하던 것을 해상안전업무를 담당하는 警察要員이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乘船指導員의 任務를 어선의 월선조업 및 피납의 방지, 안전조업수칙의 준수지도, 선단에서의 무단이탈 방지 지도 등으로 具體化하고,

네째, 일정해역(시·도지사가 당해 市·道 방위협의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의 漁撈 및 航海가 禁止되나 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는 期間中에는 어로 및 항해 禁止時間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였다.

## 6. 水產業法 第20條 第1項 4號 등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 등의 基準과 節次에 관한 規則 改正

水產關係法令 違反漁船에 대한 行政處分 節次를 개선하여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行政處分 基準을 보완하여 불법어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1987. 7. 4 農林水產部令 第983號로 “水產業法 第20條 第1項 4號 등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 등의 基準과 節次에 관한 規則”을 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水產關係法令 違反者의 出席日時를 출석요구서 교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고 漁業許可狀 押留 등으로 체함한 期間도 漁業停止期間에 算入하도록 하였으며, 法令 違反者에 대한 調査 完了後 7일이내에 行政處分 토록 하였다. 또한 違反漁船의 繫留 港口를 18개 항구에서 109개 항구로 확대하고 虛僞로 位置報告를 한 때에는 30일간 漁業停止토록 하였다.

## 7. 水產製造業의 許可基準 등에 관한 規則 改正

水產製造業中 冷凍·冷藏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의 설계서에 대한 專門機關의 事前技術檢討를 받은 후 申請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설계서 작성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民願簡素化를 위하여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書로 許可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現行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未備點을 補充하기 위해 1987. 4. 1 農林水產部令 第967號로 水產製造業의 許可基準 등에 관한 規則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水產製造業의 條件附 許可를 받은 자가 許可基準을 갖춘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이 내에 신고하도록 완화하고,

둘째, 冷凍·冷藏業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중 製造工場의 建物·機器·其他 設備의 配置圖도 建築士法에 의한 建築士가 작성한 書類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水產製造業者가 指定된 漁獲物 販賣場所外의 場所에서 매매 또는 교환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가공제품을 제조한 때에는 許可取消 또는 營業停止 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 장어통발漁船의 漁具規模·基準 등에 관한 告示 制定

水產資源保護令 第 6條2의 規定에 의하여 장어통발漁船의 漁具規模를 噸급별로 제한하므로써 漁業紛爭 防止와 장어資源 保護로 漁業經營改善을 위하여 1987. 6. 9 水產廳 告示 87-6號를 制定, 1987. 8. 1 부터 施行토록 고시하였다.

(表 112)

잡어통발어선의 漁具規模

漁 船 規 模	漁 具		
	동 발 률 數	總 길 이	동발구멍크기
20톤 未滿	3,100개 以內	31km 以內	1cm 以上
20톤以上~40톤 未滿	3,400개 以內	34km 以內	1cm 以上
40톤 以上	3,700개 以內	37km 以內	1cm 以上

자료 : 수산청, 연근해과

### 9. 第 1種共同漁業, 第 3種共同漁業 및 申告漁業의 名稱과 操業 方法 등에 관한 告示 改正

1987년 颶風 설미號 來襲時 많은 人命被害와 財産損失을 입었던 浮船 鉤鯨網漁業은 水産業法 第22條에 의한 申告漁業으로 全南 新安郡과 靈光郡 周邊 水域에서 浮船을 固定시켜 총고 4~5名の 船員이 乘船, 常住하면서 潮流를 이용하여 갯새우를 漁獲하고 1~3일 간격으로 運搬船이 生活 必需品를 供給해주고 漁獲物을 收集하는 漁業이다.

그러나 이 浮船은 海上 構造物로서 漁船法上 漁船 登錄이나 檢査 對象이 못되었고 自力 移動能力이 없어 氣象急變時에는 安全 操業上 問題 點을 내포하고 있어 1987. 11. 25 水産廳 告示 第85-15號를 개정하여 申告漁業에서 浮船鉤鯨網漁業을 삭제하고 水産業法 第12條에 의한 道知事 許可漁業이면서 갯새우를 漁獲하는 醜船網漁業으로 轉換, 許可 對象 船舶 152척에 대하여 1988년말까지 漁船法에 의하여 漁船 檢査와 登錄을 필하고 醜船網漁業 許可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申告漁業에서 許可漁業으로 轉換되던은 許可申請書에 漁船檢査證書寫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漁船檢査는 물론 노, 돛, 救命裝備, 쌍안경,

라디오, 소화기, 나침반, 통신장비 등 필요한 裝備에 대한 檢査도 병행하게 함으로써 安全操業에 萬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第 2 節 制度 改善

### 1. 水産物 檢査制度 改善

水産物 檢査業務의 迅速化와 規制緩和로 水産業界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優秀加工業體 檢査免除實施要領을 개정하여 水産物 檢査免除承認期間 經過時 별도의 申請書 없이 계속 연장하고 檢査免除對象品目도 3개품목(冷凍品, 통조림, 한천)에서 8개품목(冷凍品, 전돔, 간청어알, 調味加工品中 調味귀치포·調味오징어 胴體, 통조림品, 魚粉, 魚肥, 魚肉煉製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檢査減免基準은 冷凍品 등의 外觀檢査는 추출개수의 100%에서 50%로, 自然寒天 등의 檢査는 신청 수량의 30%에서 20%로 개선하여 1987. 9. 15 부터 시행토록 水産物 檢査規則 제146호를 1987. 8. 11 개정하였다. 또한 水産業界에 대한 規制緩和와 輸出促進을 위하여 1987. 10. 28 水産物 檢査例規 제147호(冷凍·冷蔵 編)를 일부 개정하여 加工工場으로부터 製品生産現況 報告를 每週 1회에서 월 1회로 하고, 理化學檢査도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分期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品質標準에 미달되는 冷凍水産加工品은 餌料로 輸出可能토록 하였으나 餌料 및 飼料用으로 확대하였다.

## 2. 養殖水産物 委託販賣制度 改善

水産資源保護令 第 21條에 따라 모든 水産物은 強制上場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委託販賣手數料을 委託販賣高의 4~5%씩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鮮度維持 또는 流通體系上 委託販賣가 불합리한 養殖水産物에 대해서는 漁民들로부터 任意上場制을 실시토록 하는 여론이 있어 全國的 任意上場制 실시 전초단계로 委託手數料을 인하토록 하였다. 1段階로 1986. 7. 1 굴수하식조합, 1·2구 잠수기조합, 진도·고흥·화성수협에서 취급하는 김, 미역, 굴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인하토록 한데 이어 1987. 1. 1 부터는 완도, 장흥, 해남, 광양, 하동조합의 김·미역·굴에 대해 0.5%포인트 인하토록 하였으며, 1988. 1. 1 부터는 全組合에 대해 養殖水産物은 0.5%포인트를, 鮮魚類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인하토록 수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 편성지침을 개정토록 하였다.

**여백**

第 2 編

1988 年 度 水 産 施 策

**여백**

## 第 1 章 水產施策 方向

### 第 1 節 指標와 重點施策

水産業은 그동안 高度成長施策을 추진한 결과 生産, 輸出 및 漁船勢力 등 광목할만한 신장을 이룩한 反面, 그 과정에서 漁獲手段의 增大, 漁業秩序의 未定着 및 遠洋漁業의 規制 強化 등 水産業自體의 內在的 要因과 干拓·埋立, 工業化, 都市化 등 他部門의 發展에 따른 相衡的 要因으로 資源減少, 漁場縮小·汚染 및 水産人力의 量的 減少와 質的 低下라는 어려운 局面을 맞고 있다. 1988년에는 지금까지 이룩한 基盤과 經驗을 토臺로 당면한 여건을 조화시켜 生産 330만톤, 수출 17억 \$을 指標로 설정하고 아래의 施策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첫째, 沿岸漁場의 牧場化
- 둘째, 安全操業과 漁業秩序 確立
- 셋째, 水産技術 開發과 普及
- 네째,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 다섯째, 水産物 需給安定과 食糧化
- 여섯째, 漁業基盤施設 擴充

〈表 113〉

生産計劃

단위: 천%

	'88 計 劃	3 個 年 平 均 ( '85 ~ '87 )	對 比 ( % )
計	3,300	3,365	98.1
沿 近 海	1,638	1,582	103.5
養 殖	900	867	103.8
內 水 面	62	56	110.7
遠 洋	700	860	81.4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表 114〉

輸 出 計 劃

단위: 백만 \$

	'88 計 劃	3 個 年 平 均 ( '85 ~ '87 )	對 比 ( % )
計	1,700	1,362	124.8
水 產 物	1,595	1,265	126.1
· 沿 近 海	1,045	810	129.0
· 遠 洋	550	455	120.9
漁 網	105	97	108.2

자료: 수산청, 무역과

한편, 第6共和國 탄생과 더불어 대두된 國民和合 實踐과 都·農·漁 家間 均衡發展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 1988. 1. 11 發足된 民主和合推 進委員會에서 第 13代 大統領 當選者에게“水産業의 획기적 振興策 講究” 를 건의하였다. 이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水産團體의 自律性 保障 등 民主的 運營制度의 講究, 水産業界의 施設 擴充과 원활한 經營을 위한 投融資 增大로 國民 食糧産業 次元에서 水産業을 획기적으로 增大토록 하는 사항인 바 이의 實踐을 위해 구체적 實踐計劃을 第 6次 經濟社會

開發 5個年 修正計劃과 長期開發計劃에 反映, 추진해 나갈 것이며, 水産 政策 樹立時 漁民 등 利害 關聯者가 參與하는 政策討論會, 간담회 등을 확대 개최하여 國民 大和合과 均衡發展을 도모하여 나갈 것이며 1988. 7. 25에는 水産業 全般에 걸친 事業執行要領, 認許可 節次 등 漁民의 關心事項들을 수록한 “對話로 알아봅시다” 冊子 2,000部를 發刊 配布하였다.

## 第 2 節 投融資 規模

1988년도에 水産部門에 지원되는 政府豫算은 1,216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되었다. 主要 新規事業은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船 350톤급 1척 代替(11 억원), 示範 漁村建設 2개소(2 억원), 馬山市 水協 綜合魚市場建設 1개소(8 억원), 1987년 農漁家負債輕減對策의 일환으로 水産資金의 金利를 引下함에 따라 발생한 水産資金 利差補填(31 억원) 및 1986년 農漁村綜合對策의 일환으로 추진한 巨文島, 黑山島水協의 漁業前進基地 施設資金 整理支援(2억원) 등이며, 增額된 事業은 1·3種漁港 建設, 種苗培養場 新設 및 補強事業, 沿岸漁場 淨化事業 등이다.

반면, 小規模漁港建設 事業은 島嶼開發促進法 施行에 따라 1988년부터 內務部로 移管되고, 內水面養魚場 施設事業은 技術, 飼料 등 養殖與件 성숙으로 民間投資로 전환하였으며, 아르헨티나 漁業移民 事業은 당초 目標대로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資金支援은 완료됨으로써 豫算이 計上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水産研究團地 造成事業은 마무리 段階에 있어 豫算이 줄어들었고, 老朽漁船代替, 動力改良事業도 支援 財源이 農漁村地域開發基金으로 전환됨으로써 政府豫算에는 計上되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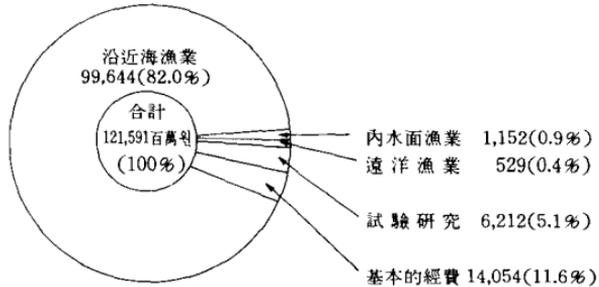
(表 115) 水 産 豫 算

단위 : 백만원

會計·用途別	'87	'88	增△減	'88/'87(%)
一 般 會 計	88,365	96,347	7,982	109.0
財政投融资特別會計	25,129	21,244	△3,885	84.5
國庫債務負擔行爲	3,000	4,000	1,000	133.3
計	116,494	121,591	5,097	104.3
事 業 費	104,442	107,537	3,095	102.9
基 本 的 經 費	12,052	14,054	2,002	116.6
人 件 費	8,906	10,713	1,807	120.3
基 準 經 費	2,529	2,676	147	105.8
官署當經費	617	665	48	107.7

자료 :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漁業別>



〈事業別〉

단위: 백만원

	'87	'88	增 △ 減	'88/'87(%)
計	116,494	121,591	5,097	104.3
事業費	104,442	107,537	3,095	102.9
水産資源造成	9,459	10,317	858	109.1
養殖漁場開發	3,459	4,135	676	119.5
安全操業指導	4,964	5,470	506	110.2
內水面漁業開發	1,806	1,152	△ 654	63.8
試驗研究 및 漁村指導	7,729	6,585	△ 1,144	85.2
遠洋漁業의 安定的成長	981	529	△ 452	53.9
水産物流通施設	841	1,703	862	202.5
漁港建設	45,548	46,363	815	101.8
漁撈施設	9,217	5,204	△ 4,013	56.5
漁民支援強化	1,512	1,794	282	118.7
水産資金	17,136	21,168	4,032	123.5
其他經常事業	1,790	3,117	1,327	174.1
基本的經費	12,052	14,054	2,002	116.6

자료: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表 116〉

各種資金(基金) 運用計劃

단위: 억원

		'87	'88	增 △ 減
調 達	營漁資金	3,500	3,840	340
	水産振興基金 및 財政資金	130	131	1
	農漁村地域開發基金	76	101	25
	國民投資基金	233	265	32
	農安基金	886	996	110
計		4,825	5,333	508
運 用	沿近海漁業經營	3,032	3,344	312
	遠洋漁業經營	515	542	27
	水産物流通·製造	120	108	△ 12
	漁撈施設	272	343	71
	備蓄 및 價格安定	886	996	110

자료: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政府豫算外에도 漁業經營資金과 水産物 流通·製造 施設 및 同 運營資金, 水産物 價格安定資金 등으로 전년보다 508억원이 증가한 5,333억원이 운영될 것이다.

### 第 3 節 水産物 生産 및 輸出 計劃

1988년도 水産物 生産指標은 전년도 생산실적인 3,332천톤보다 1%가 적은 3,300천톤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작년보다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은 300천톤에 달하던 미국해역에서의 쿼타량이 198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증식될 것으로展望되고, 1987년에 445천톤에 달하던 韓·美 共同漁業事業量이 1987. 5. 1부터 輸入으로 처리되어 生産量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년 6월말 현재 수산물 생산실적은 1,629천톤으로서 계획대비 92.6%,

(表 117)

水産物 生産動向

단위: 천톤

	'88 計 划		實 績		對 比(%)	
	年 間	6 月 末	6 月 末	'85~'87 同期平均	6 月 末 計 劃	3 個 年 同期平均
計	3,300	1,760	1,629	1,795	92.6	90.8
沿 近 海	1,638	755	693	736	91.8	94.2
養 殖	900	631	559	579	88.6	96.5
內 水 面	62	21	15	19	71.4	78.9
遠 洋	700	353	362	461	102.5	78.5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전년동기 대비 88.7%, 3개년 평균(同期)대비 90.8%로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3개년 平均統計에 韓·美 共同事業量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8월에 들면서 沿近海 漁況의 회복과 굴 養殖作況 및 遠洋漁業의 지속적인 好調로 인하여 年末까지의 生産量은 平年水準을 上廻할 것으로 展望된다.

輸出目標은 下半期에 元貨切上 등의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新製品 開發과 附加價値 提高 등 品質 高級化로 높은 값을 받도록 하고 漁網類의 輸出 擴大로 平年(3個年)에 비해 24.8% 증가한 17억 \$을 指標로 설정하였다. 1988. 6월말 현재 실적은 1,122백만 \$로서 6월까지의 계획대비 137.7%, 3개년 평균(同期)대비 172.1%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의 수출액은 世界 各 나라의 經濟狀況과 生産量, 輸出單價, 輸出量 등의 要因에 따라 多少의 증감을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水産物 主輸出國인 일본의 所要量 增加와 在庫量 減少에 따라 輸出은 目標를 크게 上廻할 것으로 展望된다.

(表 118)

水産物 輸出動向

단위: 백만 \$

	'88 計 劃		實 績		對 比 (%)	
	年 間	6 月 末	6 月 末	'85~'87 同期平均	6 月 末 計 劃	3 個 年 同期平均
計	1,700	815	1,122	652	137.7	172.1
水産物	1,595	765	1,055	605	137.9	174.4
· 沿近海	1,045	501	712	385	142.1	184.9
· 遠洋	550	264	343	220	129.9	155.9
漁網	105	50	67	47	134.0	142.6

자료: 수산청, 무역과

## 第 4 節 水産物 輸入

### 1. 對内外 與件

先進國의 원貨切上과 輸入開放 壓力 등 通商摩擦 緩和을 위해 정부에서는 輸入 自律化 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水産物의 輸入自律化率은 종전 C.C.C.N體系에서 H.S體系로 전환됨에 따라 낮아졌고 他産業과 상대적으로 自由化率의 격차가 커 輸入 自由化 提高 對象産業으로 인식되었으며 經濟收支 黒字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 配分하고자 하는 政府 經濟政策<sup>1)</sup> 水産物도 輸入을 開放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제간 通商摩擦이 제일 큰 미국의 경우를 보면, 同國은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入政策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輸出競爭力이 낮아 多國間 協商보다 당사자간 雙務協商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自國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輸入開放을 지속적으로 要求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輸入管理政策 運用方向

우리나라 漁業基盤의 未成熟과 水産業의 經濟外的 과급효과를 고려, 가능한 한 自由化 대상에서 유보되도록 하되 物價安定과 需給 원활화를 위해 輸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現행 輸入 추천세를 활용, 적정량이 輸入되도록 할 것이며, 生産漁民 所得과 직결되지 않거나 경합이 적은 品

目は自由化 추세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와 漁業協力が 긴밀히 요구되는 沿岸國에 대하여는 漁業條件과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輸入自由化하는 方式인 雙務베이스協商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3. 새우젓 輸入抑制

새우젓 輸入은 1981년부터 輸入自由化 品目으로 分類되어 그동안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서 少量 輸入되어 왔으며 國內產에 비해 品質面에서 뒤져 流通構造上 큰 문제가 없었으나, 1987년에는 良質의 中國產 輸入이 격증, 1,304톤이 輸入되었으며, 또한 國內의 것갈용 새우 生産도 평년의 2배 이상인 9,335톤이 生産되어, 國內 새우젓 價格 下落으로 生産漁民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선 새우젓 輸入業者에 대한 輸入自制指導를 실시하고, 對外貿易法 제32조에 따라 輸入에 의한 産業影響調査가 필요하여 商工部에서 輸入으로 인한 産業影響調査 개시 공고(公告 第 88-31號 1988. 7. 15)를 하였으며, 1988. 7. 18. 貿易委員會에서 對外貿易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우젓의 暫定輸入制限(1988. 7. 20~1989. 1. 11)을 議決하여 産業影響調査 기간중 暫定輸入制限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수산청에서는 새우젓 輸入에 따른 被害 漁民 支援對策을 講究中에 있다.

## 第 2 章 沿岸漁場の 牧場化

### 第 1 節 人工魚礁 施設

沿近海 水産資源의 産卵, 棲息場을 造成하기 위하여 人工魚礁를 施設하고 있다. 1988년도에는 9,772백만원을 투자하여 9個市道의 施設適地 7,000ha에 人工魚礁를 施設하고, 이미 施設한 海域中 25개소에서 漁獲効果와 魚礁의 保存狀態를 調査하여, 各 水域 및 魚種에 적합한 魚礁를 개발하고자 試驗研究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表 119)

人工魚礁施設計劃

단위 : ha

		既施設('71~'87)	'88 計 劃	'88까지 總施設
計		31,272	7,000	38,272
釜 山		100	100	200
京 畿		257	100	357
江 原		5,176	1,000	1,176
忠 南		843	300	6,176
全 北		865	300	1,165
全 南		6,222	1,500	7,722
慶 北		5,540	1,200	6,740
慶 南		8,885	1,600	10,485
濟 州		3,384	900	4,284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 第 2 節 人工種苗放流

海域別 特性에 적합한 有用品種의 種苗 生産技術 開發 및 放流를 위해 1987년에 착공한 濟州道 南濟州水産種苗培養場을 완공하고 慶尙南道 南海郡에 1,958백만원을 投資하여 種苗培養場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년에 신설하는 種苗培養場은 中間育成場을 포함하는 大規模種苗培養場으로서 기존의 種苗培養場보다 種苗生産能力이 훨씬 많은 1,200만마리 生産規模이다. 그리고 기존 8개 種苗培養場에 대하여도 貝藻類 위주의 施設에서 魚類 및 甲殼類 위주의 施設로 보강하기 위하여 279백만원을 투자하였다. 1988년에는 國立水産種苗培養場에서 2,000만마리의 有用種苗를 生産하여 漁村契 및 養殖漁民 등에게 분양하고 沿岸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資源의 증강을 위하여 水協 主管하에 慶尙南道와 國立水産振興院의 협조로 대구의 主産卵場으로 밝혀진 慶南 鎮海灣의 利水島 沿岸에 人工受精卵 19억알을 1988. 1월에 방류하였다.

연어稚魚는 1987년에 비해 8% 증가한 735만마리를 東海岸 9개河川에 1988. 3~4월에 방류하였으며 연어의 回歸率을 높이기 위하여 遡上河川의 整備와 孵化用水의 改善, 稚魚飼育技術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表 120〉

種 苗 生 産 計 劃

단위: 천마리

培養場別 魚種別	計	北濟州	注文津	麗川	迎日	巨濟	莞島	保寧	扶安
計	20,000	750	2,600	910	1,360	8,320	4,280	1,650	130
전 부	2,200	600	400	400	300	150	200	100	50
참 돔	230	100	-	50	-	-	30	-	50
돔 돔	70	50	-	-	-	-	20	-	-
우렁쟁이	10,200	-	2,200	-	1,000	3,000	4,000	-	-
넙 치	1,260	-	-	60	-	1,170	30	-	-
감 성 돔	100	-	-	100	-	-	-	-	-
꽃 게	300	-	-	300	-	-	-	-	-
가 자 미	10	-	-	-	10	-	-	-	-
보라성게	50	-	-	-	50	-	-	-	-
보리새우	4,000	-	-	-	-	4,000	-	-	-
대 하	1,500	-	-	-	-	-	-	1,500	-
조피볼락	80	-	-	-	-	-	-	50	30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第 3 節 增養殖漁業 開發

#### 1. 養殖漁業 開發 및 調整

養殖漁業 開發은 새로운 技術開發과 普及을 통한 外延漁場開發 등 養殖漁場의 지속적인 擴大開發과 單位生産性を 높여 水産物의 원활한 供給을 기하고, 각종 災害 豫防 및 一部 生産調節品種에 대한 安定生産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김, 미역, 굴, 피조개, 바지락 등과 같이 技

術이 普遍化된 品種에 대하여는 地先漁民이 共同 參與하는 漁村契 所得源으로 개발하여 沿岸 多數漁民의 所得을 증대하고, 진주조개, 魚類養殖 등과 같이 高度의 技術과 많은 資本을 필요로 하는 品種은 開發能力을 갖춘 一般漁民에게 지원하여 養殖漁業 發展을 도모하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김, 미역, 굴, 피조개와 같이 生産過剩 우려가 있는 品種에 대하여는 전국 단위로 漁場開發 및 生産을 調節하여 養殖漁民의 被害를 방지함은 물론 經營의 安定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沿岸漁場 基本調査 結果에 따라 地域別 品種別 適地適種 開發을 추진하고 高所得 新品種 開發을 확대하여 養殖品種을 多樣化해 나갈 것이다.

한편 養殖漁場 管理指導에 있어서는 全 養殖漁業權을 品種別, 養殖 時期別로 구분, 매년 精密實態調査를 실시하여 不實管理 養殖漁業權을 整備하고 不法 養殖施設에 대하여는 依法措置하여 漁業秩序를 확립함과 아울러 施設基準에 의한 適正施設과 颱風, 海溢 등 自然災害에 대비한 安全施設 指導, 각종 被害豫防, 漁場 老化防止 및 漁場의 保全管理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 2. 生産基盤의 擴充

沿岸養殖漁場の 開發과 더불어 養殖基盤施設을 확충토록 國費 補助와 低利 融資金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에도 4,623백만원을 들여 고막, 바지락, 가무락 養殖漁場 310ha, 전복, 소라 養殖場 80ha, 새꼬막 養殖場 150ha, 우렁챙이 養殖場 14ha, 眞珠 養殖場 4ha, 魚類蕃養施設 30개소를 開發 지원하고, 颱風, 갯물 등

의 災害을 이겨내고 鮭養殖을 할 수 있도록 鮭 冷凍網 4,200柵과 冷凍網 貯藏施設 2개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漁民들이 스스로 鱒이나 魚類의 種苗를 培養하여 養殖할 수 있도록 鱒種苗培養場 7개소와 魚類種苗培養場 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 第 4 節 內水面漁業의 促進

### 1. 內水面 稚魚放養

大單位水面 등 遊休 內水面의 水産資源 造成을 위해 584백만원을 투입하여 잉어, 떡붕어, 향어, 송어 등의 稚魚(體長 5~7cm) 34백만마리를 昭陽湖(江原)와 忠州湖(忠北)에 放養할 계획이다.

〈表 121〉 稚 魚 放 養 計 劃

단위 : 백만마리, 백만원

	'71~'87		'88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計	632	6,300	34	584
一 般 魚 種	579	5,291	25	375
· 잉어, 떡붕어				
開 發 魚 種	53	1,009	9	209
· 송어	19	525	4	122
· 향어 · 백연어	34	484	5	87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 2. 養魚場 및 加工施設 支援

內水面에서의 지속적인 高級魚種 生産增大를 위해 養魚場 運營資金 18 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養魚技術敎育을 실시하여 企業養魚를 육성하는 한편, 自體資金 調達能力이 빈약한 새마을 養殖契 2개소에 共同養魚場 施設費 30백만원을 지원 시설중이다. 淡水魚加工을 위해서는 50백만원을 지원, 加工施設 1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다.

## 3. 內水面漁業 技術開發 및 秩序確立

1987년에 7억원을 투입, 移越하여 추진중인 京畿道立 內水面開發試驗場이 完工을 보게됨에 따라 濟州道를 제외한 8개도가 道立 內水面開發試驗場을 보유하게되었으나, 全北道立 內水面開發試驗場은 現施設(全北 任實郡)이 老朽되고 集中豪雨時 常習의으로 浸水 되곤하여 7억원을 들여 全北 完州郡으로 移轉 施設하고, 忠北道立 內水面 開發試驗場도 施設이 老朽되고 都心에 位置함으로써 水源이 不良하여 546백만원을 들여 忠州市 달성동에서 용탄동으로 移轉施設하고 있다. 앞으로 人力增員과 施設補強으로 內水面漁業開發을 主管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遊漁 環境 필요성이 증중하고 있어 遊漁人들에게 資源 保護意識을 높이고 遊漁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新聞, 傳單, 專門誌 등을 활용, 必要性을 적극 홍보하고 봄철 産卵期, 가을철 盛漁期 및 溯河性 魚類의 遡上時期를 特別團東期間으로 설정하여 行政機關과 有關團體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全國낚시會聯合會에서는 出釣地域을 중심으로 啓蒙活動을 펴고 있으며, 洞·里長, 새마을 養殖契長 등 內水面 資源保護에 熱意가 있는 現

地 住民과 낚시인을 內水面 資源保護 名譽監視官으로 위촉하여 指導·啓蒙할 계획이다.

## 第 5 節 漁場 環境保全

産業廢水 및 都市下水, 廢棄物, 油類 등 각종 汚染物質에 의한 水質汚染과 公有水面 埋立·干拓으로부터 沿岸漁場을 保全하기 위하여 主要 沿岸 및 工團周邊水域의 環境汚染調査를 강화하고 水産資源保全地域 등 保全水域 管理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老化漁場의 底質改善 및 汚物收去 등 環境淨化事業을 실시하고, 關係部處와 협조하여 汚染行爲規制·團東 및 制度改善 등 沿岸漁場 汚染防止對策을 樹立 추진할 계획이다.

### 1. 沿岸漁場 環境調査 및 保全水域 管理

主要 沿岸 및 臨海工團 周邊水域에 350개, 水産資源保全地域에 120개 觀測點을 선정하여 一般汚染도와 重金屬含量調査를 실시하는 한편, 淸淨 海域에 대하여도 113개 觀測點을 선정, 海水 및 貝類에 대한 細菌含量 등 衛生調査를 실시하여 基礎資料로 活用할 계획이다.

연안에 지정된 水産資源保全地域(10개소, 4,125.69畝)內에는 工場設置 및 家畜放牧을 금지시키고, 公有水面 埋立, 干拓, 浚渫, 鑛物採掘 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1986~1987년에 실시한 沿岸漁場基本調査

결과를 검토하여 水産業上 保全이 요청되는 해역에 대하여는 水産資源保全地域으로 추가 지정해 나가겠으며, 1987. 11. 25 추가 지정한 全南 駕莫灣 및 慶南 山陽海域과 이미 지정된 巨濟-閑山灣, 紫蘭-蛇梁海域 등 淸淨海域에 대하여도 衛生調査를 강화하는 등 水質保全管理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2. 沿岸漁場 環境淨化

沿岸漁場に 沈積되거나 방치된 廢抗木, 廢網, 로프 등 汚物과 양식장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漁場老化로 부터 漁場被害를 예방하고 生産性を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7년 국고 150백만원을 지원, 7천ha를 淨化한데 이어 1988년에는 國庫 288백만원을 지원, 淸淨海域 및 水産資源保全地域內 어장과 양식장 밀집 수역 등 13천ha의 底質改善과 汚物을 수거토록 할 계획이다.

## 3. 赤潮對策

여름철 高水溫期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赤潮被害 豫防을 위하여 鎭海灣 등 慶南 沿岸과 麗水 沿岸, 西海岸의 仁川 沿岸에 53개 관측점을 선정, 赤潮生物 分布 및 赤潮 發生環境 등을 조사하고 漁村指導員의 機動配置, 漁民赤潮監視員 指定運用, 關係機關 合同 航空豫察 등 赤潮豫察 및 監視活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赤潮 防除技術 開發을 위한 基礎試驗과 有毒

性 플랑크톤의 出現量을 조사하는 등 研究事業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 4. 關係部處 合同對策 講究

沿岸漁場 汚染의 根本原因이 되고 있는 廢水, 廢棄物, 기름 등의 海洋流入 防止를 위하여 臨海都市의 下水 및 糞尿, 工團廢水 등 汚染物質 處理施設을 확충하고, 汚染物質의 海洋投棄行爲를 강력히 규제, 단속하는 한편, 오염사고 발생시 汚染源의 조기 제거 및 被害救濟對策을 강구토록 하는 등 相關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단위 公有水面 埋立·干拓 등으로부터 어장을 보전하기 위하여 埋立免許官廳과 적극 협조, 水産資源保全地域과 淸淨海域, 漁場密集水域 등 水産業上 保全이 요망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埋立·干拓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 第 3 章 安全操業과 漁業秩序 確立

### 第 1 節 安全操業 教育과 指導

安全操業教育은 地區別 水協 및 業種別 水協 主管下에 沿近海漁船의 船主 및 船長, 機關長, 通信長 등 95천명에게 年 1회 4시간씩 政府施策, 安保 및 安全操業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東·西海漁撈保護本部에서는 東海 및 西海의 特定海域에 출어하는 船員에 대하여 特別教育을 실시하고 全國의 港浦口와 漁船에 표어, 포스타, 팜플렛 및 弘報教材를 배포하여 漁民의 對共姿勢 確立 및 警覺心을 고취시키고 있다.

沿近海 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해서는 東·西海特定海域 및 西海·東中國海 海域, 東海 大和堆海域에서의 安全操業에 力點을 두고 漁撈活動을 指導하고 있다.

東海大和堆 오징어盛漁期(6. 15~12. 31), 黃海·東中國海 병어盛漁期(3. 1~7. 31), 西海 홍어盛漁期(11.1~다음해 4.30)에는 500톤급 이상 大型指導船 1~2척을 機動配置하고, 韓·日漁業協定 遵行을 위하여 西日本水域에는 500톤급 이하 指導船을 배치하여 漁撈保護 및 操業紛爭 豫防指導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福祉母船을 遠海漁場에 출동시켜 操業

漁船에 油類, 얼음, 기관부속품등의 船用品을 공급하고 의사를 승선시켜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다.

또한, 主要 港浦口 38개소(出入港統制所 15개소, 合同申告所 23개소)에 水協의 安全点檢要員 94명을 배치하여 出入港 漁船에 대한 安全点檢, 船團編成, 出入港 申告業務를 수행하고, 東·西海漁撈保護本部에 乘船 指導員 각 10 명씩을 배치하여 漁船의 越線操業 및 被拉豫防, 船團 無斷 離脫防止 등 操業現場에서의 安全操業指導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漁業無線局에서는 出漁船 動態把握, 조난어선 구조, 기상악화시의 대피 등 어선의 안전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盛漁期 전에 軍警機關과 협조하여 원활한 通信網을 구축함으로써 盛漁期 安全操業指導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第 2 節 不法漁業 團束

그간의 不法漁業 根絶對策 추진으로 漁民, 水産關係機關 및 團體, 有關機關들의 不法漁業 根絶 認識은 제고되었으나 아직도 不法漁業 實態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등 漁業秩序가 확립되지 않고 있어 漁民들에 대한 弘報 및 教育을 가일층 강화하는 등 漁民 意識構造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不法漁業의 源泉封鎖를 위해 不法漁船에 대한 出入港 統制 및 不法漁業 根絶 示範地域 指定 運用 등 豫防 및 再發 防止 指導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海上團束 方法을 개선하여 道單位 合同團束 日數를 확대하고 승

同團東期間中에는 夜間團東을 실시하고 있으며, 指導團東 機能을 보강하기 위해 水産廳 및 市·道의 責任團東 區域을 설정 告示한 바 있고 改正 추진중인 水産業法에 無許可 漁船에 대한 罰則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邑面 水産擔當 職員을 일부 흡수하여 市·郡에 指導團東 專擔係를 설치하는 등 指導團東 機能을 보강할 계획이다.

### 第 3 節 漁業無線局 運營과 施設 補強

최근 情報通信產業의 눈부신 발전으로 漁業通信에는 異周波 通信機 등 新型裝備가 開發 普及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第 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中에 投資를 확대하여 漁業無線局的 施設을 現代化하고 運營體制도 개선할 계획이다.

1988년에는 操業漁船의 安全을 위한 通信과 越線豫防을 위하여 無線測位局 運營을 강화하고, 東中國海 및 大和堆 등 遠距離 출어선의 短波帶(4~8MHZ)無電機를 設置 활용케 하여 通信疏通難 解消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漁船通信士의 資質向上 敎育과 漁船通信機 無料修理 奉仕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漁民所得 增大에 기여할 것이며, 漁業無線局 施設補強 事業으로 國庫補助 549백만원을 투자하여 襄瑟浦 漁業無線局的 無線測位施設을 最新裝備로 代替, 測位能率을 높임으로써 操業漁船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其他 漁業無線局的 老朽通信裝備 24대를 교체할 것이다.

漁業通信網 擴大사업으로 1979년부터 5~10톤 未滿 漁船에만 투용자

지원하던 無電機設置費를 금년부터는 5톤未滿 漁船으로 전환하여 80척에 51백만원을 補助 80%, 용자 20%로 지원하고 있다.

#### 第 4 節 未受檢·未登錄 漁船 整備

1987년말 현재 檢査對象 漁船은 總 40,298척으로 이중 檢査를 받지 아니한 漁船이 6,170척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未受檢 漁船發生原因은 沈沒, 解體, 破損, 老朽 등으로 使用할 수 없는 경우와 所有者 所在가 不明하거나 落島, 僻地 등의 漁船所有者가 檢査를 忌避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未受檢 漁船은 각종 設備點檢 未備로 安全航行에 支障을 招來하고 海難事故 發生 憂慮가 있어 沈沒, 破損 등으로 實體가 없는 漁船의 登錄 抹消와 未受檢 漁船에 대한 點檢促求, 出航禁止, 免稅油類 供給中止, 漁獲物 委販禁止, 各種 政府支援 差等實施 및 未受檢 漁船 發生豫防을 위한 對漁民 弘報, 啓導 強化로 이들 未受檢 漁船이 조속히 整備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實體가 없거나 運航될 수 없는 漁船에 대한 整備를 위하여 船舶國籍證書 檢認制度를 定着시킬 계획이다.

## 第 4 章 水產技術 開發과 普及

### 第 1 節 水產振興院의 活性化

#### 1. 研究園地 造成

1987년 移越 施工中인 水產振興院 本館 및 研究棟, 厚生棟 및 機械室, 漁具漁法棟 공사는 1988. 2월에 再着工하여 8월에 竣工하고, 水產振興院 守衛室, 汚廢水處理施設 및 水產技術訓練所 本館·生活館 建築工事(4천 ㎡)의 實施設計를 3월까지 완성하고, 6월에 着工하여 1989. 7월에 竣工할 예정이며, 水產振興院은 1988. 11월에 이전할 계획이다.

#### 2. 機構 및 機能 補強

1987. 4. 3 및 8. 14 水產振興院 職制를 2部 10課(科) 2研究室 12研究所 829명으로 개정한데 이어 1988년에는 증설된 水產種苗培養場 및 水產研究園地造成에 따른 國有財産 안전관리 運營要員을 증원할 계획이다.

### 3. 試驗機器 및 裝備 補強

日本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에 의한 機器導入 殘餘分 154점을 購買完了(총672점, 7억엔)할 계획이며, 南濟州種苗培養場 등 신설 기관용 및 老朽裝備代替를 위한 試驗機器 및 裝備 224종 474점을 一般會計豫算으로 購入할 계획이다.

### 4. 研究員 資質向上

2000년대를 향한 尖端 水産技術 開發을 위하여 遺傳工學, 海洋遠隔探查 등을 內實化하고, 研究員의 國內·外 研修, 專門家 交流, 海外研究所와의 情報交流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88년에는 日本, 프랑스, 美國 등에 20명의 研修生을 파견하고 專門家를 교류하는 한편 國內研修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第 20次 韓·日 農林水産技術協力委員會 合意事項 및 韓·佛 姉妹結緣事業을 통하여 日本에서는 魚類種苗生産 및 養殖技術開發, 海漁況豫測 및 新漁具漁法開發, 水産加工分野를, 프랑스에서는 海洋資料處理 및 育種에 대한 研修를 실시할 계획이다.

### 5. 產學協同

1988. 2 中央水産產學協同審議會 定期會議을 개최하여 임기 만료된 6개분야 9명 및 신규 4명의 兼職研究官을 任用하였고 (겸직연구관 총 16

명) 中央審議會 專門委員 (1개분야 1명)과 各道 審議會 委囑職委員(5개도 6명)을 委囑하였다.

各道 審議會에서 접수된 11개 補助研究課題中 “참굴의 3倍體 生産에 관한 育種學的 研究” 의 2개 課題를 선정하여 연구를 進行하고 있으며 1988년도 水産系 專門大學生 現場實習 産業體로 5개소를 指定하여 2개 專門大學生 16명을 現場實習할 수 있도록 하였다.

〈表 122〉 產學協同補助研究課題

단위: 천원

課 題 名	所要豫算	研究責任者
3 個 課 題	20,000	
참굴의 3倍體 生産에 관한 育種學的 研究	8,000	釜山水大 유명숙
소라의 種苗量産에 관한 研究	6,000	濟州大 노 섬
複合養殖의 實效性에 관한 研究 (水協中央會 委託事業)	6,000	統營水專大 조창환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第 2 節 所得과 直結되는 技術開發

### 1. 養殖技術 開發試驗

#### 가. 有用 貝藻類 增産試驗

서해안 백합의 漁場回復試驗, 寄生蟲感染率 및 漁場 環境調査와 濟州

연안의 소라 漁場環境, 棲息密度 및 먹이 生物量 調査, 標識放流試驗, 寄生蟲 感染率 調査와 노랑가리비의 養成 및 人工採苗 試驗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의 갯병 진단을 위한 기초시험을 실시하고 漁場別 김品種 分布調査 및 適品種 양식시험을 계속 중이고, 미역의 바늘구멍病에 대한 原因生物의 特性調査와 驅除試驗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優良種 選拔에 의한 遺傳育種學的 研究基盤 확립을 위하여 굴, 전복, 전주조개의 優良形質 특성조사 및 3倍體 生産試驗과 김의 優良品種 選拔, 色彩 變異形의 遺傳子 분석 및 繼代培養에 의한 유전형질의 특성을 비교 조사중이며, 다시마의 特性 分類와 交雜試驗에 착수하였다.

#### 나. 淺海 有用生物 增産試驗

貝藻類 이외의 淺海 有用生物 養殖技術 개발을 위하여 우렁छ이의 斃死原因 규명을 위한 환경 조건별, 양식방법별, 水層別 成長度와 斃死率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서해안 輸出品種인 갯지렁이의 分布相, 양식시설 효과, 어장 환경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 다. 種苗生産 및 魚類養殖技術 開發 試驗

水産種苗의 大量生産을 통한 沿岸資源 增強과 養殖用 種苗의 안정적 供給基盤 造成을 위하여 넙치, 돔류, 가자미류, 조피볼락, 대하, 브리새우, 전복, 우렁छ이, 꽃게, 보라성게 등의 有用 水産種苗 2,000만마리를 生産하는 한편, 범가자미, 소라, 송어, 닥자볼락, 북쪽말뚝성게 등 13종의 새 魚種을 중심으로 하여 人工種苗 生産技術 開發試驗을 실시할 계획이다.

主要 海産魚類 養殖場의 環境調査와 함께 방어 稚魚의 成長率과 生産

率제고를 위한 먹이馴致試驗을 실시할 것이며, 魚類養殖 技術開發을 위하여 漁上 가두리飼育試驗과 조피블락 養成試驗을 실시하는 한편, 海産魚類의 陸上 養殖技術開發을 위하여 陸上飼育에 대한 基礎研究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방어용 모이스트펠릿(moist pellet)의 蛋白質인 北洋魚粉 대신에 정어리魚粉 및 植物性 蛋白質(大豆粕)으로의 代替效果를 試驗하여 海産魚 配合飼料의 生産原價 節減效果를 究明할 계획이며, 자주복, 농어, 가자미류에 대한 基礎細胞遺傳學的 및 生化學的 研究를 실시하고, 高級魚種인 넙치, 참돔의 3倍體 生産에 대한 豫備試驗을 실시 할 계획이다.

#### 라. 沿岸漁場 基本調査

1986~1987년까지 조사한 沿岸漁業 實態와 전국 1,528개 漁村契의 附帶施設, 水産觀光施設 등 基礎施設 實態를 종합하여 각 市·道別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 마. 養殖漁場의 立體的 利用 研究

養殖漁場의 表層과 底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單位面積當 生産量을 높이고 養殖生物間의 조화에 의한 양식장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西海北方 5島嶼 연안의 生物相 및 環境調査에 착수하였다.

#### 바. 淡水魚 試驗研究

화천호, 안동호 등의 水産資源保全地域 環境 및 資源調査를 실시하여

內水面 開發의 資料를 수집하고, 魚類育種 基礎試驗으로 잉어 3倍體魚 生産試驗 등을 실시하며, 메기 및 쏘가리 養殖試驗, 틸라피아 優良種 改良試驗, 優良種苗 生産普及, 魚病研究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어 資源造成을 위하여 연어 稚魚를 생산 방류하고, 신천어, 열목어, 무지개 송어의 養殖技術試驗을 실시하고 있다.

## 2. 漁業技術 開發試驗

### 가. 音響漁法 研究

先進 水産國에서는 實用化 단계에 이르고 있는 音響漁法에 대한 研究가 絶실히 요구되어 國立水産振興院에서는 1983년부터 多獲性 魚類의 水中發生音을 수집하는 한편, 音響에 대한 集魚反應 및 驅魚反應 試驗으로 基礎資料를 축적하여 왔으며, 1987년부터는 실제 漁業에 音響을 이용시의 漁獲性能變化를 究明하기 위하여 驅魚音을 이용한 멸치 流刺網漁業을 실시하고 魚類 學習用 音響부이(Bouy)를 設計 제작하여 魚類蕃養場에서 性能試驗을 실시한 바 있다.

1988년에는 驅魚音을 이용한 멸치 流刺網漁業의 漁獲性能變化試驗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오징어채낚기漁業에 있어 조업시 발생하는 水中音을 蒐集 분석하여 音響이 오징어 漁獲性能에 미치는 영향을 究明할 것이다.

### 나. 水中定置網 漁具漁法 開發試驗

기존 定置網은 漁具를 敷設할 수 있는 水深이 한정되어 있고 對象魚

種도 단조로우며 底層으로부터 表層까지 敷設되어 있어 颱風來襲時 風波에 의한 漁具 破損事故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水深에 관계없이 漁具를 任意의 水層에 敷設할 수 있고 漁場을 임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水中定置網을 개발할 목적으로 1988년에 模型漁具를 設計, 製作하여 水槽試驗을 통한 適正漁具構造 및 敷設方法, 揚網方法과 颱風來襲時 漁具 破損을 방지하기 위한 漁具 沈下方法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 다. 帆布를 利用한 트롤용 展開裝置 開發試驗

現在 트롤漁業에 사용되고 있는 鐵材展開板은 自體重量이 過多(大型船의 경우 展開板 1組當 空氣中 重量은 약 4~5톤) 하여 취급이 불편하고 安全事故의 원인이 되며, 製作費가 過多(大型船의 경우 展開板 1組當 약 2~3천만원)하게 소요되고 있어 鐵材 대신 나이론 CANVAS 에다 상부와 하부에 鐵 Pipe로 된 가름대를 부착하고 상부가름대에는 浮子를, 하부가름대에는 沈子를 달아 상·하로 전개되도록 합과 동시에 각 가름대로 부터 角度調整用 목줄을 연결하여 曳網中 流體抵抗에 의해 좌·우로 전개되도록 한 帆布展開裝置를 考案, 模型試驗 및 海上基礎試驗을 실시한 결과, 開發 可能性이 究明됨에 따라 1988년에는 1,100톤급, 2,600마력용 實物 展開裝置를 製作, 海上試驗을 통하여 展開性能, 適正曳行角度, 適正浮力과 沈力, 投·揚網 方法 등 실용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라. 選擇的 漁法研究

漁獲 對象魚種만 선택적으로 어획하거나 일정크기 이상의 對象物만 선

택적으로 어획하므로써 對象資源을 보호할 수 있는 選擇的 漁法을 개발하기 위하여 依次적으로 對象漁業을 달리하여 연구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1988년에는 鱈 旋刺網漁業을 대상으로 網目크기와 成形率을 달리한 漁具 2종을 設計, 製作하여 民間船으로 現地 海上試驗을 실시, 漁具別로 채포된 漁獲物의 種類와 魚種別 體長, 體重 등 生態를 측정하고 羅網部位를 조사하여 對象魚種 및 일정크기 이상의 對象物만 선택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適正網目과 適正成形率을 究明할 계획이다.

#### 마. 끝납시 漁具漁法 改良試驗

우리나라 南海岸과 濟州道 沿岸에서 삼치, 방어 등 高級魚種을 主 對象으로 조업하고 있는 끝납시(曳繩釣)漁業은 낚시의 曳引水層이 거의 表層에 한정되어 있고, 魚群이 다소 深層을 회유할 경우 어획이 불가능하며, 操業方法도 순수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1988년에는 낚시의 曳引水層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潛水板을 제작, 洞流水槽에서 潛水板 形態別, 목줄 角度別, 曳引 速度別로 曳引 水層과 流體抵抗을 究明한 다음 現地 適應試驗을 실시, 潛水板의 潛水 및 漁獲性能을 究明할 예정이며, 1989년에는 揚繩方法 自動化 試驗을 실시할 계획이다.

### 3. 水産物 利用加工試驗

#### 가. 加工技術 開發試驗

多獲性 및 低利用 水産物인 정어리, 南極새우(크릴)에 대한 製品加工

과 産業化를 위한 中間工業化試驗을 비롯하여 鹽藏미역의 貯藏性 試驗, 主要 水産物의 脂肪酸 組成分析 試驗을 실시중에 있다.

정어리에 대해서는 기히 개발한 改良煉肉을 食品素材로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製品加工試驗을, 정어리 어간장 製造에 있어서는 1987년의 基礎研究結果를 토대로 醱酵槽를 사용한 速成醱酵液化에 대한 中間工業化試驗을 실시중에 있다.

南極새우(크릴)의 食糧化를 위하여는 1987년에 精肉採取技術을 확립한데 이어 採取한 살(肉)의 用途開發과 實用性試驗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鹽藏미역에 대하여는 適正鹽濃度와 最適 保藏溫度 究明을 위한 品質變化試驗을 실시중에 있으며, 수산물의 營養特性과 관련하여 정어리 등 主要 魚種과 그 加工品에 대한 有效脂肪酸(EPA, DHA)의 추이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 나. 魚貝類 衛生管理 改善試驗

冷凍貝類 對美輸出에 따른 韓美貝類衛生協定の 이행을 위하여 輸出用 貝類生産指定海域 4개소 20,614ha에 대한 細菌 및 殺蟲劑 汚染調査와 貝類冷凍工場 加工用水 및 3槽式 改良便所 排出水의 細菌汚染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貝類養殖場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1986년과 1987년에 있어서 降雨에 의한 水質變動에 관한 연구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公衆保健上의 安全性 問題와 관련하여 貝類毒素試驗과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菌 汚染調査도 추진할 것이며, 정어리의 速成醱酵과 관련하여 醱酵에 관여하는 微生物相과 그 이용을 위한 연구도 실시중에 있다.

## 第 3 節 基礎調査事業

### 1. 海洋環境調査

沿近海 海洋環境의 합리적 利用 管理 및 保全을 위한 과학적인 基礎 調査로서, 韓國 近海漁場의 海洋變動調査(海洋物理, 化學, 生物學的의 調査)을 東·西·南海의 22개 定線 175개 定點에서 年 6회 실시하며, 특히 人工衛星映像受信裝備로 NOAA人工衛星의 海面畫像을 수신하고 周邊海域에서 操業하고 있는 漁船으로부터 現場 表面水溫을 통보받아 海況을 파악하는 海洋遠隔探査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한편, 81개 沿岸定地觀測所에서 매일 海洋物理 및 氣象學的의 調査를 실시한다. 아울러 20개場所의 25개소에서 年 4회 人工魚礁效果調査를 실시하며, 六角魚礁와 組立式魚礁를 개발하여 慶南의 1개장소에 시험 시설한다. 한편, 南海 中部海域 40개점에서는 底質組成 및 變動狀況을 究明코져 年 2회 底質調査를 실시하고, 國內·外的 海洋科學資料 및 情報蒐集, 處理分析, 保管, 交換 및 配布를 위한 韓國海洋資料센터(KODC)를 운영한다.

沿岸漁場 環境汚染調査를 위해서는 全國 주요 臨海工團 및 養殖場 周邊水域에 設置된 247개 調査點에서 化學的 酸素要求量, 溶存酸素 및 營養塩類 등 理化學的 水質指標成分에 대하여 年 6회, 海水, 水産物中の 重金屬含量調査 年 2회, 底質中の 重金屬含量調査 年 1회, 水産物中の 農藥 및 PCB含量調査를 年 2회 실시하여 全國 沿岸水質의 變化樣狀을

과악하는 한편, 鎮海灣을 비롯한 全國 주요 養殖漁場에 대해서 漁場淨化 効果에 대한 基礎調査를 실시한다.

또한, 赤潮에 의한 養殖生物의 피해를 軽減시키기 위하여 남·서해안에 赤潮豫察을 년 16회 이상 실시하고, 底質改良에 의한 赤潮防除技術 開發試驗, 그리고 海水 및 貝類中の 有毒性 플랑크톤의 出現種과 出現量을 조사하여 沿岸汚染指標生物로 중요한 種에 대해서는 室內 人工培養實驗에 의해 그들의 生理生態의 特性을 究明한다.

全國 水産資源保全地域(海面 10개소, 內水面 19개소)에 설정된 169개 調査點에 대하여 化學的 酸素要求量을 비롯한 理化學的 水質指標成分을 년 6회(內水面은 4회), 海水 및 水産物中の 重金屬 含量調査 년 2회, 魚貝藻類의 生産動向 및 出現種 調査를 년 2회 실시하여 水産資源保全地域의 水質環境變化를 과악하여 水域保全管理의 基礎資料로 활용할 것이다.

## 2. 漁業資源調査

沿近海 漁業資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沿近海 主要 漁業(13개어업) 對象資源에 대한 漁獲量 變動調査, 生物學的 調査 및 魚卵·稚魚調査를 실시하여 資源의 動態 및 生態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고래資源의 評價 및 管理를 위하여 고래資源 目視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魚群의 移動狀況과 漁況의 전망을 분석하여 주간 및 월간 漁況豫測을 실시하고, 오징어 漁業에 대하여는 漁獲試驗에 의한 漁場調査를 실시하여 漁況豫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遠洋漁業資源의 지속적 이용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트롤·새우트롤·다랭이延繩 및 旋網·오징어流刺網 및 채낚기·遠洋 공지棒受網·상어流

刺網 등 9개 주요어업을 대상으로 漁獲實績資料를 수집 분석하여 資源動態를 파악하고, 명태·대구·다랭이類·오징어類 등 14개 어종에 대한 生物學的 調査와 오징어·다랭이類 등 4개 어종의 標識放流를 실시하여 어종별 資源豊度 變動把握 및 資源狀態를 評價하며, 아울러 電氣泳動法에 의한 주요어종의 系統群 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및 평가된 결과는 大西양다랭이保存委員會 및 韓·美漁業專家會議 등 16개 國際漁業會議의 遠洋漁業 政策資料로서 제공할 것이다.

한편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試驗調査船 釜山 851號로 60일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사관이 합동으로 北西太平洋漁業 對象生物의 分布·移動과 海洋環境과의 關係를 조사하고, 현지 어선의 操業動態를 파악, 漁業情報資料를 이선에 제공하여 漁獲增産에 기여하며, 아울러 韓·美合同調査計劃에 의한 연어 및 海上 哺乳動物의 混獲狀態와 環境關係를 구명하여 公海上의 國際的 漁業紛爭에 대처할 기초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第 4 節 漁村指導事業

### 1. 技術指導 弘報

#### 가. 增殖殖 및 第1種 共同漁場 指導

漁村指導士 250명이 전국 1,528개 漁村契를 대상으로 김, 굴 등 多獲性 養殖品種은 適期採苗, 優良種苗生産, 適正施設 등 철저한 漁場管理指

導로 안정적 생산을 기하고, 魚類養殖, 전복養殖 등 高所得 養殖品種은 優良種苗 確保, 適正飼育·養成管理 및 疾病豫防對策 등 養殖技術指導와 第1種 共同漁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영어의 과학화로 生産 및 所得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기 지도하며, 養殖品種別 중심 指導 時期 및 被害發生 豫想時는 현지 巡廻教育 강화와 生産團地別 指導員 기동배치로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 나. 示範漁場 運營

水産技術이 이미 개발되었어도 그 普及率이 저조하거나 地域的 特性에 따라 技術開發을 통하여 漁民所得事業으로 定着 普及이 필요한 사업은 地域 特性에 맞는 品種의 示範漁場을 설치 운영하여 漁民教育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表 123)

示 範 漁 場 運 營 計 劃

단위: 개소

계	'87 계속 사업								'88 신규 사업					
	소계	굴	모자반	툰	김	전복	어류양식	우렁쉥이	소계	김	전복	외조개	어류양식	우렁쉥이
33	16	1	1	1	1	10	1	1	17	7	5	3	1	1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 다. 漁場의 效率的 管理啓導

海況變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病害나 災害로부터 被害를 극소화하고 地域別 漁業適期에 맞는 技術指導對策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生産에 기여하기 위하여 主要 品種別 養殖團地를 대상으로 漁場豫察을 강화하고 地域別 漁場豫察評價會議를 有關機關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主産團地 漁場豫察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乘船豫察로 漁場環境 및 作況을 調査·分析한 資料와 전국 주요 港浦口 또는 沿岸 39개 地點을 대상으로 매일 調査·分析한 漁場環境資料를 漁場管理 및 技術指導에 활용 할 것이다.

#### 라. 赤潮 및 颱風 등 災害豫防 指導

赤潮 發生이 예상되는 5~10월중 赤潮가 심습적으로 발생하거나 被害가 예상되는 京畿, 全南, 慶南地域의 27개灣 47개지역에 赤潮豫察班을 편성 운영하여 사전 예찰을 통한 養殖物의 被害輕減을 위한 弘報指導를 강화하며, 태풍, 해일 등 災害에 의한 被害 最小化를 위해 사전 弘報資料 배포와 災害豫防督勵班을 編成 運營할 계획이다.

#### 마. 水産技術 弘報

漁村指導의 效率性 제고를 위해 高所得 養殖品種에 대한 水産技術誌와 리후렛을 發刊 配付하고 海·漁況 豫報 및 適期 增養殖 豫報·速報를 통하여 水産情報를 신속히 전달하며, 비디오와 슬라이드 製作·活用 및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적극 활용, 水産技術弘報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漁民教育 및 漁民後繼者 指導

營漁技術 向上 및 意識改革을 통한 健全漁村 育成 目標아래 國立水産振興院 산하의 20개 漁村指導所에서 水協과 합동으로 漁民 75천여명에 게 水産施策과 漁業技術에 대한 集體教育을 실시하고, 아울러 굴, 피조개, 김, 미역, 우렁챙이 및 어류축양 등 主要 養殖品種에 대하여는 地域別 漁業循期에 맞추어 採苗, 種苗培養, 漁場管理 등에 관하여 25천여명을 대상으로 現地巡廻 技術教育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漁村指導所長을 대상으로 敎官教育을 실시하고, 생동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視聽覺敎材(VTR 등)를 제작, 활용토록 하고, 특별기술지원을 위해 特技指導士를 指命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科學營漁를 위한 旗手養成으로 技術波及의 據點 確保 및 漁村指導者 育成을 위해 1988년도에 선정된 후계자 400명을 포함, 총 4,147명의 漁民後繼者에게 專擔指導士를 지정 배치하여 매월 1~2회이상 현지 사업장을 巡廻訪問하여 水産施策, 營漁設計, 漁場管理, 新技術普及 및 營漁日誌記錄要領 등을 지도하고, 또한 指導所別로 년 2회 이상 漁民後繼者 指導評價會議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對策 討議, 優秀事例 發表, 相互 情報交換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전국 63개 地域別 自生組織 協議會를 대상으로 分期別 懇談會를 개최하고 營漁事例 發表, 技術敎材 및 刊行物 配付, 先進地 見學, 親善 體育大會 支援 등으로 漁民後繼者 自生組織 活動을 장려할 계획이다.

### 3. 漁村指導機能 強化

#### 가. 指導基盤造成

漁村指導活動의 機動力 향상과 과학적인 技術指導를 위하여 車輛 3대를 포함하여 指導裝備 6종 37대를 보강하고, 198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OECF借款事業의 현미경 등 4종 200대의 도입은 완료하게 된다.

#### 나. 漁村指導公務員 指導能力 向上

어민에 대한 技術指導普及의 專門化를 위하여 種苗培養場 및 內水面研究所 등에서 漁村指導公務員 30명을 1개월동안 진복 및 우렁쟁이, 魚類養殖 등에 대해 專門技術教育을 실시하여 새로운 知識과 技術情報를 신속히 보급토록 할 것이다.

#### 다. 自願指導者 運營

漁村地域社會內 德望과 營漁經驗이 풍부한 有力人士를 漁村指導事業에 참여토록 하기위해 沿岸 市·郡單位로 1명 이상의 自願指導者를 確保, 運營키로 하고, 1987년에 우선 36명을 위촉한데 이어 1988년에도 44명을 위촉하여 총 80명의 自願指導者를 確保 運營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漁村指導事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第 5 節 漁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國立水產技術訓練所에서는 수산공직자에게 精神教育(5개반, 471명)과 基本教育(6개반, 320명) 및 專門教育(4개반, 22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총무처의 “公務員 教育訓練 追加指針”에 따라 精神教育課程을 폐지(新規採用者 精神教育은 職務教育課程에 統合 실시하고 여타 職務教育課程에는 精神教科目을 30%내외로 편성)하고 잉여예산 및 인력으로 직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水產中堅實務者班 (1개반 60명)을 증설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基本教育課程에 水產 中堅管理者班과, 專門教育課程에 水產物 流通加工班, 海面魚類養殖班 및 漁業秩序管理班을 신설 운영하며 政策開發班에서는 주요 수산시책사업인 “漁業被害 補償制度의 改善方案”을 주제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발굴 토의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漁民後繼者 育成을 위하여 1988년 漁民後繼者 410명('87 未履修者 10명 포함)에 대한 技術教育과 1981~1987까지의 漁民後繼者 400명에 대한 經營教育 및 轉役后 漁業從事를 희망하는 現役兵 270명에게 水產技術教育을 실시할 계획이며, 不法漁業根絶을 위하여 漁村契長 40명에 대한 漁業秩序管理教育과 11,500명의 海技士 및 一般船員에게 素養教育을 실시할 계획이다.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海技士課程 200명과 普通船員課程 200명 등 우리나라 訓練生 400명과 政府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한 外國人 訓練生 28명을 養成 배출할 계획이며, 乘船職員의 資質 向上과 漁船의 安全을 위해 2,000명에게 安全教育을 실시할 계획이다.

## 第 5 章 遠洋漁場の 安定的 確保

### 第 1 節 漁業協力

#### 1. 沿岸國과의 協力

美國水域 漁獲쿼타 確保와 共同事業物量 확대를 위하여 官民 交渉團을 2회, 프랑스·濠洲·투발루 등과의 附屬約定更新 및 아르헨티나·모잠비크 등 南美와 아프리카 沿岸國과의 漁業協력을 위하여 交渉團을 각 1회 과건할 계획이며 兩國 漁業協力事項 協議 등을 위하여 南美 및 아프리카 沿岸國의 水産責任者를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開發途上 沿岸國과의 技術支援事業으로 수리남 등 16개국으로부터 28명의 研修生을 초청하여 漁撈技術과 漁船機關에 대하여 훈련시키고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水産專門家를 과건하여 水産技術을 지도할 예정이다.

漁業協力 增進을 위하여 兩國間會議를 12회 개최하고 國際捕鯨委員會 등 7개 國際水産機構會議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 2. 漁獲쿼타 確保

### 가. 美國

우리나라는 美國의 200海里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과 北太平洋 公海에서 34척의 大型트롤漁船이 조업하여 遠洋漁業 總生産量의 약 57%를 생산하고 있다. 美國水域에서의 操業은 1977년 美國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後 韓·美漁業協定이 체결되어 쿼타操業으로 전환한 이래 1984년까지 漁獲쿼타는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그 이후 美國의 水産資源 自國化政策에 따라 1987년에는 我國 主操業 海域인 北太平洋水産委員會 管轄水域(베링海, 알류우션, 알라스카灣)의 境遇, 외국에 대한 쿼타割當總量(TALFF)을 133천톤으로 감축하였고, 1988년에는 外國에 대한 直接쿼타割當을 유보시켰다.

따라서 直接쿼타에 의존하던 北洋漁業은 直接쿼타 減少분에 대비코자 共同漁業事業 및 公海操業을 活性化시켜 나가고 있으며 1988년도에는 700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共同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同 事業에 의한 生産物量을 內國物品으로 간주하여 반입되던 것이 1987. 5. 1부터는 關稅를 부과하되, 同 事業漁獲物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전체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명태, 가자미에 대하여는 2%, 기타 어류에 대하여는 10%의 割當關稅를 적용하였으며, 1988년까지도 위의 割當關稅를 적용할 계획이다.

北洋漁場의 지속적 確保問題에 있어서 현재는 美國이 操業國 및 美國內 業界間 合意에 의거 올림픽방식(Olympic System)으로 共同事業을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同 事業物量도 國別쿼타化(立法豫告, 1986. 8)

를 통한 규제를 강화할 추세에 있어 漁獲 및 加工技術 發展度에 따라 共同事業物量도 美國의 自國 漁民만이 이용토록 단계적인 外國漁船 排除 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同 事業物量 先占을 위한 操業國들간의 競争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國內 명대 공급의 源泉인 北洋漁場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合作投資事業의 확대와 對美 漁業協力 強化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등을 並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韓·美 民間漁業協議會를 정례화하고 美國 漁業保存管理法의 준수지도와 美國 인근수역 및 北太平洋 公海의 資源調査 協力도 계속 수행하며, 有力人士의 訪韓 招請과 官·民交涉團의 適期 派遣으로 水産外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操業海域은 현재의 알라스카灣 및 베링海域에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海域까지 확대, 直接쿼타 및 共同事業을

(表 124)

직접쿼타 및 共同漁業實績

단위: %

	직 점 쿼 타				공 동 어 업	
	쿼타량	소진량	소진율(%)	척수	실 적	척수
'83	324,690	272,568	83.9	28	57,323	15
'84	329,757	268,432	81.4	27	98,166	22
'85	250,219	221,294	88.4	27	176,767	28
'86	116,169	98,596	84.9	28	375,570	30
'87	32,400	3,182	9.8	27	447,840	31
	(2,500)	(1,415)	(56.6)	(1)	(2,346)	(1)
'88. 6	1,200			1	294,737	31
	(1,200)			(1)		

자료: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註: 1) 1977~1982년 수치는 1986년도 연차보고서 참조

2) 1987년 이후 ( )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수역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國際 水産機構 및 美國의 對外國 水産政策에 협조하고 韓·美間의 漁業協力を 바탕으로 互惠平等的의 立場에서 共同利益이 이루어 지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다.

### 나. 뉴질랜드

1977. 3 美·蘇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로 일부 트롤漁船이 뉴질랜드 近海로 이동 조업하였으나, 1877년 뉴질랜드도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함에 따라 1978. 3월 한·뉴漁業協定을 체결하고 쿼타操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 政府는 自國 漁民保護 및 漁業資源管理 側面을 고려하여 自國民에 대한 쿼타는 확대하고 對外國 쿼타割當을 점차 줄여 나가는 동시에 쿼타配定도 漁獲 不良水域으로 集中 配定하여 쿼타 소진

(表 125) 年度別 뉴질랜드 쿼타 消費實績

단위 : %

	業種別	쿼타量	消費量	消費率(%)	出漁隻數
'83/'84漁期	트 물	20,985	12,930	62	6
	오징어채낚기	6척	1,985	-	6
'84/'85 "	트 물	20,540	14,886	72	6
	오징어채낚기	6척	1,066	-	6
'85/'86 "	트 물	8,390	6,103	73	5
	오징어채낚기	1,500	1,092	73	6
'86/'87 "	트 물	8,662	4,060	47	4
	오징어채낚기	1,500	1,408	94	6
'87/'88 "	트 물	5,781	2,818	49	4
	오징어채낚기	1,325	1,324	100	3

자료 :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註 : 1) '81/'82, '82/'83漁期 쿼타 消費實績은 1987년도 연차보고서 참조

2) '87/'88漁期 消費量 및 消費率은 1988. 7. 31. 現在 實績임

실적이 부진하였다. '87/'88漁期('87. 10. 1~'88. 9. 30)에는 5,781톤의 트롤 쿼타와 1,325톤의 오징어채낚기 쿼타를 할당받아 7척의 漁船이 조업하고 있으며, '88/'89漁期('88. 10. 1~'89. 9. 30)에는 漁場성이 좋은水域의 쿼타를 增量 要請할 계획이다. 앞으로 同國의 水産政策 方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兩國間의 漁業協力 強化와 合作投資事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다. 濠洲

1983. 11 韓·濠漁業協定 締結 이후 '83/'84漁期에 최초로 漁船 1척이 出漁 하였고 '84/'85漁期에는 8척이 출어하여 2,300톤의 漁獲實績을 올렸으나, '85/'86漁期부터는 出漁船들이 南西大西洋 오징어 漁場으로 진출함에 따라 出漁隻數가 감소되어 '87/'88漁期에는 3척이, 319톤을 어획하였다. '88/'89漁期에도 韓·濠漁業協定の 원활한 추진과 入漁交渉을 계속하여 지속적 漁場確保를 추진할 계획이다.

## 第 2 節 新漁場 開發

### 1. 아르헨티나 漁業進出

南極大陸 및 파타고니아漁場 進출을 위하여 民間企業 主導로 政府支援資金 26억원을 포함, 102억원 規模의 漁業進出事業을 추진중에 있다. 事

業內容은 漁業移住 122世帯, 住宅 80棟, 冷凍工場 1棟, 船舶 3척을 구입 운영하는 것으로, 198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漁業移住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말까지 船員 34명과 그 家族 25世帯 65명이 이미 移住하여 아르헨티나 슈브트주 마드린시에 定着한데 이어 1988년에는 船員 57명을 추가 이주시키고 그 家族이 입주할 住宅 40棟을 착공하여 이 중 12棟은 早期 完工,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1차로 구입 운영중에 있는 2,600톤급 트롤어선 1척이 1987년도에 오징어와 민대구 등 5,051톤을 漁獲한 바 있으며, 1988년에는 400톤급 채낚기 및 통발 겸업선 2척을 追加 購入하여 기존 선박과 船團操業토록 할 계획이며 冷凍工場도 着工하여 1989년에 完工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현안사항이었던 우리 船員 및 海技士 資格認定 問題는 外國人 船員 資格으로 乘船操業할 수 있도록 現地 勞組側과 合意됨으로써 移住船員 選拔및 移住에 障碍要因이 제거되었으며 住宅 및 冷凍工場 建設과 관련한 外國人 稅制關係法令이 조기에 公布發効되어 稅制輕減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政府側과 계속 교섭해 나갈 계획이다.

## 2. 新漁場 確保

海外漁場の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漁業協力에 의한 新漁場 開發과 公海漁場 및 新漁法에 의한 漁場 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도 漁業協力에 의한 漁場開發은 갠베르데 참치漁場과 스리랑카·몰디브 漁場 및 인도네시아 漁場 등 3개 어장으로서, 갠베르데漁場에는 350톤급 참치독항선 3척을 投入, 2次 試驗操業(각 3개월)結果 195톤을 생산하였으며, 1988년에도 계속 入漁를 추진중에 있고, 스리랑카·몰디브漁場에는 1987.

1~3월까지 350톤급 참치독항신 2척을 投入, 試驗操業(142톤 생산)에 성공하여 1987. 12월에 추가로 1척을 투입, 조업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漁場에는 트롤漁船 9척을 投入, 조업중에 있다.

한편 公海漁場 및 新漁法에 의한 漁場開發은 캐나다 200海里 以遠 公海上의 赤魚(REDFISH) 漁場의 開發과 大西洋 南部 조지아 公海漁場 開發을 위하여 2,000톤급 트롤漁船을 出漁시킬 계획이며, 新漁法에 의한 漁場開發은 南部印度洋 公海漁場에서 350톤급 참치流刺網漁船 2척을 投入, 試驗操業한 結果 成功한 바 있어 1988년부터 擴大 進出할 계획이며, 또한 1985년이후 輸出産業으로 각광받고 있는 먹장어 魚皮製品 생산을 위하여 뉴질랜드水域(2개사, 3척)과 臺灣近海 公海漁場에 (1개사, 3척) 먹장어 통발漁船 6척을 진출시켜 試驗操業中에 있으며, 試驗操業 結果에 따라 擴大進出 與否를 결정할 계획이다.

南水洋漁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民間業體 主導에 의한 商業的 事業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에는 3차의 試驗操業經驗이 있는 東邦遠洋開發公司에서 2척의 漁船이 船團을 편성하여 出漁케 되었으며 安全操業과 大量漁獲體制를 構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第 3 節 遠洋漁業 育成 指導

#### 1. 國際競爭力 強化

國際漁業環境은 각종 國際水産機構의 資源管理 강화와 각 沿岸國의 漁業資源 自國化政策 등 어려운 與件下에서 國際漁業競爭의 深化에 대처하

기 위하여 기존어장의 안정적인 確保와 新漁場을 開發하고 漁船員의 處遇 및 作業環境의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老朽漁船의 代替事業을 적극 추진하며, 출자자금 54,250백만원을 직기에 지원하는 등 원양어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여 나아갈 것이다.

## 2. 勞使協調와 安全操業

下級船員들의 月 最低固定給을 244천원에서 260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歩合金(生産手當) 上向 調整과 賞與金の 支給 擴大는 물론 船員子女學費補助 支援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賃金の 適期 支給과 歩合金의 精算을 철저히 하고 船內居住 및 衛生施設의 改善, 慰樂 및 休憩施設의 확대와 船員給食의 質的 向上으로 船員處遇 및 勤勞環境을 개선함으로써 厚生福祉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船員과의 對話機會를 확대하여 船員의 隘路와 苦衷을 해결해 주고 船員家族을 慰勞 激勵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勞使協議會 運營을 活性化 하여 船員들의 勤勞條件 改善과 勞使紛爭을 사전 예방하고 事故發生時에는 船員들의 災害補償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勞使間 協調 및 紐帶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遠洋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해서는 船員教育의 內實化를 기하고 船舶修理檢査 및 安全点檢의 철저와 船舶 自體安全에 留意토록 할 것이며 事故收拾의 迅速 對處, 事故業體에 대한 行政處分 및 出漁資金 支援排除 등 制裁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第 6 章 水産物 需給安定과 食糧化

### 第 1 節 水産物 流通 改善

#### 1. 流通施設의 擴大

水産物の 신속한 販賣와 위생적인 處理 및 系統出荷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7백만원으로 委販場 7,260㎡를 設置하고, 綜合魚市場 1개소(사업비 1,110백만원)를 新設할 계획이다.

#### 2. 流通機能 強化

產地水協의 共同販賣 확대('87 : 1,770천톤→'88 : 2,005천톤)를 위하여 1988. 1. 1부터 全 水産物の 委販手數料를 組合別 委販規模에 따라 下向 調整(0.1~0.5%포인트)하여 漁民 受取價를 높이고, 漁民便設施의 확충과 魚代金 電算化 組合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委販裝備의 機械化를 촉진해 나감으로써 漁獲物의 신속한 처리와 對漁民 서비스 개선으로 市場 競爭力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水協 內陸地 系統出荷를 확대(139천톤)하고자 系統出荷 低利資金을 확대 支援(40억원)하고 系統出荷 缺損補填基金의 運用(158백만원)과 漁民 直出荷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 系統出荷 興件을 강화하고 大量 需要處의 확대 및 直賣場 運營 등을 통하여 直去來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養殖水産物の 產地去來制度 개선에 있어서는 김, 미역, 굴 외에 全品目的 委託手数料率을 0.5%포인트 인하토록 하고 김, 툇, 우무가사리 등 委託販弱品目에 대한 共同收集販賣事業을 확대 실시할 것이다. 김·미역 위주의 10개조합에 대하여는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漁村契에 還元토록 하여 漁村生産基盤事業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任意上場制 示範實施에 대비하여 養殖物 委託組合의 實態 調査와 問題點 및 補完對策의 講究 등 事前 準備를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漁獲物の 品質 向上과 去來秩序 確立을 위하여 委託從事者와 生産漁民에 대하여 水産物の 取扱管理 啓蒙 및 弘報를 강화하고 定量入箱의 정착을 위하여 差等委託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委·共販場 등에 대한 水産物の 流通環境淨화와 衛生管理를 강화하여 신선한 水産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건어물의 定量流通을 위하여 競賣前 標本抽出 檢量 實施 및 包裝紙 共同購買 供給 등을 추진하고 規格出荷先渡金 22억원을 지원하여 새우젓, 멸치젓, 굴, 건멸치 등의 標準去來單位 規格出荷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第 2 節 水産物 價格安定

### 1. 政府備蓄事業

主生産期에 大量出荷되는 수산물의 產地價格 下落을 방지하고 端境期에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農安基金 200억원을 투입, 간미역 3,600톤, 김 400톤(200만東), 마른오징어 600톤, (80만축) 마른멸치 600톤(20만포) 등 5,200톤을 收買 備蓄할 계획이다.

### 2. 價格支持事業(民間價格安定)

農安基金 996억원을 지원하여 水協 出荷調節事業으로 67,940톤, 冷凍保管 販賣事業으로 94,200톤, 통조림·煉製品 加工事業으로 49,250톤, 輸出用 原料收買事業으로 30,430톤 등 241,820톤을 收買할 계획이다.

魚種別로는 명태 55,500톤, 정어리 33,480톤, 귀치 18,950톤, 오징어 18,700톤, 고등어 16,200톤, 기타 갈치, 조기, 가자미, 삼치 등 98,990톤이다.

### 第 3 節 水産物の 食糧化

#### 1. 製品生産 増大

1986년도 1人 1日當 動物性 蛋白質 總 供給量은 30.88 g으로 이 중 水産物이 57.3%인 17.71 g을 공급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肉類供給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水産物이 動物性 蛋白質의 主 供給源이 되고 있음은 肉類에 비하여 核酸과 不飽和脂肪酸이 多量含有된 健康食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水産物은 國民 蛋白質의 주된 供給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食생활 慣習에 따라 대부분이 鮮魚原型狀態의 副食으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國民所得 向上과 核家族化 등 高度 産業社會 진입에 따른 食생활 패턴 변화로 수산물 消費形態도 종래의 副食用 鮮魚消費에서 卽席·便利·營養爲主의 加工製品 需要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優良 加工製品을 消費者에게 大量 供給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는 加工施設 擴充에 1,360백만원을 지원하고, 煉製品, 통조림, 冷凍品, 調味加工品 등 加工業體에 대한 運營資金 8,45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加工品 增設施策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88년에는 750천톤 생산을 目標로 水産物 食糧化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國民嗜好에 맞는 다양한 製品을 生産, 普及함으로써 國民蛋白質

供給 및 加工業 育成·發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加工用 原料의 안정적 供給을 위해 原料 鮮度維持 및 原料供給 系列化를 기하고 특히, 煉製品 原料의 원활한 供給 및 品質 高級化를 위해서 船上 및 陸上煉肉의 生産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둘째, 加工品の 品質向上을 위하여 製品生産 指導 強化 및 自體試驗 研究室 確保를 유도하고 先進 品質管理 技法 普及, 包裝材質의 高級化 및 色相, 디자인을 개발토록 할 것이다.

셋째, '88서울올림픽에 대비, 加工業體의 環境衛生 改善 指導와 外國人의 嗜好에 맞는 魚類罐製品, 참치햄, 참치통조림, 고급 어묵類, 맛김 등의 올림픽 食品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 2. 製品의 消費底邊 擴大

水産物の 消費底邊 확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弘報가 중요하므로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 각종 言論媒體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어리, 고등어, 굴, 미역, 오징어 등 多獲性 水産物을 비롯한 모든 水産物은 成人病 豫防은 물론 無公害 健康食品임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民間團體 및 業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有料弘報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料理法 開發 普及을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地方 7개都市에서 등푸른 生鮮, 多獲性 水産物, 민물고기, 이북 등에 대한 料理講習 및 試食會를 개최(15회)하고 리후렛과 팜프렛을 製作, 關聯機關, 團體, 業體 및 消費者들에게 配布하는 한편, 料理集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大都市의 一般 消費者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設置 運營하고 있는 통조림, 민물고기 등의 常設直賣場 이외에 미역 등의 直販場도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 第 4 節 水産物 檢査

遠洋漁業의 生産 增大와 外貨獲得用 原資材의 輸入 增加 등으로 檢査 物量이 증가 추세에 있어 海外市場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品質 提高의 차원에서 檢査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대처코자 1988년 水産物 檢査 目標量을 30만톤으로 정하고 이의 細部方針을 “檢査判定의 標準化” “檢査員의 資質向上” “檢査의 科學化” “製品生産 指導의 強化”에 두고

첫째, 檢査對象品중 冷凍品の 9개品種에 대하여 主 生産時期에 檢査標準品查定會를 개최하고 適정한 檢査標準을 設定, 檢査員間의 官能檢査判定의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檢査의 公信用을 높이고, 加工業界의 참여로 優秀製品生産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重金屬, 細菌, 理化學에 대한 自體 分析敎育과 冷凍品, 통조림品, 魚肉煉製品, 寒天에 대한 實技訓練으로 全 檢査員의 資質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檢査員의 國家技術資格 取得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檢査의 信賴度와 食品의 安全度를 제고하고,

세째, 檢査의 科學化를 위하여 分析檢査裝備의 보강과 先進國 水準의 檢査技法 導入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제, 製品生産 指導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技術情報를 입수, 水産物 市場動向誌를 발간하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新製品 開發과 加工技術 및 機器·施設 改善을 유도함과 동시에, 加工工場 衛生管理 点檢을 실시하여 미흡한 點을 보완함으로써 優秀加工業體 檢査減免 證인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적정 檢査標準 및 製品加工方法 改善資料에 활용코자 멸치액 첫 品質基準 調查 의 9개課題를 調査分析事業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섯째, 輸出 水産物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輸出增大 및 業界便宜를 도모코자 수출절차 간소화 등 관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表 126) 水産物 檢査法 施行規則 改正 內容

件 名	改 正 內 容	事 由
水産物 檢査法 施行規則改正 (農林水産部令 第1,000號 '88.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檢査 면제 대상 수산물 공고</li> <li>○檢査有効 期間 現實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冷凍品 2개월→4개월</li> <li>-  통조림品 4개월→6개월</li> </ul> </li> <li>○調味魚貝類 및 얼구운 魚類, 꽃포 其他 調味加工品의 水分규정 25~28% 명문화</li> <li>○고등어 통조림 수4號 固型量 340g 을 320g 으로, 꽃치, 정어리 통조림 수 4號 固型量 350g 을 320g 으로 조정</li> <li>○점조성 통조림 가온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 검사 免除節次 간소화</li> <li>○檢査標準의 現實化</li> </ul>
水産物檢査例規改正 (水産物 檢査 例規 第 148號 '88.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소재지내 검사신청은 서면 또는 전언으로 방법 개선</li> <li>○調味 취치포 이화학 검사를 매분기 1회에서 하절기 1회이상으로 완화</li> <li>○신규제품의 검사표준 예규화</li> <li>○한천 및 어육연제품의 이화학검사 표준 신설 등</li> </ul>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 第 7 章 漁業基盤施設 擴充

### 第 1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1. 漁船建造

##### 가. 老朽漁船 代替

1988년도 老朽漁船代替事業은 4,960백만원을 投入, 1,600톤을 合成樹脂(FRP)船으로 代替할 계획이다.

老朽漁船代替對象은 木船은 16년 이상, 鋼船은 21년 이상이며 支援規模는 다수 零細漁民이 高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톤 未滿으로 代替建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漁撈船으로서 漁業許可나 漁業鑑札이 없는 어선이나 登錄 및 檢査를 未畢한 어선은 支援對象에서 제외하였다.

##### 나. 經濟性漁船 普及

鋼船이나 木船에 比하여 耐久年數가 길어 壽命이 半永久的이고 補修 및 維持管理費가 절감되는 經濟性 漁船인 合成樹脂(FRP)船 普及을 확

대하기 위하여 1988년에는 農漁村地域開發基金으로 1987년보다 1000톤이 많은 2000톤을 確保, 40톤未滿의 小型漁船인 合成樹脂(FRP)船 建造 希望者에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韓國漁船協會로 하여금 漁船의 性能 向上 및 試驗研究에 관한 事業을 추진토록 하여 FRP標準漁船 45종을 開發, 告示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매년 2~3종을 開發 告示하여 經濟性 漁船(FRP) 普及事業을 加速化할 계획이다.

#### 다. 計劃造船(漁船) 建造

國民投資基金에 의한 計劃造船事業은 1977~1987년까지 244,530백만 원을 投入, 797隻, 92,557톤을 建造 支援한데 이어 1988년에는 36,800백만 원을 투입, 36隻, 8,000톤(近海漁船 20척, 2,000톤, 遠洋漁船 16척, 6,000톤)을 建造中에 있다.

支援對象漁船은 40톤 이상으로 近海漁船은 老朽漁船代替와 被害復舊에 한해 지원하며 漁獲強度가 높은 大型트롤, 大型機船底引網, 大型旋網, 近海鮫鱈網, 近海채낚기 등 資源管理上 減隻對象漁船은 被代替船 2척을 1척으로 建造時에만 지원하고 있다.

## 2. 低效率機關 代替 및 裝備 改良

安全操業과 操業能率 向上을 위하여 1988년도부터 補助를 수반한 政府豫算事業인 動力改良事業을 중단한 대신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을 확보하여 低效率機關代替事業에 3,520백만 원을 投入, 陸上用機關 등 低效率 및 老朽機關을 燃料節約型 船舶用 디젤機關으로 代替코자 추진중이며 다수

漁民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200馬力 이하의 機關을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또한 政府豫算에 의한 裝備改良事業으로 100백만원을 投入, 老朽無電機를 代替하거나 새로 無電機를 設置코자 희망하는 경우에 支援하고 있다.

〈表 127〉

漁 撈 施 設 事 業 計 劃

단위: 백만원

	物 量	事 業 費				單 價 (萬圓)
		計	補 助	融 資	自 擔	
計		51,580	992	40,262	10,326	
老朽漁船代替 (FRP)	1,600 G/T	4,960	992	2,976	992	310
經濟性漁船普及 計 劃 造 船	2,000 "	6,200	-	4,960	1,240	310
低效率機關代替	22,000P	3,520	-	2,816	704	160
裝 備 改 良 (無電機 30W)	100台	100	-	70	30	100

자료: 수산청, 어선과

### 3. 漁船檢査業務의 效率化

漁船檢査員의 職務教育制度를 일반적인 基礎檢査教育에서 分野別 專門化教育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海外研修教育 실시와 檢査裝備 補強 등으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檢査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該當分野 資格證을 소지하도록 하는 등 檢査員의 資格을 강화하여 檢査員이 專門性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漁船用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豫備檢査가 비용과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번잡한 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우수한 漁船用品을 용이하게 購入 使用하는 등 漁民에 대한 便宜提供을 위하여 漁船用品의 型式承認 및 製造施設承認制度를 시행할 계획이다.

#### 4. 漁船法令 改正

##### 가. 漁船法 施行令

우리나라 遠洋 漁獲物의 運搬은 주로 外國籍 運搬船에 의존하고 있어 運搬船 確保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同 運搬船의 從業制限을 第 3種 從業制限漁船에 포함시켜 遠洋 運搬船의 確保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從業制限規定을 補完, 改正 추진중에 있다.

##### 나. 漁船 設備 등에 관한 規則 改正

漁船法令 改正에 따라 同 法令 施行에 필요한 漁船設備 등에 관한 規則의 諸規定을 補完 整備하여 각 設備別로 구분하여 漁船構造規則, 漁船機關規則, 漁船設備規則, 漁船의 滿載吃水線 및 復原성에 관한 規則의 4개 部分으로 분리 제정하여 國際協約 및 技術開發 등 與件變化에 신속히 적응토록 하고 設備別 檢査業務執行에 단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 漁船讓渡許可 等 要領 改正

漁船法 第26條 및 同法施行令 第44條,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

또는 外國인이 所有한 漁船의 讓受 또는 備船許可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漁船讓渡許可 等 要領을 1988. 6. 21 改正 告示하였다.

1988. 4. 1부터 新造漁船輸入이 自由化됨에 따라 新造漁船의 讓受 및 備船을 許容하고 特殊地域과의 漁業協力 增大와 新漁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漁船은 入漁契約 또는 漁業許可內容에 따라 漁船을 備船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하였으며 遠洋漁獲物의 원활한 運搬과 漁撈船의 操業能率 向上을 위하여 遠洋漁獲物 運搬船에 대한 讓受 및 備船許可의 制限條件인 漁業協力, 新漁場 新漁法 開發費用을 削除하였다.

#### 라. 漁船 檢査 等에 關한 代行業務 範圍 改正

漁船 檢査 等の 業務를 代行할 수 있는 檢査機關으로는 漁船法 第21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漁船協會와 船舶安全法 第8條에 의한 韓國船級이 있다. 漁民에게 優秀한 技術로 奉仕하기 위하여 이들 檢査機關이 代行하고 있는 漁船의 檢査業務와 이와 關聯된 證書 發給業務 外에 漁船法令 改定 ('86. 5. 12)으로 追加된 船舶國籍證書 등의 檢認業務, 漁船用品 등의 檢定業務를 追加하고 檢査證書의 効力 喪失告示의 원활한 遂行을 위해 “漁船 檢査 等に 關한 代行業務範圍”로 全面 改正 施行하고, 또한 韓國漁船協會業務와 韓國船級 業務의 範圍도 명확하게 하고 監督을 강화하여 漁船管理行政을 보다 효율적으로 遂行함으로써 未受檢 漁船의 整備와 高度의 技術의 檢査를 遂行토록 할 계획이다.

## 第 2 節 漁港施設の 擴充

### 1. 漁港開發

1988년도 漁港開發方向은 外廓施設 完工 促進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1·3種漁港은 393억원의 事業費로 忠南의 安興港 등 25개 港에 대한 修築事業과 全南의 馬良港 등 7개 港에 대한 補修·補強 事業을 추진하고 있으며, 2種漁港은 65개 港에 60억원의 事業費를 投資하여 修築事業을 추진중이다. 小規模 港浦口는 施設費 支援 등 開發業務가 島嶼開發促進法 施行에 따라 部處間 業務調整에 의거 1988년부터 內務部로 移管되었다.

(表 128)

漁 港 開 發 計 劃

단위: 억원

	投資 港 數	物 量	事 業 費		
			計	國 費	地 方 費
計	90	4,809 m	453	423	30
1·3 種 漁 港	25	3,477	393	393	-
2 種 漁 港	65	1,332	60	30	30

자료: 수산청, 어항과

## 2. 漁港被害 最小化 對策

颱風 및 暴風으로 인한 漁港被害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水産廳에서는 東海~南海의 全 海域 深海波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海域別 淺海波高는 1次로 江原道 대진~慶南 방어진까지와 西海岸 一部海域은 금년에 조사 완료하고, 방어진 이남에서 南海 및 西海一部(全北 格포까지)에 대한 2次調査는 1989. 6월까지 실시, 同 波高를 기초로 하여 全 漁港의 既存 施設物에 대하여는 安全度를 診斷하여 補修, 補強計劃을 수립, 연차적으로 老朽脆弱度에 따라 安全斷面으로 보강하고 新規施設物에 대하여는 시초부터 근본적으로 安全하도록 시설해 나갈 것이다. 市·道知事 管理港인 2種漁港은 水産廳에서 調査된 深海波, 淺海波 및 施設物 安全診斷結果를 근거로 하여 市·道에서 調査費를 確保, 港灣專門技術團의 정밀검사를 거쳐 當該港의 被害頻度 및 尤甚度 등을 勸案, 既存施設에 대한 安全度點檢을 실시하여 連차적으로 보강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3. 漁港 機能施設 擴充

漁船에 대한 신속한 給油를 위해 292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給油施設을 新設 또는 既存施設을 補強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基本施設의 早期 完工과 더불어 利用에 不便이 없도록 機能施設을 擴充하고 環境改善과 周邊整備로 漁港의 機能 提高와 더불어 觀光을 겸한 漁港으로 開發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 第 8 章 漁民支援 強化

### 第 1 節 漁家所得 倍加

#### 1. 水産業의 成長과 所得推移

우리나라의 總體的 經濟는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인 고도화를 이룩하였는데 반해 水産業은 1977년 이후 年평균 15.52%의 고도성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國民總生産額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7년 2.07%에서 1987년에는 1.60%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産業間의 不均衡的인 成長 및 所得分配의 隔差가 심화되고 있다.

(表 129)

國民總生産과 水産業의 成長 對比

	'77	'82	'87(p)	단위: 억원, % 年평균성장율
國民總生産 (A)	177,286	507,246	975,317	18.59
水 産 業 (B)	3,663	7,119	15,585	15.52
構 成 比(B/A)	2.07	1.40	1.60	

자료: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또한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實情은 漁業生産量 增加率이 둔화되고 噸當

漁獲量도 감소 ('77년 4.54→'87년 3.37톤, 년평균 4.25% 감소) 하는 추세이며, 漁業經營形態도 대부분 家族中心의 소규모로, 어업에 종사하는 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勞動人口도 점차 高齡化·婦女子化하는 趨勢에 있다.

漁家所得은 1977년 1,391천원을 기록한 이후 년평균 16.0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는 6,166천원에 달하고 있으나, 農家所得 또는 都市家計所得의 상승율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表 130〉

漁家所得增加推移

단위: 천원, %

	漁家所得 (A)			農家所得 (B)	都市家計所得 (C)		
	計	漁業所得	漁業外所得		A/B	A/C	
'77	1,391 (100)	890 (64.0)	501 (36.0)	1,433	97.1	1,405	99.0
'82	3,279 (100)	1,960 (59.8)	1,319 (40.2)	4,465	73.4	4,327	75.8
'87	6,166 (100)	3,420 (55.5)	2,746 (44.5)	6,535	94.4	7,405	83.3
증가율	'77-'82 '82-'87 '77-'87	18.7 13.5 16.1	17.1 11.8 14.4	21.4 15.8 18.6	25.5 7.9 16.4	25.2 11.3 18.1	

자료: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註: 都市家計所得에는 自家評價額 包含, 增加率は 年平均値임.

## 2. 漁家所得 増大計劃 樹立 推進

이러한 水産業의 構造的인 脆弱性을 극복하고 産業間的 均衡的인 발전과 漁家所得 向上을 위하여 획기적인 所得源 開發 및 水産業의 特性을 감안한 대목적인 투자로 水産基盤을 확충하고 生活與件을 개선시켜 1987년의 어가소득 6,166천원을 1993년까지 倍加시키고 家計間的 균형적인 發展을 도모할 계획으로 그 實踐計劃을 수립하고 있다.

## 第 2 節 水産資金 支援

### 1. 營漁資金

1988년 支援計劃은 3,840억원으로 沿近海漁業分野에 3,310억원, 遠洋

〈表 131〉

營 漁 資 金 供 給 計 劃

단위: 억원

			'87	'88	增(△) 減
所 要 額			6,757	7,262	505
供 給 額			3,500	3,840	340
(供給率: %)			(52)	(53)	-
調 達	財 政 資 金		462	545	119
	肆 銀 借 入		1,572	1,977	405
	水 協 資 金		1,466	1,318	148
運 用	沿 近 海	所 要 額	4,980	5,377	397
		供 給 額	3,000	3,310	310
	(供給率: %)		(60)	(62)	-
	遠 洋	所 要 額	1,777	1,885	108
供 給 額		500	530	30	
(供給率: %)		(28)	(28)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漁業 分野에 53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漁業經營費 調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韓銀借入率을 50%에서 60%로 인상하였으며 未運用額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與信限度去來制를 실시하여 漁民 便益을 도모하였다.

## 2. 水産振興基金 및 水産振興財政資金 運用

水産振興基金 4,657백만원과 水産振興財政資金 8,500백만원을 魚類蕃養, 內水面開發 및 水産物食糧化事業과 水産物加工業體의 經營資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表 132〉 水産振興基金 運用計劃

단위: 백만원

	'87	'88	增(△)減	內 譯
計	3,975	4,657	682	
沿 近 海 漁 業	1,400	2,300	900	· 魚 類 蕃 養 : 1,300 · 內 水 面 開 發 : 1,000
遠 洋 漁 業	1,250	-	△1,250	
水 産 物 製 造	1,710	2,300	590	
次 期 移 越	165	57	△ 108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33〉 水産振興財政資金 運用計劃

단위: 백만원

	'87	'88	增(△)減
調 融 資 金 回 收	7,000	7,500	500
達 新 規 融 資 金	2,000	1,000	△ 1,000
計	9,000	8,500	△ 500
運 沿 近 海 漁 業	1,400	1,100	△ 300
用 遠 洋 漁 業	1,250	1,250	-
流 通 · 製 造	6,350	6,150	△ 200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3. 農漁村地域開發基金

1985년에 수립 시행한 農漁村綜合對策의 一環으로 造成된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은 經濟性 漁船 普及 등 4개 部門에 10,096백만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經濟性 漁船普及事業은 船齡 16년(鋼船21년)이상 老朽 漁船, 海難脆弱 漁船, 漁業許可가 留保된 滅害 漁船 등을 40톤미만 合成樹脂(FRP) 漁船으로 代替코자 하는 漁民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1987년도의 2배인 2,000톤을 中·長期 低利로 지원하고 있으며, 政府豫算事業인 老朽 漁船代替 事業(8톤미만)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

低効率機關 代替事業은 老朽 및 低効率(燒球, 陸上用) 機關을 설치한 沿近海 漁船을 대상으로 200馬力 이하의 國產 船舶用機關으로 代替코자 하는 漁民에게 1987년의 2배인 22,000馬力を 低利로 지원하고 있다.

그외에 水産物 食糧化事業은 冷凍煉肉施設 및 미역, 다시마, 톳을 原料로 2次加工品 施設을 갖추코자 하는 落島, 僻地 및 郡以下 中·小都市 所在 水協과 漁村契 등에 지원되며, 水産物 加工處理施設事業은 水協系統組織인 會員組合의 製水·冷凍·冷蔵施設 擴充에 지원토록하여 漁民의 漁業生産 지원과 流通改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本 基金에 의한 事業費의 融資率은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利子는 年 1회 後取하고 있다. 1988년도 事業은 1989. 3. 31까지 融資 종결하되 本 基金으로 취득한 施設物은 後取擔保로 할 수 있다.

〈表 134〉 農漁村地域開發基金支援計劃

단위 : 백만원

	'87		'88		融資年數		金利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据 置	價 遵	(%)
計		7,556		10,096			
經濟性漁船普及	1,000G/T	2,408	2,000 G/T	4,960	3	10	5
低効率機關代替	11,000 HP	1,408	22,000 HP	2,816	1	4	5
水産物食糧化	8 개소	2,480	4 개소	1,360	2	5	8
· 冷凍煉肉	5 "	2,000	3 "	1,200			
· 海藻加工	3 "	480	1 "	160			
水産物處理加工 (製氷, 冷凍工場 新·増築)	3 "	1,260	3 "	960	2	5	8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 4. 水協 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 가. 貯蓄增大

水産資金의 원활한 調達을 위하여 1988년 貯蓄目標을 833,423백만원으로 정하고 一般受信店舖 7개소('87까지 104개소), 相互金融受信店舖 9개소('87까지 144개소)와 온라인 店舖 47개소 ('87까지 60개소)를 증설하여 顧客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나. 水産資金

1988년 水産資金 規模는 1987년말 殘額대비 165,488백만원이 증가한 1,137,012백만원으로, 917,332백만원을 貸出金으로 運用할 계획이다.

〈表 135〉

水協資金需給計劃

단위 : 백만원

調		達	運		用
科	目	金 額	科	目	金 額
計		1,137,012	計		1,137,012
預	受 金	282,377	現 金	・ 預 置 金	43,814
・	一 般	251,300	有 價 證 券		62,859
・	相 互 金 融	31,077	貸 出 金		917,332
會 員 換 決 濟		87,160	・ 信 用		894,833
借 入 金		606,556	・ 共 濟		12,000
・ 金 融		223,127	・ 相 互		5,000
・ 財 政		381,755	・ 借 款		5,499
・ 借 款		1,674	經 濟 事 業 債 權		31,109
經 濟 事 業 債 務		15,146	在 庫 資 產		8,923
尤 當 金		25,958	業 務 用 固 定 資 產		55,773
共 濟 積 立 金		60,784	其 他 雜 資 產		17,202
雜 負 債		26,200			
資 本 金		32,831			

자료 : 수협중앙회, '88사업계획서 (종합자금 수급계획)

### 第 3 節 低所得 漁村 育成

漁村의 所得水準이 全國 漁家 平均所得의 80% 이하로써 漁場開發 潛在力과 協業事業 遂行能力이 있는 20개 低所得 漁村을 支援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2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들 漁村에 대하여는 國立水産振興院의 漁村指導員을 상주케 하여 生産 및 經營指導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表 136) 低所得漁村選定

단위: 개소

計	京畿	江原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20	2	4	1	2	4	1	4	2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37) 低所得漁村支援事業計劃

단위: 백만원

事業別	事業量	事業費			
		計	補助	融資	自擔
計		220	145	39	36
生産基盤事業		112	96	7	9
· 船着場	20 m	29	29		
· 物揚場	50 m	60	60		
· 鍊火臺	20 坪	10	2	5	3
· 漁船待避燈	1 個所	2	2		
· 漁場管理船	3 隻	6	3		3
· 漁網購入	1 件	5		2	3
所得増大事業		98	44	29	25
· 전복·김 등	41 ha	98	44	29	25
	100 柵				
環境改善事業		10	5	3	2
· 漁村所得源道路	340 m	10	5	3	2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그리고 漁村構造改善과 漁村定住圈 基盤을 확보하기 위하여 示範漁村 2개소를 선정, 총 39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정된 漁村地域 實情에 맞는 生産基盤施設 및 所得増大事業을 실시할 것이며 1989년부터는 개소당 지원액을 3억 원으로 인상, 1992년까지 64개소를 選定, 支援할 계획이다.

(表 138)

示範漁村支援事業計劃

단위: 백만원

漁 村 契	事 業 費				備 考
	計	國 費	地方費	自 擔	
計	392	248	106	38	
全南 莞島郡 扶桑 漁村契	196	124	53	19	防波堤: 60 m 漁村所得源道路: 120 m 貝類蕃養: 2ha
慶南 蔚州郡 大松 漁村契	196	124	53	19	防波堤: 31 m 物揚場및船引場: 748 ㎡ 漁村所得源道路: 150 m 건복種苗放流: 20,000尾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第 4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 1. 漁村 새마을運動

漁村 새마을 事業으로 정부 및 수협조직을 통하여 生産基盤事業에 891 백만원, 所得増大事業에 3,722백만원, 漁村副業事業에 817백만원, 精神啓發事業에 1,8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올림픽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漁民 및 水産公職者 75,270명에게 서울올림픽 범국민적 同參意識 강화를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새어민誌, 漁船誌, 遠洋漁業誌 등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先進文化 國民像 정립을 위한 秩序·親切·清榮運動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表 139)

漁村새마을 事業計劃

단위 : 백만원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計	補助	融資	自擧
計		7,244	3,222	2,664	1,358
生産基盤事業		891	179	445	267
· 小規模漁港開發	420 m	263	53	131	79
· 附帶施設	51 件	628	126	314	188
所得増大事業		3,722	1,053	1,823	846
· 増養殖事業	957 ha	3,058	413	1,823	822
· 內水面開發	34百萬尾 3 個所	664	640		24
漁村副業事業		817	176	396	245
· 共同作業場	10 個所	248	62	112	74
· 多目的船	20 隻	193	39	96	58
· 休憩所 및 其他	17 件	376	75	188	113
精神啓發事業		1,814	1,814		
· 漁民後繼者教育	800 名	62	62		
· 漁村技術指導	1,528契	463	463		
· 對漁民弘報	60件	1,289	1,289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2. 漁民後繼者 育成

어민후계자 400명을 선발, 育成資金 3,53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精神教育 3일과 專門技術教育 6일씩을 실시하였고, 기존 漁民後繼者 가운데 희망자 400명에 대하여 經營教育을 6일간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水産系高校을 卒業하고 漁村에 定着할 學生들을 育成하는 事業인 自營水産科 支援은 1987년에 江原道 注文津水高에 1개 學級 40名을 選拔 支援한데 이어 1988년에는 注文津水高 1,2學年 80名과 忠南 大川水高 1學年 40名, 慶南 巨濟水高 1學年 40名에게 寄宿舍費의 50%인 28백만원을 水産廳 豫算에서 支援하고 나머지 50%는 文教部 豫算에서

支援하며 이들에게는 授業料를 免除하고 水協에서 1人當 5만원 정도의 獎學金을 지원할 계획이다.

(表 140) 漁民後繼者育成支援

단위: 백만원

	計			'81~'87			'88		
	人員	%	金額	人員	%	金額	人員	%	金額
計	4,147	100	31,355	3,747	100	27,824	400	100	3,531
漁船漁業	2,508	60	20,116	2,246	60	17,593	262	65	2,523
增養殖漁業	1,597	39	10,987	1,463	39	10,003	134	34	984
水産物加工	42	1	252	38	1	228	4	1	24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41) 漁民後繼者構成

단위: 명

計	學歷別		年 齡 別				性 別	
	水産系	一般系	20歲以下	30歲以下	35歲以下	36歲	男	女
400	34	366	48	162	184	6	395	5
(100%)	(9)	(91)	(12)	(41)	(46)	(1)	(99)	(1)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 第 5 節 災害補償

### 1. 漁船 및 船員 共濟制度 改善

漁船共濟는 支給共濟金에 상응한 危險割増料率을 부과하여 事故 豫防

을 유도하고 業種別, 契約者別 共濟料 負擔 衡平維持와 漁船共濟事業 收支 개선을 위하여 加入漁船의 과거 3개년간 收入共濟料에 대한 支給共濟金の 比率이 100%를 초과할 때에는 基本料率의 10~30%를 추가부담하는 危險割増共濟料 制度를 1988. 3.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旋網 運搬船(鋼船)의 경우 船齡 10년이 상이 10년미만보다 船體 評價額이 오히려 높아 船齡 구분없이 톤당 232만원으로 一律 評價 加入 托록 하고 중견 鋼船에 준하여 평가托록 하던 合成樹脂船(FRP)의 評價方法을 합리적으로 評價될 수 있도록 動力, 無動力으로 구분, 톤급별 로 톤당 200~300만원의 獨立評價表를 新設, 1988. 1. 27부터 적용托록 하였다. 船員共濟 가입 漁民들의 負擔을 경감코자 톤급별로 共濟料의 10~30%를 國庫에서 補助하던것을 1988. 1월부터 15~35%로 引上 지원 하고 있으며, 補助額이 낮아 小型漁船員의 가입이 저조하므로 30~50톤 未滿 低噸級 船員을 대상으로 補助率 引上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表 142)

漁船 및 船員 共濟 加入 計劃

단위 : 백만원

		'87	'88	'88/'87 (%)
漁 船	加入 漁船(隻)	6,868	7,200	104.8
	契約 高	362,471	374,000	103.2
	共濟 料	7,189	6,732	93.6
船	加入 人員(名)	45,260	46,000	101.6
	契約 高	396,486	370,000	93.3
	共濟 料	4,796	5,577	116.3
員	(國庫補助)	(532)	(657)	(123.5)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 2. 養殖共濟制度 導入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釜 垂下式養殖漁業의 共濟試驗事業設計研究는 1986년에 실시한 共濟成立可能性 檢討結果에 따라 1987~1988년까지 共濟對象海域과 共濟加入方法, 共濟引受方式과 範圍, 共濟料率算定, 組織과 運營 및 責任分擔 등 구체적인 試驗事業實施를 위한 기틀을 구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試驗事業을 실시한 후 本事業 實施方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3. 災害復舊 支援

### 가. 1988년도 災害發生

1988. 2. 5~2. 7 暴風 및 突風으로 全南 莞島, 海南 등 南·西部海域을 중심으로 水産增養殖施設 (김 16,410 欄, 미역 12,305 台, 툇 245 台)에 총 3,846백만원의 被害가 발생하여 “災害復舊 및 復舊費用負擔基準”에 따라 1,849백만원을 被害復舊費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밖에 50%以上 被害漁家에 대하여는 營漁資金 償還延期(1년) 및 利子 免除措置로 1,782家에 3,892백만원을 間接支援트록 하였다.

〈表 143〉 暴風 및 突風被害復舊費支援實績

단위: 백만원

	被害內譯		復舊內譯			
	物 量	金 額	物 量	計	國 庫	自 擔
計		3,846		2,641	1,849	792
김 施設	16,410 柵	2,064	16,410	2,064	1,445	619
미역 "	12,305 台	1,747	12,305	566	396	170
돛 "	245 "	35	245	11	8	3

자료: 중앙재해대책본부

註: 被害金額과 復舊金額이 相異한것은 미역·돛의 當初 復舊計劃單價가 142천원이었으나 實際單價가 46천원으로 確定되어 實價를 적용함

#### 나. 災害關係規程 改正

被害漁民의 復舊費用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하여 “災害救護 및 復舊費用負擔”과 “被害額算定基準”등 災害關係規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災害救護 및 復舊費用負擔基準에 있어서는 被害漁民에 대한 間接支援을 被害時마다 支援與否를 결정하였으나 營漁資金 償還延期 및 利子減免은 50%이상 全 被害漁家에게, 中高中生 學資金 免除은 小規模漁業을 하는 50%이상 被害漁家에게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被害額 算定基準에 있어서는 防波堤, 上置콘크리트 등 全體 漁港施設 工事資材代에 대하여 復舊單價를 6% 인상하고 漁網 復舊單價를 3% 인상하였으며 미역, 다시마의 台當復舊單價 142천원을 南海岸은 46천원, 其他 地域은 實際 復舊費單價를 적용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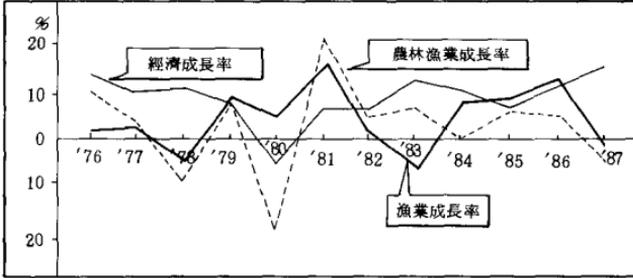
**여백**

圖表로 본 水産業動向

1. 國民經濟와 水産業 成長
2. 國民 總生産와 漁業生産(經濟構造)
3. 總人口와 漁業家口員
4. 漁船勢力
5. 水産物 生産
6. 水産物 需給
7. 水産物 價格
8. 漁家 所得
9. 可處分 所得 및 家計費
10. 漁家 資産
11. 漁家 負債
12. 文化用品 保有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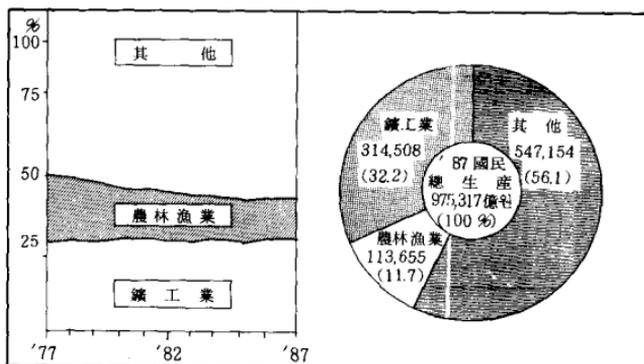
## 1. 國民經濟와 水産業 成長



단위 : '80 불변가격, 억원

	國民 總生產	農林漁業	漁業	鑛工業	社會間接 投資	其他 서비스
'76	292,855	69,275	4,711	78,475	23,751	121,354
'77	324,079	71,324	4,804	90,289	29,277	133,189
'78	359,811	64,266	4,534	108,638	36,963	149,944
'79	385,027	68,991	4,937	119,032	38,858	158,146
'80	366,723	55,247	5,141	117,343	39,360	154,773
'81	390,887	67,597	5,961	126,750	38,797	157,743
'82	412,116	69,806	6,058	131,853	44,764	165,693
'83	461,091	74,360	5,794	147,806	54,067	184,858
'84	500,030	74,532	6,273	169,304	59,598	196,596
'85	527,054	78,092	6,695	175,979	64,468	208,515
'86	591,878	81,142	7,541	205,591	70,711	234,434
'87	663,196	77,768	7,452	237,818	81,100	266,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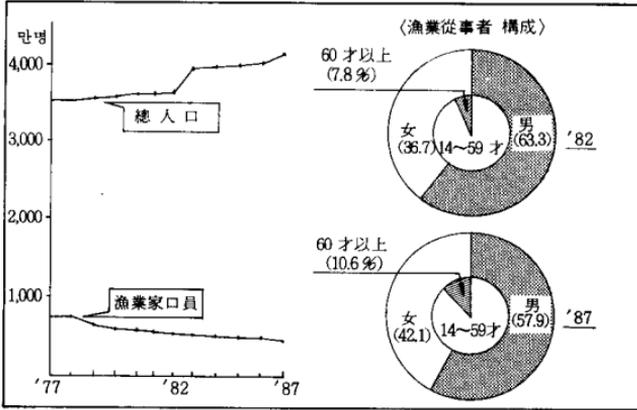
2. 國民總生産과 漁業生産 (經濟構造)



단위: 경상가격, 억원

	國民總生産	農林漁業	漁業	礦工業	社會間接資本	其他서비스
'76	138,182	32,435	2,312	40,313	8,252	57,182
'77	177,286	39,576	3,663	52,018	12,686	73,006
'78	239,368	48,904	4,229	71,212	21,754	97,498
'79	307,411	58,776	5,663	93,127	31,892	123,616
'80	366,723	55,247	5,141	117,343	39,360	154,773
'81	451,262	74,423	7,062	144,481	44,384	187,974
'82	507,246	77,315	7,119	157,688	53,805	218,438
'83	589,858	82,926	9,110	181,748	65,894	259,290
'84	664,082	91,812	8,933	209,972	76,209	286,089
'85	728,498	101,581	10,934	223,833	85,224	317,861
'86	839,758	106,371	13,821	270,860	94,724	367,803
'87	975,317	113,655	15,585	314,508	113,708	43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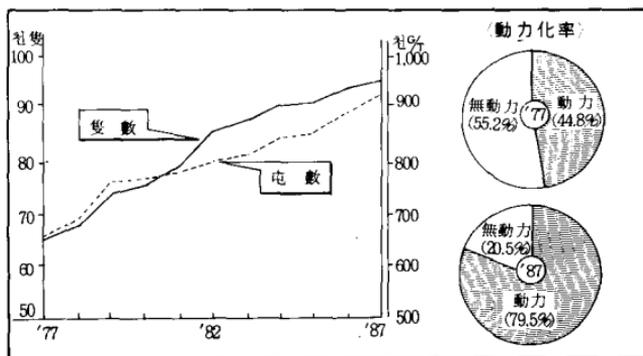
### 3. 總人口와 漁業家口員



단위 : 천명, 천호

	總人口		漁業家口員			漁業家口		漁業従事者	
		增減率		構成比	增減率		增減率		增減率
		%							
'76	35,849	1.64	880	2.5	-1.6	153	-0.6	328	1.5
'77	36,412	1.61	871	2.4	-1.0	153	0	329	0.3
'78	36,969	1.60	827	2.2	-5.0	152	-0.7	302	-8.2
'79	37,534	1.58	791	2.1	-5.3	147	-3.3	299	-1.0
'80	38,124	1.38	844	2.2	6.7	157	6.8	339	13.4
'81	38,723	1.57	776	2.0	-8.1	150	-4.5	294	-13.3
'82	39,931	1.57	755	1.9	-2.7	146	-2.7	292	-0.7
'83	39,951	1.58	739	1.8	-2.1	147	0.7	269	-7.9
'84	40,578	1.57	716	1.8	-3.1	147	0	277	3.0
'85	41,056	1.17	689	1.7	-3.8	145	-1.4	274	-1.1
'86	41,569	1.25	666	1.6	-3.3	144	-0.7	276	0.7
'87	42,082	1.23	635	1.5	-4.6	141	-2.1	27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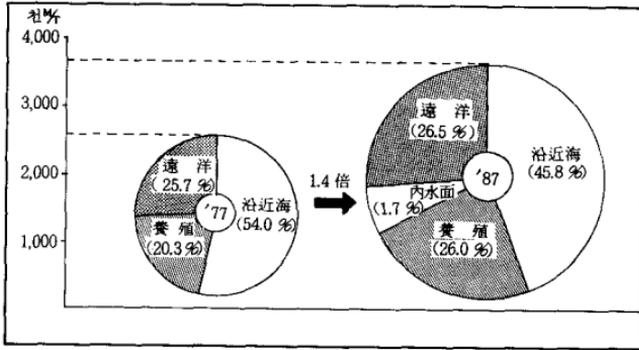
### 4. 漁船勢力



단위 : 隻, 噸, 千HP

	計			動力船			無動力船	
	隻數	噸數	隻平均噸數	隻數	噸數	馬力	隻數	噸數
'76	65.8	662	10.06	22.7	605	1,676	43.1	57
'77	66.5	683	10.26	29.8	636	1,866	36.7	46
'78	70.3	756	10.75	34.0	713	2,187	36.3	43
'79	74.6	753	10.10	47.1	721	2,334	27.5	32
'80	77.6	771	9.94	51.1	740	2,462	26.5	30
'81	80.5	782	9.71	59.7	757	2,585	20.8	24
'82	86.5	808	9.33	67.1	785	2,797	19.4	23
'83	88.5	828	9.35	69.3	806	2,973	19.3	22
'84	90.4	852	9.42	71.6	830	3,213	18.8	22
'85	90.9	858	9.42	71.8	836	3,353	19.1	22
'86	93.0	884	9.50	73.9	862	3,607	19.1	22
'87	94.1	912	9.69	74.8	890	4,027	19.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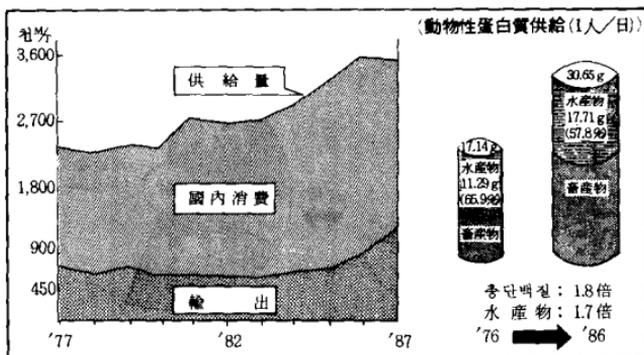
5. 水產物 生産



단위: 천%

	計	沿岸海		養殖		内水面		遠洋		
		増加率	増加率	増加率	増加率	増加率	増加率	増加率		
'76	2,407	12.7	1,257	4.0	411	17.1	15	66.7	724	27.9
'77	2,421	0.6	1,308	4.1	491	19.5	26	73.3	596	-17.7
'78	2,354	-2.8	1,364	4.3	391	-20.4	33	26.9	566	-5.0
'79	2,422	2.9	1,414	3.7	481	23.0	41	24.2	486	-14.1
'80	2,410	-0.5	1,372	-3.0	541	12.5	39	-4.9	458	-5.8
'81	2,812	16.7	1,529	11.4	701	29.6	40	2.6	542	18.3
'82	2,644	-6.0	1,475	-3.5	596	-15.0	45	12.5	528	-2.6
'83	2,793	5.6	1,487	0.8	644	8.1	47	4.4	615	16.5
'84	2,910	4.2	1,524	2.5	678	5.3	50	6.4	658	7.0
'85	3,103	6.6	1,495	-1.9	788	16.2	53	6.0	767	16.6
'86	3,660	18.0	1,726	15.5	947	20.2	57	7.5	930	21.3
'87	3,332	-9.0	1,526	-11.6	866	-8.5	57	-	883	-5.0

### 6. 水産物 需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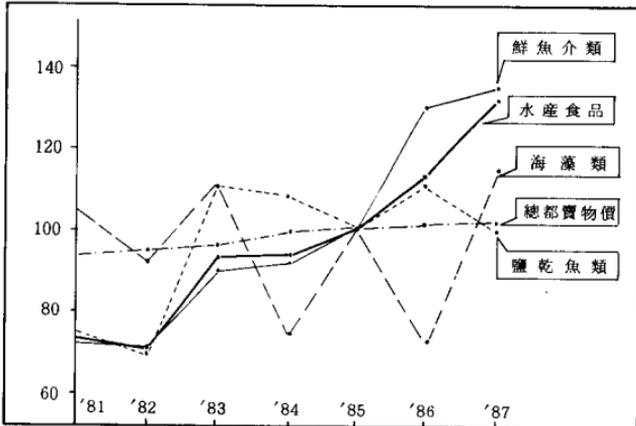


단위 : 千%

	供 給		合 計	消 費			1 人 當 消 費 (kg)
	生 産	輸 入		國 内		輸 出	
				魚 貝 類	海 藻 類		
'76	2,407	-	2,407	1,357	287	763	24.0
'77	2,421	15	2,436	1,374	291	771	24.3
'78	2,354	54	2,408	1,494	217	697	22.2
'79	2,422	55	2,477	1,463	226	788	22.7
'80	2,410	41	2,451	1,438	317	696	22.5
'81	2,812	48	2,860	1,684	445	731	25.9
'82	2,644	61	2,705	1,623	361	721	26.4
'83	2,793	66	2,859	1,769	391	699	31.5
'84	2,910	84	2,994	1,796	434	764	31.0
'85	3,103	91	3,194	1,880	448	866	30.7
'86	3,660	127	3,787	2,150	401	1,236	32.7
'87	3,332	427	3,759	2,131	393	1,335	33.6

註 : 1 人 當 消 費 量 은 魚 貝 類 基 準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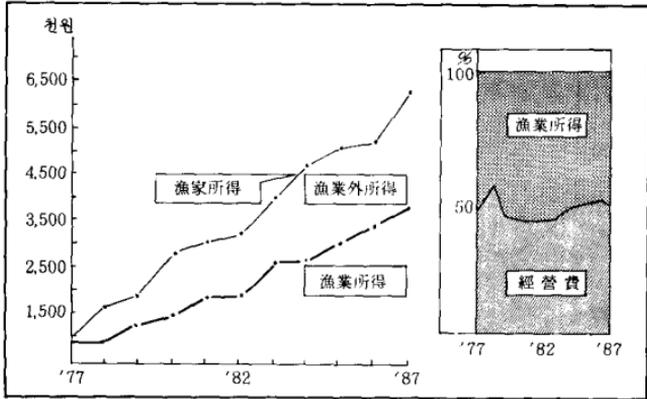
### 7. 水產物 價格



단위 : 평균지수, '85 기준

	總都賣物價	水 産 食 品			
		計	鮮魚介類	鹽乾魚類	海藻類
'76	38.8	20.6	19.9	21.0	26.9
'77	42.3	29.3	29.4	28.7	31.2
'78	47.2	44.7	38.8	47.0	99.1
'79	56.1	47.0	40.9	52.1	88.8
'80	77.9	59.1	54.8	61.1	98.0
'81	93.8	74.7	72.0	75.0	102.1
'82	98.2	76.5	76.5	72.1	86.4
'83	98.4	93.8	87.1	112.8	113.6
'84	99.1	93.6	91.9	108.4	74.6
'85	100.0	100.0	100.0	100.0	100.0
'86	98.5	114.9	125.3	109.1	73.8
'87	98.1	127.2	135.4	96.3	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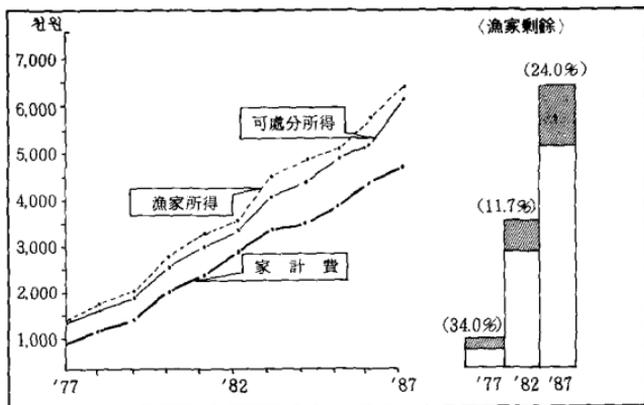
### 8. 漁家所得



단위: 천원

	漁家所得	漁業所得		漁業外所得			漁業外所得構成比	
		漁業租收入	漁業經營費	兼業所得	事業外收入			
'76	1,059	529	-	530	-	-	50.0	
'77	1,391	890	1,797	907	501	365	136	36.0
'78	1,529	829	2,291	1,462	700	506	194	45.8
'79	1,923	1,296	2,519	1,223	627	360	267	32.6
'80	2,596	1,752	3,090	1,338	844	392	452	32.5
'81	3,042	1,978	3,475	1,497	1,064	523	540	35.0
'82	3,279	1,960	3,513	1,553	1,319	607	712	40.3
'83	4,109	2,570	5,415	2,845	1,539	771	768	37.5
'84	4,508	2,582	5,589	3,007	1,926	1,051	875	42.7
'85	4,869	2,815	6,047	3,232	2,054	1,045	1,009	42.2
'86	5,402	3,219	7,155	3,936	2,183	1,011	1,172	40.4
'87	6,166	3,420	7,577	4,157	2,746	1,320	1,425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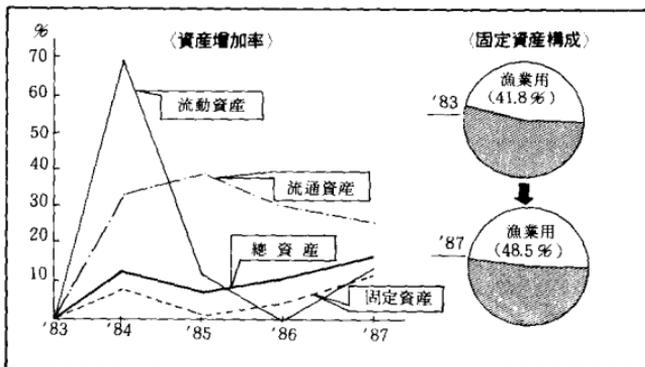
9. 可處分所得 및 家計費



단위: 천원

	可處分所得	家計費					영 利 係 數	農 家 剩 餘
		食料費	住居費 光熱費	教育費	被服費 其他			
'76	1,052	620	-	-	-	-	-	432
'77	1,375	902	469	131	-	302	52.0	473
'78	1,519	1,212	580	186	-	446	47.9	307
'79	1,877	1,498	668	220	115	495	44.6	370
'80	2,500	1,998	803	254	191	650	40.2	456
'81	2,913	2,383	951	310	252	870	39.9	505
'82	3,143	2,700	999	375	290	1,036	37.0	382
'83	3,898	3,206	1,086	379	429	1,312	33.9	620
'84	4,267	3,330	1,078	460	483	1,309	32.4	795
'85	4,601	3,583	1,137	447	521	1,478	31.7	979
'86	5,098	3,877	1,202	480	584	1,611	31.0	1,156
'87	6,095	4,457	1,279	581	569	2,028	28.7	1,480

### 10. 漁家資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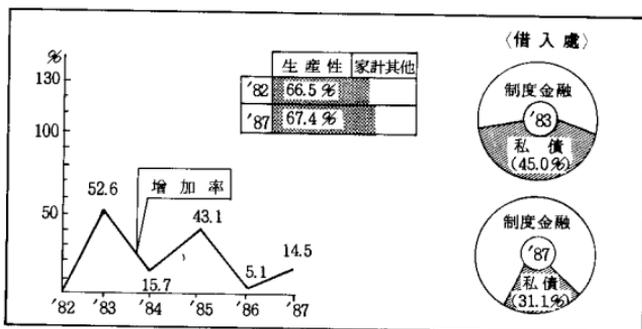


단위: 천원

	計	固定資産 (土地・建物等)	流動資産 (在庫農水産物等)	流通資産 (現金・貯蓄等)
'81	3,795	1,586	1,095	1,114
'82	4,316	1,776	1,259	1,281
'83	16,005	12,383 (9,321)	1,475	1,147
'84	17,708	13,548 (10,078)	2,616	1,544
'85	18,714	13,583 (9,807)	2,963	2,168
'86	20,072	14,216 (10,316)	2,951	2,904
'87	22,643	15,714 (11,670)	3,276	3,653

註: ( )은 非漁業用 資産이며 '82年 以前에는 未包含

### 11. 漁家負債



○ 用途別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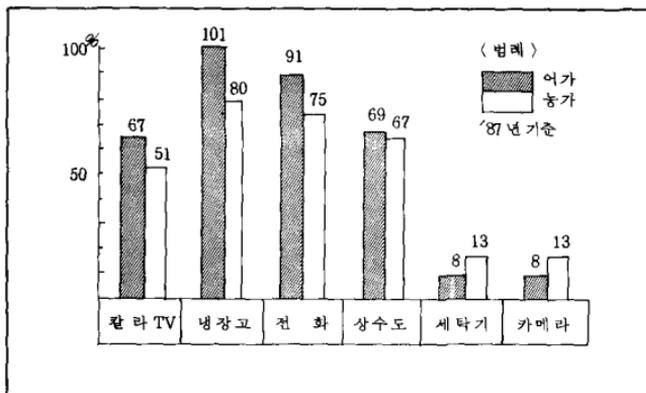
	計	生産性			家計	其他
		漁業	兼業			
'81	588	360	309	51	207	21
'82	1,337	889	799	90	402	46
'83	2,040	1,407	1,263	144	574	59
'84	2,361	1,658	1,455	203	648	55
'85	3,378	2,501	2,054	447	804	73
'86	3,549	2,545	2,150	395	911	93
'87	4,064	2,740	2,309	431	1,170	154

○ 借入處別

단위: 천원

	計	制度金融				私債
		小計	水協	農協	其他	
'83	2,040	1,123	859	194	70	917
'84	2,361	1,249	932	234	83	1,112
'85	3,378	2,157	1,491	513	152	1,221
'86	3,549	2,297	1,569	568	160	1,252
'87	4,064	2,800	1,858	728	214	1,264

## 12. 文化用品 保有



단위: 대/100호당

	T.V.		녹음기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전 화	상수도
	컬 라	흑 백						
'82	6	93	48	25	1	3	17	66
'83	9	93	48	31	1	5	21	60
'84	24	98	56	41	1	5	46	68
'85	47	83	84	68	3	7	62	65
'86	57	64	91	86	4	6	70	69
'87	67 (51)	52 (79)	92 (87)	101 (80)	8 (13)	8 (13)	91 (75)	69 (67)

註: ( )은 農家

# 統計表索引

**여백**

## 統計表索引

〈表 1〉	世界 水產物 生産推移 .....	4
〈表 2〉	世界 水產物 輸出推移 .....	6
〈表 3〉	漁業家口・人口 및 從事者 推移 .....	7
〈表 4〉	漁業家口의 推移 .....	8
〈表 5〉	漁業家口員 및 從事者 推移 .....	8
〈表 6〉	從事者의 年齡 構成 .....	9
〈表 7〉	業種別 從事者 推移 .....	9
〈表 8〉	漁船勢力 推移 .....	10
〈表 9〉	漁業別 漁船勢力 .....	11
〈表 10〉	船質別 漁船勢力 .....	11
〈表 11〉	長級別 漁船勢力 .....	12
〈表 12〉	漁業 總 生産額 .....	13
〈表 13〉	漁家所得 構成 .....	14
〈表 14〉	漁業階層別 所得 推移 .....	15
〈表 15〉	階層別 所得 構成 .....	15
〈表 16〉	漁家所得收支 .....	16
〈表 17〉	文化用品 推移 .....	16
〈表 18〉	漁家資産 推移 .....	17
〈表 19〉	漁家負債 推移 .....	18
〈表 20〉	資産과 負債 比較 .....	18
〈表 21〉	漁家經濟指標 分析 .....	19
〈表 22〉	私債 代替 執行 實績 .....	20

〈表 23〉	零細 中長期 低利資金 支援実績	20
〈表 24〉	水産關聯資金 利子 引下 実績	21
〈表 25〉	經濟 活性化 綜合對策 推進	22
〈表 26〉	颱風被害漁民 約定利子 補助実績	22
〈表 27〉	漁業別 生産推移	24
〈表 28〉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 推移	28
〈表 29〉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 推移	30
〈表 30〉	内水面漁業 品種別 生産 推移	31
〈表 31〉	遠洋漁業 生産 推移	33
〈表 32〉	水産物 輸出 推移	34
〈表 33〉	品目別 輸出実績	36
〈表 34〉	主要魚種 輸出実績	37
〈表 35〉	國家別 輸出実績	38
〈表 36〉	主要品種에 대한 價格引下 效果	39
〈表 37〉	水産物 輸出 推薦品目	39
〈表 38〉	輸入 自由化 品目	40
〈表 39〉	水産物 輸入実績	41
〈表 40〉	合作漁獲物 輸入実績	41
〈表 41〉	水産物 需給動向	42
〈表 42〉	動物性 蛋白質 供給量	43
〈表 43〉	水産物 利用 動向	43
〈表 44〉	沿岸漁業 經營體 推移	45
〈表 45〉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46
〈表 46〉	養殖漁業 經營體 構成	46
〈表 47〉	養殖漁業 經營體 規模	48

〈表 48〉	內水面漁業 經營體 推移 .....	49
〈表 49〉	遠洋漁船 推移 .....	50
〈表 50〉	都賣物價 騰落率 .....	51
〈表 51〉	免稅油類 供給實績 .....	52
〈表 52〉	免稅油價 斗 市中油價 斗 比較 .....	52
〈表 53〉	落島・僻地 免稅油類 供給 .....	53
〈表 54〉	漁網類 價格 推移 .....	53
〈表 55〉	裝備 供給價格 推移 .....	54
〈表 56〉	水產資金 推移 .....	55
〈表 57〉	水產資金 調達 .....	56
〈表 58〉	水協 自體資金 造成實績 .....	56
〈表 59〉	水產資金 運用 .....	57
〈表 60〉	營漁資金 供給 .....	57
〈表 61〉	道別 人工魚礁施設 實績 .....	62
〈表 62〉	水產種苗培養場 施設 .....	63
〈表 63〉	民間種苗 買入放流 實績 .....	64
〈表 64〉	叫子 人工受精卵 放流實績 .....	64
〈表 65〉	연어放流 및 採捕實績 .....	64
〈表 66〉	稚魚放養實績 .....	65
〈表 67〉	內水面 水產資源保全地域 指定 .....	66
〈表 68〉	不法漁業 團束實績 .....	70
〈表 69〉	漁船 海難事故 推移 .....	71
〈表 70〉	海難事故 原因 및 類型 .....	71
〈表 71〉	海域別 및 等級別 海難事故 .....	72
〈表 72〉	業種別 海難事故 .....	72

〈表 73〉	機關別 海難漁船 救助實績 .....	74
〈表 74〉	漁船 檢查實績 .....	75
〈表 75〉	被害復舊費 支援實績 .....	76
〈表 76〉	內水面養魚 支援實績 .....	78
〈表 77〉	大洋別 다량어 資源評價 .....	79
〈表 78〉	北・東太平洋의 主要魚種 資源狀態 .....	80
〈表 79〉	오징어漁業의 漁場別 漁獲量 및 隻當 漁獲量 .....	81
〈表 80〉	200海里 水域宣布 .....	82
〈表 81〉	附屬約定 更新 .....	83
〈表 82〉	南水洋漁場 調查實績 .....	84
〈表 83〉	遠洋漁船 事故現況 .....	85
〈表 84〉	補助研究課題 遂行實績 .....	92
〈表 85〉	水產系學生 實習實績 .....	92
〈表 86〉	兼職研究官 任命 .....	92
〈表 87〉	울림호號 引受船舶 諸元 .....	95
〈表 88〉	乘船 巡迴豫察 實績 .....	96
〈表 89〉	漁民後繼者 地域社會活動 .....	97
〈表 90〉	漁村 指導裝備 補強 .....	98
〈表 91〉	漁村 指導公務員 專門技術 教育實績 .....	98
〈表 92〉	教育訓練實績 .....	101
〈表 93〉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實績 .....	101
〈表 94〉	水產加工品 生產 推移 .....	105
〈表 95〉	水產物 消費 推移(純食用) .....	107
〈表 96〉	水產物 檢查 推移 .....	108

〈表 97〉	加工品 種別 檢査 推移 .....	108
〈表 98〉	漁撈施設事業 實績 .....	111
〈表 99〉	全國 漁港 現況 .....	112
〈表 100〉	漁港 開發 現況 .....	114
〈表 101〉	水協의 組織 .....	115
〈表 102〉	水協中央會 事業 規模 .....	116
〈表 103〉	會員組合 事業 規模 .....	117
〈表 104〉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	118
〈表 105〉	會員組合 收支狀況 .....	118
〈表 106〉	出資金 造成 .....	119
〈表 107〉	水產物 輸出團體 .....	120
〈表 108〉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績 .....	121
〈表 109〉	主要 水產振興事業 執行實績 .....	122
〈表 110〉	移越事業(1986→1987).....	124
〈表 111〉	移越事業(1987→1988).....	125
〈表 112〉	장어동말 어선의 漁具規模 .....	135
〈表 113〉	生産計劃 .....	142
〈表 114〉	輸出計劃 .....	142
〈表 115〉	水產豫算 .....	144
〈表 116〉	各種資金(基金) 運用計劃 .....	145
〈表 117〉	水產物 生産動向 .....	146
〈表 118〉	水產物 輸出動向 .....	147
〈表 119〉	人工魚礁 施設計劃 .....	150
〈表 120〉	種苗 生産計劃 .....	152
〈表 121〉	稚魚 放養計劃 .....	154

〈表 122〉	產學協同 補助研究課題 .....	165
〈表 123〉	示範漁場 運營計劃 .....	175
〈表 124〉	直接귀타 및 共同漁業 實績 .....	182
〈表 125〉	年度別 뉴질랜드 귀타 消盡 實績 .....	183
〈表 126〉	水產物檢査法 施行規則 改正內容 .....	194
〈表 127〉	漁撈施設事業 計劃 .....	197
〈表 128〉	漁港施設計劃 .....	128
〈表 129〉	國民 總生産斗 水産業의 成長 對比 .....	202
〈表 130〉	漁家所得 增加推移 .....	203
〈表 131〉	營漁資金 供給計劃 .....	204
〈表 132〉	水產振興基金 運用計劃 .....	205
〈表 133〉	水產振興財政資金 運用計劃 .....	205
〈表 134〉	農漁村地域開發基金 支援計劃 .....	207
〈表 135〉	水協資金 需給計劃 .....	208
〈表 136〉	低所得漁村 選定 .....	209
〈表 137〉	低所得漁村 支援事業計劃 .....	209
〈表 138〉	示範漁村 支援事業 計劃 .....	210
〈表 139〉	漁村 새마을事業 計劃 .....	211
〈表 140〉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 .....	212
〈表 141〉	漁民後繼者 構成 .....	212
〈表 142〉	漁船 및 船員 共濟 加入 計劃 .....	213
〈表 143〉	暴風 및 突風被害復舊費 支援實績 .....	215

1988年度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

---

1988 년 9 월 25 일 印刷

1988 년 9 월 30 일 發行

編輯：水産廳企劃管理官室

發行：大韓民國水産廳

印刷：株式會社 大 苑 社

☎ 739-3911~4

---

---

< 非賣品 >

### 바 로 잡 음 표

쪽	줄	간	못	뒤	바	로	잡	음
119	위 5		25.8%				258%	
155	밑 2	全	國	남	시	聯	合	會
160	밑 5	改		善		改		革
186	위 11	5		척		6		척